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u>1. 도서출판 KMC 정관 <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1장 총 칙</u></p> <p><u>제1조(명칭) 본사는 도서출판KMC사라 부른다.(이하 ‘본사’라 한다.)</u></p>	<p>편찬 방법</p> <p>1) 감리회본부 총회 관련법 2) 각종단체 규정 3) 특별법, 조치법</p>
	<p><u>제2조(소속) 본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한다.)에 속하며, 총회산하 기구로 존재한다. [관련근거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234단 제133조(감독의 직무) ㉔ 및 감리교회가 설립한 기관에 관한 특별법 1.도서출판KMC 조직에 있다]</u></p>	
	<p><u>제3조(위치) 본사는 감리회 본부가 위치한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세종로, 광화문빌딩) 내에 둔다.</u></p>	
	<p><u>제4조(목적) 본사의 목적은 감리회 신학과 전통에 입각하여 발행하는 도서 및 각종 도서의 출판·보급·유통으로 한다,</u></p>	
	<p><u>제5조(사업) 본사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u></p> <p>① <u>감리회의 신학과 신앙 전통을 담은 도서의 발행과 보급</u></p> <p>② <u>웨슬리의 영성과 교리를 담은 교재의 개발과 발행</u></p> <p>③ <u>「강단과 목회」 발행 및 개체교회 강단을 지원하는 자료의 발행과 보급</u></p> <p>④ <u>「기독교세계」 및 정기간행물의 발행과 보급</u></p> <p>⑤ <u>감리회 본부의 각종 도서 및 교육교재 출판과 보급</u></p> <p>⑥ <u>미디어자료 개발과 전자책(e-book)의 출판과 보급</u></p>	

현행	개정안	비고
	<p>⑦ <u>도서의 발행과 보급에 대한 정책수립 및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u></p> <p>⑧ <u>각종 출판물의 보급을 위한 사업전개</u></p> <p>⑨ <u>기타 도서출판 및 자료보급</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 2 장 조 직</u></p> <p><u>제6조(조직과 업무) 본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u></p> <p>① <u>이사장 : 이사중에서 호선한다.</u></p> <p>② <u>발행인 : 감독이 된다</u></p> <p>③ <u>이사회 : 본사의 의결기구로서 13조 15조에 규정한다.</u></p> <p>④ <u>사장(대표이사) - 본사 업무 전반의 기획, 지휘, 감독 및 결재와 인사관리</u></p> <p>⑤ <u>직원 : 본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약간명의 직원을 두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분담하여 시행한다.</u></p> <p>1. <u>출판 - 출판물의 기획과 편집 및 제작, 행정 단행본, 교재, 전자책 및 회계업무</u></p> <p>2. <u>기관지 발행 - 정기간행물 기획과 편집, 행정과 관리</u></p> <p>3. <u>영업 - 광고수주, 판촉 및 영업, 서점관리, 독자관리, 유통관리, 창고입출고관리, 쇼핑물관리</u></p>	
	<p><u>제7조(임원) 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u></p> <p>① <u>이사장 : 이사회에서 호선한다,</u></p> <p>② <u>발행인 : 현직 감독을 당연직으로 한다,</u></p> <p>③ <u>사장(대표이사)</u></p> <p>1. <u>감독이 복수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감독이 임면한다.</u></p> <p>2. <u>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취임 시 취임계약을 맺고 공증 한 후 취임 한다.</u></p>	

현행	개정안	비고
	<p>3. 사장은 본사의 도서 발행과 직원인사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p> <p>4. 매년 영업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p> <p>5. 본사의 재무재표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공고 하여야 한다.</p> <p>6. 이사회 평가에서 신임을 얻지 못할 경우 또는 계약에 따른 일정한 실적이 없을 경우 사임하여야 한다.</p> <p>7. 사장 궐위 시 이사장은 후임 사장을 2개월 내 공개 채용하고 그 기간 동안은 직무대행을 임명하여 운영한다.</p> <p>8. 취임 시 이사회가 정한 재정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사장의 추천을 받아 감독이 임명한다.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본사 내규에 준한다.</p>	
	<p>제9조(감사) 본사는 2명의 감사를 두어 제반업무와 재무를 감사하게 한다.</p> <p>① 2명의 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감사위원회가 선임한다. 다만, 선임된 감사 중 공인된 회계사가 없을 경우 이사회는 별도의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재정을 감사하도록 한다.</p> <p>② 감사의 임기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총회를 기준 삼아 2년으로 하며, 외부 감사는 감사 실시시기에 맞추어 이사회가 위촉한다.</p> <p>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가지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 감사는 연 2회 정기적으로 또는 이사회에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단기간 내에 열리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한다.</p>	
	<p>제10조(출판위원) 비상근직으로 감리회의 신학과 전통에 입각한 출판의 방향과 기획 및 원고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위촉한다.</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① <u>사장과 발행인이 협의하여 5명 이내로 선임한다.</u></p> <p>② <u>본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 임할 수 있다.</u></p> <p>③ <u>제반경비는 본사 이사회에서 제정한 내규에 의한다.</u></p>	
	<p>제11조(편집위원) <u>비상근직으로 감리회의 신학과 전통에 입각한 정기 간행물의 기획과 편집방향과 「기독교세계」, 「강단과목회」, 「하늘양식」 편집위원기획 및 독자확대를 위하여 위촉한다.</u></p> <p>① <u>사장과 발행인이 협의하여 5명 이내로 선임한다.</u></p> <p>② <u>본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 임할 수 있다.</u></p> <p>③ <u>제반경비는 본사 이사회에서 제정한 내규에 의한다.</u></p>	
	<p>제12조(별정직) 임원 중 다음의 직책은 별정직으로 하여 본사의 보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p> <p>① <u>이사장 및 발행인</u></p> <p>② <u>출판위원</u></p> <p>③ <u>편집위원</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 3 장 이사회</u></p> <p>제13조(조직) <u>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u></p> <p>① <u>이사회는 13명으로 조직하되 선출방법은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평신도 중 1명으로 한다, 감독과 사장은 직권상 이사가 된다.</u></p> <p>② <u>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u></p> <p>③ <u>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직권상 이사는 그 직의 재 임기간으로 한다.</u></p>	
	<p>제14조(회의)</p> <p>④ <u>정기 이사회: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이사장이 소집하며,</u></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이사회 안건은 7일 이내에 이사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u>임시 이사회 : 사장의 요청이나 이사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u></p>	
	<p>제15조(직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p> <p>① <u>본사의 업무와 관련한 제반 사항의 심의, 의결</u></p> <p>② <u>출판정책 수립 및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안 심의와 의결</u></p> <p>③ <u>사장 선출</u></p> <p>④ <u>본 정관 제7, 8조에 명시된 인사처리</u></p> <p>⑤ <u>본사의 내규 제정 및 개정</u></p> <p>⑥ <u>본사 재산 출연, 기여금, 당기 순이익 및 손실금 처리사항, 임직원 생활비 책정</u></p> <p>⑦ <u>기타, 감리회의 총회가 요청한 사항과 사장의 제안사항 처리</u></p> <p>⑧ <u>이사회는 매년 본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영실적에 따라 사장과 맺은 취임 계약서에 의하여 사장을 면직을 시킬 수 있다. 다만, 사장을 면직할 경우에는 이사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 4 장 재 정</u></p> <p>제16조(재정) <u>본사의 재산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산하 기관으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한다.</u></p>	
	<p>제17조(수입) 본사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p> <p>① <u>서적판매 및 구독료</u></p> <p>② <u>광고 수입</u></p> <p>③ <u>후원금(교회, 단체, 개인)</u></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④ 기타 수입	
	제18조(지출) 이사회가 인준한 예산서에 입각하여 내규에 따라 집행한다.	
	제19조(예산, 결산의 인준) 본사의 예산 및 결산은 감리회 회계연도와 동일한 회계연도 말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서면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집행내역은 매년 각 연회와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20조(후원회 운용) 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후원회를 별도로 조직 운영할 수 있으며, 후원회는 이사회가 조직, 관리한다.	
	제21조(잉여금 처리) 본사의 회계연도 말에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고유 목적에 우선 사용하며 기타 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내규 제정 및 정관개정</p> <p>제22조(내규의 제정) 본 정관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내규로 정하며, 정관이나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의 내규와 일반 출판사의 관행에 준하여 처리한다.</p>	
	제23조(정관개정) 본 정관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에서 개정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15. 10. 30)</p> <p>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전에 선출된 도서출판KMC 위원, 위</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원장 등은 그 구법에 따른 임기를 보장하며,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다.</p> <p>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이전에 선출된 출판국 총무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제4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후 최초 사장의 선출은 2018년 11월 1일 이후에 선출한다.</p>	
<p>1. 주간 기독교타임즈 정관</p> <p>제1장 총 칙</p> <p>제1조(명칭) 본사는 주간 「<u>기독교타임즈</u>」라 부른다.(이하 ‘본사’라 한다.)</p>	<p>2. <u>기독교타임즈사</u> 정관<개정></p> <p>제1장 총 칙</p> <p>제1조(명칭) 본사는 주간 <u>기독교타임즈사</u>라 부른다.(이하 ‘본사’라 한다.)<개정></p>	
<p>제2조(소속) 본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한다.)에 속하며, <u>총회 산하 별정기구로 존재한다.</u>{관련근거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133조(감독회장의 직무) 제20항}</p>	<p>제2조(소속) 본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한다.)에 속하며, 감리회 <u>총회 산하에 독립채산제 기구로 한다.</u> [관련근거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133조(감독의 직무) ㉔ 및 감리교회가 설립한 기관에 관한 특별법 2. <u>기독교타임즈사에 있다</u>]<개정></p>	
<p>제3조(위치) 본사는 감리회 <u>본부 또는 감리회 본부가 허락한 장소에 둔다.</u></p>	<p>제3조(위치) 본사는 감리회 본부가 <u>위치한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세종로, 광화문빌딩)에 둔다.</u><개정></p>	
<p>제4조(목적) 본사는 감리교회의 신학과 전통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수행하는 주간신문 「기독교타임즈」와 매체를 발행한다.</p> <p>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의 도구로서 감리교회가 구현하고자 하는 국내외에서의 선교, 교육, 봉사활동의 홍보</p> <p>② 한국 기독교의 성장과 성숙, 일치운동에 기여</p>	<p>제4조(목적) 본사의 <u>설립 목적은</u> 감리교회의 신학과 전통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주간신문 기독교타임즈와 매체를 발행한다.<개정></p> <p>① 좌동</p> <p>② 좌동</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③ 기독교 문화 창달과 민족의 화합을 통한 통일운동 추구 ④ 기독교 언론지로서의 창조적, 예언자적 사명 수행	③ 좌동 ④ 좌동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조 직</p> <p>제6조(조직) 본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p> <p>① <u>발행인 겸 사장 : 본사의 법적 대표자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이 맡는다.</u></p> <p>② 이사회 : 본사의 의결기구로서 <u>임무와 권한은 별도로 정한다.(제3장)</u></p> <p>③ 임직원 : 본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u>임직원을 둔다.</u></p> <p style="margin-left: 20px;">1. 임원 - 주필, 국장 <u>다만, 주필과 편집국장은 사정에 따라 겸임할 수 있다.</u></p> <p style="margin-left: 40px;">2. 직원 - 직원은 취재 및 편집을 담당하는 기자와 광고 및 판매와 일반업무를 담당하는 일반 직원으로 구분한다.</p> <p>④ 논설위원 : 비상근직으로 감리교회의 신학과 전통에 입각한 사설 등을 집필하는 일을 맡는다.</p> <p>⑤ 지사장 및 지국장(별정직)</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조 직</p> <p>제6조(조직) 본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p> <p>① <u>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개정></u></p> <p>② 이사회 : 본사의 의결기구로서 <u>조직과 직무는 각각 제14조와 제16조에 규정한다.<개정></u></p> <p>③ 임직원 : 본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u>임직원을 두며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u></p> <p style="margin-left: 20px;">1. 임원 - <u>사장은 본사업무 전반의 기획, 지휘, 감독 및 결재와 인사관리를 하며, 편집국장은 신문 편집에 대한 책임을 진다.<개정></u></p> <p style="margin-left: 40px;">2. 좌동</p> <p>④ 좌동</p> <p>⑤ <u>좌동</u></p> <p>⑥ <u>감사 :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감사 중 2명을 선임한다.<신설></u></p>	
<p>제7조(임원) 임원의 선출방법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① <u>발행인 : 감리교회의 감독회장이 재임 중 당연직으로 맡되, 본지의 발행과 본사의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임원(주필, 국장)을 추천하고 직원을 임명하며 사장의 직무를 담당한다.</u></p>	<p>제7조(임원) 임원의 선출방법과 <u>임기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u></p> <p>① <u>발행인 :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은 재임 중 당연직 발행인이 된다.<개정></u></p>	

현행	개정안	비고
<p>② 주필 : 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u>의 인준을 받아 발행인이 임명한다.</u> 본지의 편집방향을 설정하고 <u>논설위원회를 관리하며 필요시 편집국장을 겸한다.</u></p> <p>③ 편집국장 : 편집 책임자에게 요구되는 <u>신학적 소양과 언론 이해 등을 측정하기 위한 공개적인 선발과정을 거쳐 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u>의 인준을 받아 발행인이 임명한다.</u></u>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u>편집국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사가 발행하는 매체에 관한 사항 2. 기자의 업무지도 및 관리 3. 자료 보존 업무 4. 기타 신문 제작과 관련한 사항 일체 	<p>② 삭제</p> <p>② 사장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감독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하고 감독이 임명한다.</u> <신설> 2. <u>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취임 시 취임 계약을 맺고 공증 한 후 취임 한다.</u> <신설> 3. <u>기독교타임즈의 발행과 직원인사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u> <신설> 4. <u>매년 영업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u> <신설> 5. <u>기독교타임즈사의 재무재표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공고 하여야 한다.</u> <신설> 6. <u>정기 이사회 <u>의 평가에서 신임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사임하여야 한다.</u></u> <신설> 7. <u>사장 궐위 시 이사장은 후임 사장을 2개월 내 공개채용하고 그 기간 동안은 직무대행을 임명하여 운영한다.</u> <신설> 8. <u>취임 시 이사회가 정한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 <신설> <p>③ 편집국장 : 편집 책임자에게 요구되는 <u>신학적 소양과 언론 이해 등을 측정하기 위한 공개적인 선발과정을 거쳐 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u>의 인준을 받아 발행인이 임명한다.</u></u>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본사가 발행하는 매체에 관한 사항</u> 2. <u>기자의 업무지도 및 관리</u> 3. <u>자료 보존 업무</u> 4. <u>기타 신문 제작과 관련한 사항 일체</u> <p>④ 삭제</p>	

현행	개정안	비고
<p>④ 총무국(부)장 : 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의 인준을 받아 발행인이 임명한다. 총무국(부)장은 본사의 영업과 일반사무 전반을 책임진다.</p> <p>⑤ 광고(특판)국(부)장 : 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의 인준을 받아 발행인이 임명한다. 광고국(부)장은 본보에 게재할 광고의 수주 및 대금 수납업무 전반을 책임진다.</p>	<p>⑤ 삭제</p>	
<p>제8조(감사) 본사는 2명의 감사를 두어 업무와 재정을 감사하게 한다.</p> <p>① 2명의 감사는 <u>감리회 본부</u> 감사위원회가 선임한다. 단, 선임된 감사 중 공인된 회계사가 없을 경우 이사회는 별도의 외부 <u>감사를 위촉하여</u> 재정을 감사하도록 한다.</p> <p>② 감사의 임기는 <u>감리교회의</u> 정기총회를 기준 삼아 2년으로 하며, 외부감사는 감사 실시시기에 맞추어 <u>위촉한다</u>.</p> <p>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갖는다.</p> <p>④ 감사는 연 2회 정기적으로 또는 <u>위원회의</u>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단기간 내에 열리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한다.</p>	<p>제8조(감사) 본사는 2명의 감사를 두어 <u>제반업무와 재무를</u> 감사하게 한다.<개정></p> <p>① 2명의 감사는 <u>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u> 감사위원회가 선임한다. <u>다만</u>, 선임된 감사 중 공인된 회계사가 없을 경우 이사회는 별도의 외부 <u>회계법인에 위탁하여</u> 재정을 감사하도록 한다.<개정></p> <p>② 감사의 임기는 <u>기독교대한감리회의</u> 정기총회를 기준 삼아 2년으로 하며, 외부 감사는 감사 실시시기에 맞추어 <u>이사회가 위촉한다</u>.<개정></p> <p>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가지며 <u>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u>.<개정></p> <p>④ 감사는 연 2회 정기적으로 또는 <u>이사회의</u>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단기간 내에 열리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한다.<개정></p>	
<p>제9조(논설위원) 주필의 제청을 받아 발행인이 6명 이내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제9조(논설위원)</p> <p>① <u>사장과 발행인이 협의하여 6명의 위원을 제청하고 이사회 의 인준을 받아 위촉한다</u>.<신설></p> <p>② <u>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u>.<신설></p>	
<p>제10조(기자) 취재와 편집업무를 담당할 기자를 약간 명 둔다. 기자는 공채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u>다만, 연회마다 원활한 취재를 위하여 주재기자를 두되 지사장이 겸임한다</u>.)</p>	<p>제10조(기자) 취재와 편집업무를 담당할 기자를 약간 명 둔다. 기자는 공채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u>다만, 연회마다 원활한 취재를 위하여 주재기자를 두되 지사장이 겸임한다</u>.<개정></p>	

현행	개정안	비고
①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이 ② 감리교회의 세례교인 ③ 취재, 편집, 제작 등 해당업무와 관련한 자질을 갖춘 이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제11조(사원) 일반사무 및 광고업무를 담당할 유급사원을 약간 명 둔다. 사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① <u>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이</u> ② <u>감리교인</u> ③ <u>해당업무와 관련한 자질을 갖춘 이</u> ④ <u>채용 당시 연령이 만30세 미만인 이</u>	제11조(직원) <u>직원은 공개 채용한다.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본사 내규 인사규정에 준한다.<개정></u> ① <u>삭제</u> ② <u>삭제</u> ③ <u>삭제</u> ④ <u>삭제</u>	
제13조(별정직) 임원 중 다음의 직책은 별정직으로 하여 본사의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 발행인 및 편집인 ② 사장(다만, 비상근직에 한함) ③ 주필 ④ 논설위원	제13조(별정직) 임원 중 다음의 직책은 별정직으로 하여 본사의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 <u>이사장 및 발행인<개정></u> ② <u>논설위원<개정></u> ③ <u>지사장 및 지국장<신설></u> ④ <u>삭제</u>	④, ②항으로 이동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이사회</p> 제14조(구성 및 임무) 이사회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회는 22명 이내로 구성하되 선출방법은 각 연회 추천 2명(교역자, 평신도 각 1명), 감독회의 추천 1명(출판국 위원장), 사장 추천 1명으로 한다. ② 사장과 주필은 직권상 이사가 되며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이사회</p> 제14조(조직) <u>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u> ① <u>이사회는 13명으로 조직하되 선출방법은 각 연회에서 교역자, 평신도 중 1명으로 조직하며, 발행인과 사장은 직권상 이사가 된다.</u> ② <u>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u> ③ <u>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직권상 이사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u>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④ 이사회는 본사의 사업 및 예산 결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책임을 진다.</p> <p>⑤ 이사회는 이사장과 기록이사, 재무이사를 각 1명씩 선출한다.</p> <p>1. 이 사 장 : 본사 운영 전반에 관한 결의과정을 주재 하며 감독 회장이 맡는다.</p> <p>2. 기록이사 : 이사회의 기록을 담당한다.</p> <p>3. 재정이사 : 본사의 재정운용실태를 파악, 대책안을 마련하며, 예산 결산안을 이사회에 상정한다.</p>	<p>④ 삭제</p> <p>⑤ 삭제</p>	
<p>제15조(회의)</p> <p>① 정기 이사회 :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모이며, 그 시기는 이사장이 소집한다.</p> <p>② 임시 이사회 : 사장의 요청이나 이사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p>	<p>제15조(회의)</p> <p>① 정기 이사회 :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이사장이 소집하며, <u>이사회 안건은 7일 이내에 이사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u></p> <p>② 좌동</p>	
<p>제16조(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p> <p>① 본사의 업무와 관련한 제반 사항의 심의, 의결</p> <p>②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안 심의, 의결</p> <p>③ 사장선임 제청 및 임원 인준</p> <p>④ 본 정관 제7조, 제9조에 명시된 인사처리</p> <p>⑤ 본사의 내규 제정 및 개정</p> <p>⑥ 후원회 및 기타 업무추진에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또는 폐기</p> <p>⑦ 기타, 감리회의 총회가 요청한 사항과 사장의 제안사항 처리</p>	<p>제16조(직무) 이사회의 <u>직무</u>는 다음과 같다.</p> <p>① 좌동</p> <p>② <u>본사 정책 수립 및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안 심의와 의결 <개정></u></p> <p>③ <u>사장 인준 및 편집국장의 인준 <개정></u></p> <p>④ <u>본 정관 제7조에 명시된 인사처리 <개정></u></p> <p>⑤ 좌동</p> <p>⑥ 좌동</p> <p>⑦ 좌동</p> <p>⑧ <u>본사 재산 출연, 기여금, 당기 순이익 및 손실금 처리사항, 인사 규정에 따른 임직원 생활비 책정 <신설></u></p>	<p>‘임무’→‘직무’</p> <p>③ ‘임원’→‘편집국장’</p> <p>④ ‘제9조’ 삭제</p>

현행	개정안	비고
	<p>⑨ <u>이사회는 매년 본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영실적에 따라 사장과 맺은 취임 계약서에 의하여 사장을 면직을 시킬 수 있다. 다만, 사장을 면직할 경우에는 이사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신설></u></p>	
제4장 재정	<p>제4장 재정 <신설></p> <p>제00조(재정) <u>본사의 재산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산하 기관으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신설></u></p>	
<p>제17조(수입) 본사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p> <p>① 구독료</p> <p>② 광고 수입</p> <p>③ 후원금(교회, 단체, 개인)</p> <p>④ 특별사업을 위한 모금</p> <p>다만, 교회 내 모금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p> <p>⑤ 기타 수입</p>	<p>제17조(수입) 본사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좌동></p> <p>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좌동></p> <p>⑤ <좌동></p>	
<p>제18조(지출) 이사회가 인준한 예산서에 입각하여 <u>사규</u>에 따라 집행한다. <u>다만, 감리회 본부의 지원금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요청한다.</u></p>	<p>제19조(지출) 이사회가 인준한 예산서에 입각하여 <u>내규</u>에 따라 집행한다. <개정></p>	‘사규’→‘내규’
<p>제19조(예산, 결산의 인준) 본사의 예산 및 결산은 회계연도 말에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서면 보고하여 인준을 얻어야 하며, 또한 집행내역은 매년 각 <u>연회 또는 총회에</u> 서면으로 보고한다.</p>	<p>제20조(예산, 결산의 인준) 본사의 예산 및 결산은 <u>감리회 회계연도와 동일한 회계연도 말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u>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서면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집행내역은 매년 각 <u>연회와 총회에</u> 서면으로 보고한다. <개정></p>	
<p>제20조(후원회 운용) 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후원회를 별도로 조직 운영할 수 있으며, 후원회는 이사회가 조직, 관리한다.</p>	제21조(후원회 운용) 좌동	
<p>제21조(잉여금 처리) 본사의 회계연도 말에 <u>잉여금이 발생할</u></p>	제22조(잉여금 처리) 본사의 회계연도 말에 <u>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의</u>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시는 그 전액을 선교사업비로 유지재단(본부 회계)에 전입하여 사용토록 한다.	결의에 따라 기독교대한감리회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며 기타 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제6장 내규 제정 및 정관개정 제26조(정관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가 초안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6장 <u>정관개정</u> <개정> 제27조(정관개정) <u>본 정관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에서 개정한다.</u> <개정>	
제27조(효력발생) <u>본 정관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u>	제28조(효력발생)< 삭제>	
	부 칙 (2015. 10. 30) <u>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u> <u>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의 개정 전에 선임된 사장, 발행인, 이사장, 이사와 편집국장 등은 구법에 따른 임기를 보장하며,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다.</u>	
	<u>교역자생활지원법<신설></u>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한다.)의 개체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교역자가 사역에 전념하여 교회의 선교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교역자생활지원금"이란 교역자가 사역에 집중하고 기초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리회가 지원하는 지원금으로서 총회 교역자생활지원위	

현행	개정안	비고
	<p><u>원회가 정한 금액을 말한다.</u></p> <p>② <u>"교역자생활지원금 수급대상교역자"란 이 법에 따른 생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교역자를 말한다.</u></p> <p>③ <u>"교역자생활지원금 수급교역자"란 이 법에 따른 교역자생활지원금을 지원받는 교역자를 말한다.</u></p> <p>④ <u>"교역자기초생활비"란 감리회 교역자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감리회가 정한 교역자 생활 기초비용을 말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교역자의 생활지원</p> <p><u>제3조(교역자의 생활지원금 지원) 감리회는 교회재정의 부족으로 개체교회로부터 총회 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가 정한 기초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담임자의 생활을 위하여 교역자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u></p> <p><u>제4조(교역자생활지원금 지원의 기본원칙) 제3조에 따른 교역자생활지원금 지원은 개체교회 단위로 실시하되 우선 개체교회 담임자에 한정하여 지원한다.</u></p> <p><u>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교역자생활지원금 수급범위는 연회 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가 선정한다.</u></p> <p><u>제6조(교역자생활지원금 산정)</u></p> <p>① <u>교역자생활지원금액은 매년 총회 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가 정한다.</u></p> <p>② <u>총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는 매년 수급교역자의 기준 연령과 기한을 정한다.</u></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7조(교역자생활지원 대상 개체교회의 교역자 급여기준) 교역자생활지원 대상 개체교회는 총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가 정한 담임자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장 사업관장기관</u></p> <p>제8조(교역자생활지원 사업 관장기관)</p> <p>① 이 법에 따른 교역자생활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행정은 총회행정부 가 한다.</p> <p>② 총회는 이 법이 정한 교역자생활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위하여 전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장 생활지원위원회</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1관 지방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u></p> <p>제9조(지방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의 설치) 감리회는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지방회에 지방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를 설치 한다.</p> <p>제10조(지방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 위원 선임) 지방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지방미자립교회 대책위원회로 한다.</p> <p>제11조(지방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의 소집) 지방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는 매 3월과 9월 위원장이 소집한다.</p> <p>제12조(지방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의 직무) 지방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p>	

현행	개정안	비고
	<p>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① 당해 지방회의 교역자생활지원금 수급교역자 추천</p> <p>② 당해 지방회의 교역자급여 지급 상황에 대한 조사</p> <p style="text-align: center;"><u>제2관 연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u></p> <p>제13조(연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의 설치) 감리회는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연회에 연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p> <p>제14조(연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 위원 선임) 연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연회미자립교회대책위원회로 한다.</p> <p>제15조(연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의 소집) 연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는 매 4월과 10월 위원장이 소집한다.</p> <p>제16조(연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의 직무) 연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① 당해 연회의 교역자생활지원금 수급교역자 선정</p> <p>② 당해 연회의 교역자급여 지급 상황에 대한 조사</p> <p style="text-align: center;"><u>제3관 총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u></p> <p>제17조(총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의 설치) 감리회는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p> <p>제18조(총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 위원 선임) 총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p>	

현행	개정안	비고
	<p>위원의 선임은 총회미자립교회대책위원회로 한다.</p> <p>제19조(총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의 소집) 총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는 매 5월과 11월 위원장이 소집한다.</p> <p>제20조(직무) 총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① 감리회 소속 교역자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총회에 보고한다.</p> <p>② 매년 교역자생활보장지원금, 교역자기본생활비 및 개체교회가 책정해야 하는 교역자 급여기준을 결정한다.</p> <p>③ 매년 교역자생활보장지원금 수급교역자의 기준연령과 기한을 정한다.</p> <p>④ 감리회 교역자생활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대책을 수립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가 의결한 사항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p> <p>⑤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교역자생활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5장 교역자생활보장지원 대상 교회의 선정</u></p> <p>제21조(실태조사)</p> <p>① 감독은 매년 10월 말일까지 다음에 따라 연회 및 지방회 별로 소속 교역자 전원의 급여지급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체교회의 결산액 대비 급여비율 2. 개체교회가 지급하는 교역자의 급여총액 3. 교역자의 동거가족 현황 및 동거가족의 직업 4. 개체교회의 부동산(임대교회의 경우 임대 현황) 	

현행	개정안	비고
	<p>제22조(교역자생활지원 확정) <u>총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는 매년 11월 말일까지 교역자생활지원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u></p> <p>제23조(교역자생활지원 신청 등) <u>교역자생활지원을 원하는 개체교회는 매년 9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역자생활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u></p> <p>① <u>교역자생활지원을 원하는 개체교회는 교역자생활지원요청서를 지방회를 경유하여 연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u>감리사는 교역자생활지원 대상 개체교회가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방회생활지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회본부에 교역자생활지원 요청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개체교회 담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p> <p>제24조(교역자생활지원 신청에 의한 조사)</p> <p>① <u>연회는 제23조에 따른 교역자생활지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회 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개체교회 연간 수입 및 지출 결산 현황</u> 2. <u>개체교회에서 편성한 담임자 급여예산 계획 및 결산현황</u> 3. <u>개체교회의 임대료지급현황 및 금융기관 부채와 그 이자지급 현황</u> 4. <u>개체교회 담임자의 동거가족 및 가계 총수입 현황</u> <p>② <u>지방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개체교회 및 교역자생활지원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u></p> <p>제25조(교역자생활지원 개체교회의 결정)</p> <p>① <u>연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신청과 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교역자생활지원 대상 개체교회와 지원 내용을</u></p>	

현행	개정안	비고
	<p><u>결정하여 총회생활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② <u>연회는 제1항에 따라 연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가 교역자생활지원 여부와 지원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교역자생활지원을 신청한 개체교회와 교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교역자생활지원 후원교회의 선정</p> <p><u>제26조(미자립교회 지원 실태 조사)</u></p> <p>① <u>감리사는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해 지방회 개체교회 중 교역자생활지원 대상 개체교회를 지원하고 있는 교회를 조사하여 연회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자립교회 지원금액 2. 지원하고 있는 미자립교회 현황 3. 익년도 미자립교회 지원예산 4. 당해 교회가 지원하기 원하는 교회 또는 지역 <p>② <u>연회는 매년 10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라 지방회 별로 미자립교회 지원 현황을 조사하여 총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u></p> <p><u>제27조(교역자생활지원 의향 조사 등)</u></p> <p>① <u>감리사는 매년 9월 말까지 당해 지방회 개체교회 중 교역자생활보장 대상 개체교회를 지원할 의사가 있는 개체교회를 조사하여 연회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② <u>교역자생활지원 대상 개체교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개체교회는 매년 10월 말까지 교역자생활지원 대상 개체교회와 지원에 대한 의향서를 연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③ <u>연회는 교역자생활지원 의향 조사 등을 매년 10월 말까지 총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28조(지원 대상교회 선정 등) 총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는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27조에 의한 지원의향서를 제출한 개체교회가 지원할 개체교회와 지원금액을 정하여 통보한다.</p> <p>① 총회 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는 교역자생활지원 대상 교회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p> <p>② 총회 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는 교역자생활 후원 교회를 지정한다.</p> <p>제29조(이중지원 금지 등) 이 법에 의한 교역자생활지원 대상 교회가 감리회에 소속한 개체교회로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경우 이 법에 의한 교역자생활지원금 지원을 즉시 중단하되 이후 3년 간 이 법에 의한 교역자생활지원 대상교회에서 제외한다.</p> <p>① 개체교회가 감리회 소속 개체교회로부터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매월 혹은 정기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p> <p>② 담임 교역자가 감리회 소속 개체교회로부터 정기적으로 교역자생활비를 지원 받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교역자생활지원 절차</p> <p>제30조(교역자생활지원금의 지급방법 등) 교역자생활지원금은 다음 의 절차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p> <p>① 교역자생활 후원교회는 매월 감리회가 정한 기일까지 정한 계좌로 약정한 후원금을 입금한다.</p> <p>② 교역자생활지원금을 지원할 때에는 총회생활지원위원회가 정한 기일 내에 당해 개체교회 혹은 대표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p> <p>제31조(교역자생활지원금의 변경)</p>	

현행	개정안	비고
	<p>① <u>교역자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개체교회가 지급하는 급여, 임대료, 이자, 가족의 총수입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개체교회,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연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에 대한 교역자생활지원금의 지원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교역자생활지원금 지원 변경 내용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과 개체교회 및 수급교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u>제32조(교역자생활지원금의 지원 중지)</u></p> <p>① <u>교역자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개체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역자생활지원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개체교회가 지급하는 급여와 가족의 수입 등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u> <u>2. 교역자생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u> <u>3. 개체교회가 교역자생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u> <p>② <u>개체교회가 제24조의 교역자생활지원 신청에 의한 조사에서 허위의 사실을 보고하여 부당하게 교역자생활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연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역자생활지원금 지원을 중지한다. 이 경우 당해교역자나 개체교회는 이후 3년간 교역자생활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8장 이의신청</u></p> <p><u>제33조(교역자생활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교역자생활지원을 신청한 교역자나 개체교회 혹은 감리사는 연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비고
	<p><u>제34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u></p> <p>① <u>총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는 제33조에 따라 이의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해당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u></p> <p>② <u>총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한 교역자, 개체교회 혹은 감리사에게 각각 서면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9장 교역자생활지원 비용</u></p> <p><u>제35조(교역자생활지원 비용) 이 법에서 "교역자생활지원 비용"이란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u></p> <p>① <u>생활지원위원회의 법 운영에 드는 비용</u></p> <p>② <u>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에 드는 비용</u></p> <p><u>제36조(교역자생활지원 재원마련) 교역자생활보장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의 방법으로 마련한다.</u></p> <p>① <u>개체교회의 미자립교회 지원금(보고 접수)</u></p> <p>② <u>연회 및 지방회의 미자립교회 지원금(보고 접수)</u></p> <p>③ <u>감리회 출판국의 매년 사업수익금 중 20%</u></p> <p>④ <u>부담금 2019년도부터 0.3%</u></p> <p>⑤ <u>본부 임대수입금 중 일부 (기부 금액은 매년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u></p> <p>⑥ <u>기타 기부금</u></p>	

현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u>제10장 벌칙</u></p> <p><u>제37조(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역자생활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교역자생활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u></p> <p><u>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u></p> <p><u>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감독과 연회장 및 감리사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로 교역자생활지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역자생활지원추진위원회는 구성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교역자생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실행부위원회는 보고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추진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00. 감리회 3개 신학대학 발전기금 지원에 대한 임시조치법 <신설></u></p> <p><u>제1조(목적) 이 법은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신학대학, 협성대학교신학대학,(이하 “3개 신학대학”이라 한다)를 교회가 대학발전 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발전기금 부담기간) 3개 신학대학의 발전기금 부담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3년간)까지로 한다.</u></p> <p><u>제3조(기금부담액) 3개 신학대학 발전기금은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가 전년도 경상수입 결산 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다만</u></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미자립 교회는 제외한다.</p> <p>제4조(발전기금의 사용) 발전기금은 매년 3개 신학대학에 균등하게 지원한다.</p> <p>제5조(회원권 제한) 신학대학 발전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교회는 각 의회의 회원권을 제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2015.10.30)</u></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폐기) 이 법은 2019년 1월 1일에 폐기한다.</p>	
	<p><u>00. 학교법인 애향숙학원 발전기금 지원에 관한 임시조치법 <신설></u></p>	
	<p>제1조 (목적) 이 법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애향숙유지재단 소속 학교법인 애향숙학원 발전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발전기금 부담기간) 발전기금 부담기간은 2016년부터 2017(2년간)까지로 한다.</p> <p>제3조(기금부담액) 발전기금은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가 전년도 경상수입 결산 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다만 미자립 교회</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는 제외한다.</p> <p>제4조(발전기금의 사용) 발전기금은 학교법인 애향숙학원 재단후원금 필요금액 20억중 일부로 사용한다.</p> <p>제5조(회원권 제한) 애향숙학원 발전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교회는 연회회원권을 제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2015.10.30)</u></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폐기) 이 법은 2018년 1월 1일에 폐기한다</p>	
	<p><u>00. 감리회가 설립한 기관에 관한 특별법</u></p>	
	<p style="text-align: center;"><u>1. 도서출판 KMC <신설></u></p> <p>제1조(도서출판 KMC 설립) 감리회는 감리회의 기관지, 교재,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 및 보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서출판 KMC를 설립한다.</p> <p>① 도서출판 KMC는 감리회 산하에 두되, 교리와 장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감리회본부와 독립채산으로 운영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정관으로 정한다</p> <p>② 도서출판 KMC가 출판하는 모든 도서와 제작 판매하는 상품의 판권과 지적소유권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갖는다.</p>	
	<p>제2조(도서출판 KMC의 운영) 도서출판 KMC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u>한다.</u></p> <p>① <u>도서출판 KMC는 감리회 산하에 두되, 교리와 장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독립하여 운영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정관으로 정한다.</u></p> <p>② <u>도서출판 KMC 소속 직원의 급여, 근로조건, 후생과 복지 등은 감리회본부 직원과 동일하게 한다.</u></p> <p>③ <u>도서출판 KMC가 출판하는 모든 도서와 제작 판매하는 상품의 판권과 지적소유권은 감리회가 갖는다.</u></p> <p>④ <u>도서출판 KMC의 직원 급여 및 회사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모든 사업수익금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고유목적으로 사용여야 한다. 회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동일한 규모의 출판사의 평균 금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u></p>	
	<p><u>제3조(이사회 설치) 도서출판 KMC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u></p>	
	<p><u>제4조(이사 선임) 도서출판 KMC 이사회는 13명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u></p> <p>① <u>교역자와 평신도 중 각 연회에서 선출한 1명</u></p> <p>② <u>발행인과 사장</u></p> <p>③ <u>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u></p>	
	<p><u>제5조(사장)</u></p> <p>① <u>도서출판 KMC에는 사장을 둔다.</u></p> <p>② <u>도서출판 KMC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정회원 교역자 또는 장로로 한다. <신설></u></p> <p>1. <u>연령이 40세 이상이고, 은퇴 전에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사람</u></p> <p>2. <u>교역자인 경우 선거일로부터 기산하여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재직 중인 사람</u></p> <p>3. <u>장로인 경우 선거일로부터 기산하여 장로로 6년 이상 계속하여</u></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u>재직 중인 사람</u> 4. <u>감리회가 지정한 병원의 건강검진 결과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상이 없는 사람</u></p> <p>③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출판 KMC 사장이 될 수 없다.</u> 1. <u>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개체교회에 소속한 사람</u> 2. <u>선거가 실시되는 년도를 기준으로 직전 4년 동안 교회경제법 제2조와 제10조에 의하여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개체교회에 소속한 사람</u> 3. <u>감리회 재판위원회에 의하여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u> 4. <u>“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회원 허입 후, 또는 장로안수 받은 후 국가 형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u> 5. <u>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교역자나, 허위로 기관파송을 받은 교역자를 부담입자나 소속 교역자로 두고 있는 개체교회에 소속한 사람</u></p> <p>④ <u>도서출판 KMC 사장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u> 1. <u>도서출판 KMC 사장은 감독의 복수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u> 2. <u>감독은 도서출판 KMC 사장이 선출될 경우 지체 없이 사장으로 임명 한다.</u></p> <p>⑤ <u>도서출판 KMC 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출된 사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1차 임기에 포함하지 않는다.</u></p>	
	<p>제6조(도서출판 KMC 직원의 임면) <u>도서출판 KMC의 직원은 사장의 추천을 받아 감독이 임명한다.</u></p>	
	<p>제7조(정관 등) <u>도서출판 KMC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정관으로 정한다.</u></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2015.10.30)</u></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이법 시행이전에 선출된 출판국 총무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 사장의 선출은 2018년 11월 1일 이후에 선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2. 기독교타임즈사 <신설></u></p> <p>제1조(설립) 감리회는 기독교 언론의 창달과 기독교계 정론지로서 예언자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감리회 기관지를 발행하는 기독교타임즈사를 두되, 독립채산제로 경영한다.</p>	
	<p>제2조(기독교타임즈사의 운영) 기독교타임즈사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 기독교타임즈사는 감리회 산하에 두되, 교리와 장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정관으로 정한다.</p> <p>② 제①항에 의한 정관에는 언론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집권과 경영권이 분리하여 경영하도록 규정한다.</p> <p>③ 기독교타임즈사의 발행인은 감독이 당연직으로 맡는다.</p> <p>④ 기독교타임즈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책임진다.</p> <p>⑤ 기독교타임즈사의 편집에 관한 모든 사항은 편집국장이 책임진다.</p>	
	<p>제3조(이사회 설치) 감리회는 기독교타임즈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p>	
	<p>제4조(이사 선임) 기독교타임즈사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p> <p>① 당연직 : 발행인, 사장</p>	

현행	개정안	비고
	<p>②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나 평신도 중 1명</p> <p>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p>	
	<p><u>제5조(사장)</u></p> <p>① 기독교타임즈사에는 사장을 둔다.</p> <p>②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령이 40세 이상이고, 은퇴 전에 임기를 마칠 수 있 정회원 또는 장로 2. 교역자인 경우 선거일로부터 기산하여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재직 중인 정회원 3. 장로인 경우 선거일로부터 기산하여 장로로 6년 이상 계속하여 재직 중인 장로 4. 감리회가 정한 병원의 건강진단 결과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상이 없는 정회원 또는 장로 <p>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장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개체교회에 소속한 사람 2. 선거가 실시되는 년도를 기준으로 직전 4년 동안 교회경제법 제2조의 부담금을, 같은 법 제10조가 정한 기일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개체교회에 소속한 사람 3. 감리회 재판위원회에 의하여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회원 허입 후, 또는 장로안수 받은 후 국가의 형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5. 사역하지 않는 교역자나, 허위로 기관파송을 받은 교역자를 부담임자나 소속 교역자로 두고 있는 개체교회에 소속한 사람 <p>④ 사장은 감독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하며, 감독은 선출된 사장</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을 지체없이 임명한다.</p> <p>⑤ 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출된 사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p>	
	<p>제6조(편집국장)</p> <p>① 기독교타임즈사에는 편집국장을 둔다.</p> <p>② 편집국장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령이 40세 이상이고, 은퇴 전에 임기를 마칠 수 있 정회원 또는 장로 2. 교역자인 경우 선거일로부터 기산하여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재직 중인 정회원 3. 장로인 경우 선거일로부터 기산하여 장로로 6년 이상 계속하여 재직 중인 장로 4. 감리회가 정한 병원의 건강진단 결과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상이 없는 정회원 또는 장로 <p>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편집국장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개체교회에 소속한 사람 2. 선거가 실시되는 년도를 기준으로 직전 4년 동안 교회경제법 제2조의 부담금을, 같은 법 제10조가 정한 기일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개체교회에 소속한 사람 3. 감리회 재판위원회에 의하여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회원 허입 후 또는 장로안수 받은 후 국가의 형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5. 사역하지 않는 교역자나, 허위로 기관파송을 받은 교역자를 부담임자나 소속 교역자로 두고 있는 개체교회에 소속한 사람 <p>④ 편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선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편집국장은 감독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2. 사장은 제4항에 따라 선임된 편집국장을 즉시 임명 한다. 	

현 행	개 정 안	비 고
	⑤ 편집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출된 편집국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기독교타임즈사 직원의 임면) 기독교타임즈사 직원 중 기자는 편집국장의 추천을 받아 사장이 임명하고, 일반 직원은 사장이 임명한다.	
	제8조(운영규정 등) 기독교타임즈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직의 상실) 임직원이 재직 중 감리회 법원에 의하여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대한민국 형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 경우 그 직에서 별도의 조치없이 해임된다.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2015.10.30.)</u></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이 법의 개정 전에 선임된 사장, 발행인, 이사장, 이사와 편집국장 등은 구법에 따른 임기를 보장하며,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00. 재단법인 애향숙 인수에 관한 특별법<신설></u></p>	
	<p>제1조 (목적) 이 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한다.)의 재단법인 애향숙 등의 인수에 관한 절차와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인수 방법)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다음의 조건으로 재단법인 애향숙, 학교법인 애향숙, 사회복지법인 애향숙을 인수한다.</p> <p>① 애향숙 각 법인의 이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p> <p>1. 이사 중 1인은 애향숙 설립자 측이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p>	

현행	개정안	비고
	<p>각 법인의 정관에 명시한다.</p> <p>2. 제1항의 이사 외의 이사는 감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각 법인의 정관에 명시한다.</p> <p>② 사회복지법인 애향숙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은 2020년까지 애향숙 설립자 측이 맡는다.</p> <p>③ 감리회는 학교법인 애향숙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보존 혹은 감리회 소속 법인 재산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다.</p> <p>제3조(인수에 따른 감리회의 의무) 감리회의 재단법인 애향숙, 학교법인 애향숙, 사회복지법인 애향숙 인수와 관련하여 감리회는 각 법인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p>① 감리회는 제31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재단법인 애향숙, 학교법인 애향숙, 사회복지법인 애향숙이 감리회 소속 법인임을 장정에 명시하는 장정개정을 완료하여야 한다,</p> <p>② 감리회는 향후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이사 파송절차에 준하여 애향숙의 각 법인 이사를 파송하도록 장정을 개정하여야 한다.</p> <p>③ 감리회는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교역자 중 감리회로 이명을 원하는 교역자를 정회원으로 허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회 정회원으로 허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리와 장정, 감리회 신학, 감리회교회사 교육과정을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감리회가 부담한다.</p> <p>④ 감리회는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소속 수도사 중 목사안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협동회원에 준하는 교육을 필하게 한 후 목사로 안수하여야 한다.</p> <p>⑤ 감리회 정회원으로 허입하거나 목사 안수를 받은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 소속 목사와 수도사가 은퇴할 경우 감리회 은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회 소속 교역자와 동일한 은급혜택을 부여하되,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에서 안수 또는 서품을 받은 후 목회한 경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목회연한은 40년을 초과하여 인정하지 않는다.</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4조 (인수에 따른 애향숙의 의무) <u>감리회의 재단법인 애향숙, 학교법인 애향숙, 사회복지법인 애향숙 인수와 관련하여 애향숙의 각 법인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u></p> <p>① <u>애향숙의 각 법인은 2015년 12월 4일까지 애향숙 설립자가 추천하는 이사 1인 외의 이사는 감리회가 장정의 절차에 따라 파송한 이사를 각 법인의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u></p> <p>② <u>애향숙의 각 법인의 이사는 감리회가 파송한 이사를 선임하는 즉시 제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는데 동의하여야 한다.</u></p> <p>③ <u>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나 수도사가 감리회 정회원으로 허입하거나, 목사안수를 받고자 할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체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u></p> <p>제5조 (정관 변경) 애향숙 소속 법인은 감리회의 인수가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정관을 개정하여 다음의 내용을 각 법인의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p> <p>① <u>‘재단법인 애향숙’은 명칭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u></p> <p>② <u>‘학교법인 애향숙’은 명칭을 ‘학교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애향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u></p> <p>③ <u>‘사회복지법인 애향숙’은 그 명칭을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u></p> <p>④ <u>각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세종로 광화문 빌딩)’로 변경하여야 한다.</u></p> <p>⑤ <u>각 법인은 임원의 수는 13명으로 하여야 한다.</u></p> <p>⑥ <u>각 법인은 정관에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u></p> <p>1. 전 재단법인 애향숙 설립자 측이 추천하는 1인을 당연직으로 취임</p>	

현행	개정안	비고
	<p><u>한다.</u></p> <p>2. 제2항에 규정한 이사 외의 이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선임한다.</p> <p>3. 감리회본부 감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감사 2인이 감사로 취임한다.</p> <p>⑦ <u>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015년 이후에 선임되는 이사 중 이사 정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여 선임한다.</u></p> <p>⑧ <u>이 법에 의하여 애향숙 각 법인의 정관을 개정할 경우 이사 선임과 관련한 규정은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규정) 재단법인 애향숙은 2016년 10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전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으로 통합하고 총회에 보고한다.</p>	
	<p><u>00. 목회대학원 통합을 위한 임시조치법 <신설></u></p>	
	<p>제1조 (각 신학대학교 교역자 수급 관련 대학원 통합) 이 법의 목적은 감리회의 미래를 위하여 교역자 수급을 조절하고, 3개 신학대학(감신, 목원, 협성)의 화합과 일치를 위하여 감리회에 속하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목회대학원을 통합하기 위함이다.</p> <p>① 목회대학원 통합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추진한다.</p> <p>② 이 법은 목회대학원을 통합(감신, 목원, 협성)하고 실행할 때까지 유효하며, 2018년 12월까지 이를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 한다.</p>	

현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2015.10.30)</u></p> <p><u>제1조(시행일)</u>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u>제2조(폐기)</u> 이 법은 목회신학대학원 통합 설립 후 당해연도에 폐기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4. 국외선교사 관리 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4. 국외선교사 관리 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선교사의 정의, 구분</p> <p>③ 협력선교사 :</p> <p>1.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목회자 및 평신도로 제4조 제1항의 자격을 벗어나지만 선교사로 인정받은 이. 단, 목회자 협력선교사는 진급은 인정하되 선교지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한한다.</p> <p>④ 명예선교사 :</p> <p>1.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목회자 및 평신도로서 은퇴 후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선교활동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p> <p>2. 명예선교사 인준심사를 필한 자</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선교사의 정의, 구분, <u>자격</u> <개정></p> <p>③ 협력선교사 :</p> <p>1.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목회자 및 평신도로 제4조 제1, 2항의 자격을 벗어나지만 선교사로 인정받은 <u>사람</u>. 다만 목회자 협력선교사는 진급은 인정하되 선교지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한한다.</p> <p><개정></p> <p>④ 명예선교사 :</p> <p>1. 좌동</p> <p><u>2. 선교비는 자비량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지역 선교사회 혹은 선교국에서 추천된 자<신설></u></p> <p><u>3.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교육과정은 선교국에서 별도로 정한다.<신설></u></p> <p>4. 2항 좌동</p> <p>⑦ <u>단기선교사<신설></u></p> <p><u>1.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정회원 목회자 및 평신도로 3년 이하의 사역기간을 약정하고 선교 팀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자<신설></u></p> <p><u>2. 본부 위탁 선교사훈련기관 훈련과 본부 집중훈련 이수자<신설></u></p> <p>⑧ <u>원로선교사<신설></u></p> <p><u>1. 선교지에서 무흠하게 사역하고 정년을 맞아 은퇴한 자<신설></u></p>	

현행	개정안	비고
	2. 해당지역 선교사회와 후원교회의 추천을 받은 자<신설>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선발과 파송</p> <p>제5조(선교사 선발 및 인준)</p> <p>① 선교사는 소속 교회나 선교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지원자를 추천받아 선교국에서 위탁한 기관훈련과 본부 집중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선교사 자격인준심사를 통하여 선발하고 그 자격을 인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선발과 파송</p> <p>제5조(선교사 선발 및 인준)</p> <p>① 선교사는 소속 교회나 선교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지원자를 추천받아 선교국에서 위탁한 <u>선교사 훈련기관의 과정과</u> 본부 집중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선교사 자격인준심사를 통하여 선발하고 그 자격을 인준한다.</p>	<p>① ‘기관훈련’을 ‘훈련기관’</p>
<p>제7조(선교사 파송임기)</p> <p>① 파송선교사의 기본임기는 4년이며 선교사는 선교국과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와 협의하여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나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선교사의 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p> <p>② 모든 선교사의 사역연한은 7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후 선교사의 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p>	<p>제7조(선교사 파송임기)</p> <p>① <u>파송선교사의 기본임기는 4년이며 선교사는 선교국과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와 협의하여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나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선교사의 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다만,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를 변경할 시에는 재계약으로 인정한다.<개정></u></p> <p>② <u>3월말 기준으로 70세가 된 선교사는 당해연도 연회에서 은퇴한다. 다만 은퇴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지속적으로 사역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원로선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신설></u></p> <p>③ <u>초임선교사는 선교지에 부임한지 1년 이내인 자를 말하며, 각 해당지역 선교사회는 초임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두어 실시하고 보고서를 선교국에 제출하도록 한다. 초임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재정적 후원과 복지</p> <p>제8조(선교사 재정지원)</p> <p>⑤ 선교국은 <u>선교기금마련을</u> 위해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와</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재정적 후원과 복지</p> <p>제8조(선교사 재정지원)</p> <p>⑤ 선교국은 <u>선교에 관련된 제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u> 감리교세계선교</p>	

현행	개정안	비고
<p>적극 협력하여 재정후원자들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p>	<p>협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재정후원자들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p>	
	<p>제00조(선교사 복지)<신설> ① <u>선교국은 선교사의 복지를 위해 보험, 은급, 게스트하우스, 안식관, 퇴직금, 의료지원, 경조비에 대한 제도와 원칙을 연회와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 세계선교사회와 협의하여 정하여 관리하며 세부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신설></u> ② <u>선교국은 선교사자녀 장학기금마련을 위해 선교사자녀장학재단과 적극 협력하여 후원자들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장학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신설></u></p>	
<p>제10조(선교사회 관리와 운영)</p> <p>① <u>선교국은 지역 및 국가별로 선교사회를 조직하고 대표자와 임원들을 세워 지원하고 관리한다. 선교사회의 조직과 운영, 활동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u></p> <p>② <u>선교사의 세부적 관리를 위해 사역, 복지, 자녀, 비상사태, 위기상황에 대한 원칙을 정하여 관리하며 운영, 행정적 처리에 관한 내용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u></p>	<p>제11조(선교사회 관리와 운영)</p> <p>① <u>선교국은 지역 및 국가별로 선교사회를 조직하고 대표자와 임원들을 세워 지원하고 관리한다. 선교사회는 세계선교사회, 해당지역 선교사회, 그리고 해당국 선교사회로 구분하고 각 선교사회의 조직과 운영, 활동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개정></u></p> <p>②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관리</p> <p>제11조(선교사 행정관리위원회)</p> <p>① 선교지 이동</p> <p>1. 부득이한 사유로 임기 중에 선교지를 이동하거나 일시 귀국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동사유서와 소속교회 또는 후원교회 담임자의 동의서를 <u>1개월 전에</u> 선교국에 제출토</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선교 관리<개정></p> <p>제12조(선교사 행정관리위원회)</p> <p>② 선교지 이동</p> <p>2. 30일이상 부득이한 사유로 임기 중에 선교지를 벗어나 일시 귀국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소속교회 또는 후원교회 담임자의 동의서를 15일전에 선교국에 제출하여 재가를 받</p>	

현행	개정안	비고
<p>록 한다. 단, 같은 국가 내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선교사회와 파송교회 또는 후원교회(단체)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고 선교국에 보고한다.</p> <p>② 선교지 이탈</p> <p>2. 선교사가 사역지 이탈한 것을 확인한 선교사회 대표는 선교국에 즉시 보고한다.</p> <p>3.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탈할 경우 선교국과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고 부당한 이탈을 한 경우 선교국은 이를 조사 처리한다.</p>	<p>은 후 이동한다. 다만, 같은 국가 내에서 사역지 변경은 해당지역선교사회와 파송교회 또는 후원교회(단체)의 동의를 받은 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선교국에 필히 보고하여야 한다.<신설></p> <p>③ 선교지 이탈</p> <p>2. 해당지역 선교사회 대표는 선교사가 사역지를 이탈할 것을 확인한 경우, 선교국에 상황보고를 하여야 하며, 무단 이탈 시, 선교국은 조사한 후 행정 처리하도록 한다.</p> <p>3.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탈할 경우 선교국과 해당지역 선교사회, 파송교회 또는 후원교회(단체)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고 부당한 이탈을 한 경우 선교국은 이를 조사 처리하며,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개정></p> <p>⑤ 소속 이동</p> <p>선교사가 소속 이동 시에는 해당 연회에 접수 처리된 소속 이동청원서 사본을 선교국에 제출하여 소속이동 행정처리를 하도록 한다. <신설></p> <p>⑥ 사직과 복직</p> <p>선교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거나 다시 복직할 경우 행적적 처리에 관한 내용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신설></p>	
	<p>제00조(선교사위기관리)<신설></p> <p>① 선교국은 선교사의 위기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선교사 위기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지원한다. 위기관리정책과 대처 방안에 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신설></p>	
	<p>부 칙(2015.10.30)</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신설></p>	

현행	개정안	비고
<p>5. 교회학교 규정</p>	<p>5. 교회학교 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목적과 조직</p> <p>제2조(교회학교의 조직)</p> <p>① 영아부 1세~3세</p> <p>② 유치부 4세~5세</p> <p>③ <u>유년부 6세~7세</u></p> <p>④ <u>초등부 8세~9세</u></p> <p>⑤ <u>소년부 10세~11세</u></p> <p>⑥ <u>중등부 12세~14세</u></p> <p>⑦ <u>고등부 15세~17세</u></p> <p>⑧ <u>청년부 18세~30세</u></p> <p>⑨ <u>청장년부 31세~45세</u></p> <p>⑩ <u>장년부 46세~64세</u></p> <p>⑪ 노년부 65세 이상</p> <p>다만, 개체교회의 실정에 따라서 부를 병합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목적과 조직</p> <p>제2조(교회학교의 조직)<개정></p> <p>① 영아부 1세~3세</p> <p>② 유치부 4세~5세</p> <p>③ <u>초등부 6세~11세</u></p> <p>④ 중등부 12세~14세</p> <p>⑤ 고등부 15세~17세</p> <p>⑥ <u>대학부 18세-30세</u></p> <p>⑦ <u>청년부 18세~34세</u></p> <p>⑧ <u>청장년부 35세~47세</u></p> <p>⑨ <u>장년부 48세~70세</u></p> <p>⑩ <u>노년부 71세 이상</u></p> <p>다만, 개체교회의 실정에 따라서 부를 병합할 수 있다.<개정></p>	<p>③ ‘유년부, 소년부’→‘초등부’로 병합, 삭제</p> <p>⑥ ‘대학부’ 신설</p>
<p>제7조 본 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① 회장은 <u>본 회의</u>의 일체 회무를 통관한다.</p> <p>②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가 그 임무를 대리한다.</p> <p>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사무를 <u>장리</u>한다.</p> <p>④ 협동총무는 총무를 도와 사무를 협조한다.</p> <p>⑤ 서기는 본 회의 의결사항을 기록하며 보관하고 일반문서</p>	<p>제7조 (임원의 직무)<u>이 회의</u>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p> <p>① 회장은 이 회의 일체 회무를 <u>통괄</u>한다.<개정></p> <p>② 좌동</p> <p>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사무를 <u>주관</u>한다.<개정></p> <p>④ 좌동</p> <p>⑤ 서기는 본 회의 의결사항을 기록하며 보관하고 일반문서와 통신 사</p>	<p>‘본 회’를 ‘이 회’</p> <p>‘통관’을 ‘통괄’</p> <p>‘장리’를 ‘주관’</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와 통신 사무를 <u>장리</u>한다.</p> <p>⑥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 사무를 <u>장리</u>한다.</p> <p>⑦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u>장리</u>한다</p> <p>⑧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사무 일체를 감사한다.</p>	<p>무를 <u>주관</u>한다.<개정></p> <p>⑥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 사무를<u>주관</u>한다.<개정></p> <p>⑦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u>주관</u>한다. <개정></p> <p>⑧ 좌동</p>	
<p>제 4 장 회 의</p> <p>제11조 본 회의 의회는 총회, 임원회, 위원회로 한다.</p>	<p>제 4 장 회 의</p> <p>제11조 <u>이 회의</u>의 의회는 총회, 임원회, 위원회로 한다.<개정></p>	
	<p>부 칙(2015.10.30)</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신설></p>	
<p>9. 학원선교사 관리규정</p>	<p>9. 학원선교사 관리규정</p>	
<p>제1장 총 칙</p> <p>제1조 본 규정은 기독교대한감리회 학원선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학원선교사의 인선, 파송, 후원 및 복지, 관리 등에 관한 제반 관리규정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1장 총 칙</p> <p>제1조 (목적)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학원선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학원선교사의 <u>발굴</u>, 인선, <u>훈련</u>, 인준, 파송, 후원, 복지, 관리 등에 관한 제반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개정></p>	<p>‘학원선교사의 발굴과 훈련’ 추가</p>
<p>제2조 학원선교사의 관리는 교육국에서 관장한다.</p>	<p>제2조 학원선교사의 <u>제반 행정 및</u> 관리는 교육국에서 관장한다.<개정></p>	<p>학원선교사 행정업무 추가</p>
<p>제2장 학원선교사의 정의, 자격</p> <p>제3조 (학원선교사의 정의)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서 청년·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목사를 말한다. 이들은 학원에서 감리회 기독 동아리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성경공부와 기도회를 인도하고 기독교적 가치관과 경건 생활을 지도한다.</p>	<p>제2장 학원선교사의 정의, 자격, 구분<개정></p> <p>제3조(학원선교사의 정의) <u>학원선교사는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 학원선교사 자격인준심사를 통과한 자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교회나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선교활동비 또는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국내의 교육기관에서 청년,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을 학원선교사라 한다. 다만 수련기간</u></p>	<p>국외선교사에 준하는 훈련과 인준을 통하여 학원선교사를 파송한다.</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4조(학원선교사의 자격) 학원선교사는 감리회에서 안수 받은 목사로 교육국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학원선교교육과정을 필하고 청소년, 청년 사역에 소명이 투철한 자로 한다.</p>	<p>2년은 수련학원선교사로 호칭한다.<개정></p> <p>제4조(학원선교사의 자격) <u>학원선교사는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고, 교육국에서 요구하는 학원선교사 자격인준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학원선교에 사명감이 투철한 민법, 형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야 한다.<개정></u></p>	
	<p>제00조(학원선교사의 구분) 학원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신설></p> <p>① 수련 학원선교사 / 수련목 선발고시에 합격하고 학원선교사 자격인준심사를 통과한 후 2년간 정회원 학원선교사와 함께 수련과정을 가지는 자.<신설></p> <p>② 학원선교사 / 학원에서 감리회 기독 동아리를 만들어 학생들과 성경공부와 기도회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며, 기독교 가치관과 경건생활을 지도하여 개체교회로 이끈다.<신설></p>	<p>‘학원선교사의 구분’ 신설</p>
<p>제3 장 선발과 파송</p> <p>제5조 (학원선교사의 선발)</p> <p>① <u>학원선교사는 교육국 학원선교사 선발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선발한다.</u></p> <p>② <u>학원선교사로 인준을 받기 원하는 자는 교육국에서 마련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필하여야 한다.</u></p>	<p>제3장 선발과 파송</p> <p>제6조(학원선교사의 선발 및 인준)<개정></p> <p>① <u>수련 학원선교사는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한 이로서 교육국 학원선교사 선발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이를 선발한다.<개정></u></p> <p>② <u>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고 학원선교사로 선발된 사람은 ‘수련 학원선교사’로 호칭하고 기존 학원선교지에서 2년간 교육국과 학원선교회의 지도하에 학원선교에 대한 이론과 선교실습을 하여야 한다.<개정></u></p> <p>③ <u>수련학원선교사를 마친 학원선교사는 교육국의 지도하에 새로운 학원선교지에서 사역한다.<신설></u></p> <p>④ <u>교육국은 인준자 명단을 ‘기독교세계’와 ‘기독교타임즈’, 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신설></u></p>	
<p>제6조(학원선교사의 임명과 파송)</p>	<p>제7조(학원선교사의 임명과 파송)</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① <u>적법한 절차에 의해 인준을 받은 학원선교사 후보자는 소정의 수련과 실습기간을 거쳐 교육국과 소속 연회의 공동주관으로 파송예배를 드리고 교육국위원장과 연회감독 공동명의로 학원사역 파송장을 받아 사역지에 부임한다.</u></p> <p>② <u>파송된 학원선교사의 기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학원선교사는 후원교회와 협의하여 그 직무를 연장할 수 있다. 만일 임기 연장(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원선교사의 자격은 자동으로 정지된다.</u></p>	<p>① <u>적법한 절차에 의해 인준을 받은 학원선교사는 교육국과 소속연회 공동주관으로 파송예배를 드리고 파송장은 교육국 위원장과 소속연회 연회장의 공동명의로 발급한다.<개정></u></p> <p>② <u>안수 받은 학원선교사의 기본임기는 4년이며 학원선교사는 교육국과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와 협의하여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기본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2년간 파송을 유보한다.<개정></u></p> <p>③ <u>1년간 수련 학원선교사 과정을 마친 학원선교사는 새로운 학원선교지에 파송한다.<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재정적 후원과 복지</p> <p>제7조(학원선교사의 재정적 후원)</p> <p>① <u>학원선교사의 정기적인 생활비와 활동비는 선교후원교회의 도움으로 충당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재정적 후원과 복지</p> <p>제8조(학원선교사의 재정적 후원)</p> <p>① <u>학원선교사의 정기적인 생활비와 활동비는 파송한 학원선교사의 소속교회 또는 학원선교단체, 학원선교후원회, 개인의 특별헌금, 학원선교기금 또는 기부금 등으로 지원한다.<개정></u></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u>교회와의 관계</u></p> <p>제9조(학원선교사와 후원교회·지방회·연회와의 관계) 학원선교사는 후원 교회에 소속 <u>목사로서</u> 지방회와 연회의 회원이 되며, 지방회와 연회에 사역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u>본 감리회와의 관계</u><개정></p> <p>제10조(학원선교사와 후원교회·지방회·연회와의 관계) 학원선교사는 후원교회의 소속 <u>교역자로서</u> 지방회와 연회의 회원이 되며, 지방회와 연회에 사역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p> <p>제11조(학원선교사와 본부와의 관계)</p> <p>① <u>교육국은 학원선교사와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며 후원교회, 연회, 선교하는 학교와 협력하며 학원선교사들을 관리 감독한다.<신설></u></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② <u>학원선교사는 학원선교보고서와 기타 학원선교사역과 관련된 행정 서류를 교육국에 제출하며 교육국은 이를 해당 연회에 송부토록 하고 학원선교사와 관련된 제 증명서를 발급한다.<신설></u> ③ <u>학원선교사는 연 2회 이상 교육국에 학원선교보고를 해야 하며 학원선교보고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신설></u>	
제7장 학교 및 교육기관과의 관계 제11조 (학교 당국과의 협력) ① 본 감리회는 필요한 경우 <u>학교</u> 및 교육기관과 선교협약을 맺는다. 협약은 교육국위원장과 총무가 학교 및 교육기관 대표와 맺는다.	제7장 학교 및 교육기관과의 관계 제12조(학교 당국과의 협력) ① 본 감리회는 필요한 경우 <u>학원선교지</u> 학교 및 교육기관과 선교협약을 맺는다. 협약은 교육국위원장과 총무가 학교 및 교육기관 대표와 맺는다.<개정>	‘학교선교지’ 추가
	<u>부 칙</u>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신설>	
17. 감리교회 계통학교 선교육성회 규칙	17. <u>학원선교회 규칙 <개정></u>	
제1장 총 칙 제1조 이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u>계통학교 선교육성회</u> 라 한다.(이하‘본 회’라 한다.) 제2조 본회의 본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에 둔다. 제3조 본회는 <u>감리교회 계통학교의 선교를 위한 기금조성과 학원선교 활동을 지원하며 기독교대한감리회 및 개체 교회와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한다.</u>	제1장 총 칙 제1조 이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u>학원선교회</u> 라 한다.(이하‘본 회’라 한다.)<개정> 제2조 본회의 본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에 둔다. 제3조 본회는 <u>학원선교를 활성화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인류에 봉사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원선교 교육정책 수립하고 감리회 계통학교 선교교육 활동, 학원선교사 선교교육 활동을 지원하며, 기금조성과 개체교회와의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u>	
제2장 조 직	제2장 <u>회 원</u> <개정>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4조 본 회의는 감리회 본부 및 각 연회 실행위원, 연회 총무, 본부 교육국 위원, 교육국 총무, 담당 감사와 감리교회 계통학교 법인이사 및 감사, 교장, 교목과 학원선교에 관심이 깊은 자로 조직한다.</p>	<p>제4조 <u>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교역자로 한다.</u> <개정> 제5조 <u>본 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u><신설> ① <u>권리</u> :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 <신설> ② <u>의무</u> : 회칙준수, 결의사항 이행 및 회비납부 <신설></p>	
<p>제3장 임 원</p> <p>제5조 본 회의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p> <p>⑥ 회계 2명(정, 부 각 1명)</p> <p>⑧ 각 위원회 위원장</p> <p>다만, 직권상 감리회 본부 교육국 총무와 교장회 회장은 부회장이 되고 담당부장과 교목회장은 협동총무가 된다.</p>	<p>제3장 임 원</p> <p>제6조 본 회의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p> <p>⑥ <u>회계 1명</u> <개정></p> <p>⑧ <u>간사 1명</u> <개정></p>	<p>‘회계 2명’→‘회계 1명’</p>
<p>제6조 본 회의는 고문 약간 명을 임원회의 결의로 초대할 수 있다.</p>	<p>제7조 <u>본 회의는 본 회의 운영과 사업을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과 실행위원을 둘 수 있다.</u> <개정></p>	
<p>제7조 본 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① 회장은 본 회의 일체 회무를 통관한다.</p> <p>②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이 유고시에는 <u>회장이 지명하는 이가 그 임무를 대리한다.</u></p> <p>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사무를 장리한다.</p> <p>④ 협동총무는 총무를 도와 사무를 협조한다.</p> <p>⑤ 서기는 본 회의 의결사항을 기록하며 <u>보관하고 일반문서와 통신 사무를 장리한다.</u></p> <p>⑥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 사무를 장리한다.</p> <p>⑦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장리한다.</p>	<p>제8조 본 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① 회장은 본 회를 <u>대표하고 일체의 회무를 총괄한다.</u> <개정></p> <p>②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이 <u>유고시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u> <개정></p> <p>③ 총무는 <u>모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운영 시행한다.</u> <개정></p> <p>④ 좌동</p> <p>⑤ 서기는 본 회의 의결사항을 기록하며 <u>보관 정리한다.</u> <개정></p> <p>⑥ <좌동></p> <p>⑦ <삭제></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⑧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사무 일체를 감사	⑧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사무 일체를 감사한다. <개정> ⑨ 간사는 본 회의 일체 사무 처리를 도와 임원을 보좌한다. <신설>	
제8조 본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거하고 임원의 임기는 <u>4년으로</u> 한다.	제9조 본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거하고 임원의 임기는 <u>2년으로</u>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4년'→'2년'
제10조 본 회의 목적을 다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둔다. ① 기획위원회 : 기능적인 기획 활동을 추진한다. ② 관리위원회 : 모금된 자금을 임원회 결의에 따라 관리한다. ③ 홍보위원회 : 홍보활동을 능률적으로 추진한다. ④ 모금위원회 : 모금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한다.	<삭제>	
제4장 회 의	제4장 회 의	
제11조 본 회의 의회는 <u>총회, 임원회, 위원회</u> 로 한다.	제11조 본 회의는 <u>총회, 임원회</u> 를 둔다.<개정>	
제12조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① 정기 총회는 매년 <u>5월 중에</u>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2. 사업계획보고 3. 예산 및 결산보고 4. 규칙개정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① 정기총회는 <u>매년 2월 중에</u> 회장이 소집하며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② 임시총회는 <u>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u> 회장이 소집한다.<개정> ③ <좌동>	① '5월'을 '2월' ② '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정리
제14조 위원회는 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고 임원회	제14조 <삭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에 제출할 사항을 협의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재 정</p> <p>제15조 본 회의 재정은 회비, 특별헌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p> <p>제16조 본 회의연도는 5월에 시작하여 익년 4월로 끝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재 정</p> <p>제14조 본 회의 재정은 <u>회원교회의 선교비와 기타 보조금</u>으로 충당한다.<개정></p> <p>제15조 <u>회원교회의 선교비는 회원 교회에서 결정한다.</u><신설></p> <p>제16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일부터 익년 <u>1월 말일</u>에 끝난다.<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부 칙</p> <p>제17조 본 회의 시행세칙이 필요한 때 임원회에서 제정할 수 있다.</p> <p>제18조 본 회의 규칙 <u>개정</u>은 총회에서 재적 3분의 2의 찬성으로 <u>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u>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p> <p>제19조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회의의 관례에 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부 칙</p> <p>제1조 본 회의 시행세칙이 필요한 때 임원회에서 제정할 수 있다.</p> <p>제2조 본 회의 규칙 <u>제·개정</u>은 <u>총회에서 재적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며,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에서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u><개정></p> <p>제3조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회의의 관례에 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15.10.30)</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신설></p>	
18. 감리교회 웨슬리구락부의 직무 규칙	18. 감리교회 웨슬리구락부의 직무 규칙<폐지>	
<p>제1조 초등, 중등 등 정규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한 교회의 야학(혹은 주간)교육활동을 지도 장려한다.</p> <p>제2조 웨슬리구락부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초등 또는 중등 지식을 주되 성경의 교훈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도록 지도하여 기독교인으로서 가정과 지역사회에 훌륭히 봉사하는</p>	<폐지>	

현행	개정안	비고
<p>사람을 만들 것을 목적한다.</p> <p>제3조 아동 및 시청각부 또는 청년부 등 관계 부서와 연락하여 교육활동 및 지도자 양성에 노력한다.</p>		
<p>19. 교회학교 지방회연합회 규칙</p>	<p>19. 교회학교 지방회연합회 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이름과 목적</p> <p>제1조 이 회의 이름은 기독교대한감리회교회학교○○연회연합회라 한다</p> <p>제2조 이 회의 본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본부 안에 둔다.</p> <p>제3조 이 회의는 지방 안 각 교회 교회학교와 연락하여 지방 교회학교 사업을 지도 원조하며 연합사업을 계획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이름과 목적</p> <p>제1조 (명칭) <좌동></p> <p>제2조 (사무소) <좌동></p> <p>제3조 (목적) 이 회의는 지방회 소속 각 교회의 교회학교로 하여금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발전과 기독교교육을 위한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개정></p>	<p>교회학교연합회 목적과 통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p> <p>제5조 이 회의 회원은 각 <u>교회 교회학교에서 선출한</u> 4명씩의 대의원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p> <p>제5조 (회원) 이 회의 회원은 각 <u>교회의 교회학교 대표</u> 4명의 대의원으로 한다.<개정></p>	<p>‘선출’을 ‘대표’</p>
<p>제6조 이 회의 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이 회의 규칙에 복종하여 회원에게 부담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p>	<p>제6조 (권리와 의무) 이 회의 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이 회의 규칙을 준수하며 회원에게 부담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개정></p>	<p>‘복종’을 ‘준수’</p>
<p>제8조(임원의 의무)</p> <p>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 사무를 <u>장리</u>한다.</p> <p>④ 서기는 <u>회 안의</u>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u>장리</u>한다.</p> <p>⑤ 회계는 <u>이 회의</u>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u>장리</u>한다.</p> <p>⑥ 각부 부장은 그 부의 사무 일체를 <u>장리</u>한다.</p>	<p>제8조(임원의 의무)</p> <p>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 사무를 <u>주관</u>한다.<개정></p> <p>④ 서기는 이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u>주관</u>한다.<개정></p> <p>⑤ 회계는 이 회의 <u>재무일체에</u> 관한 사무를 <u>주관</u>한다.<개정></p> <p>⑥ 각부 부장은 그 부의 사무 일체를 <u>주관</u>한다.<개정></p>	<p>‘장리’→‘주관’</p> <p>‘금전출납’을 ‘재무일체’</p>
<p>제 5 장 임기 및 부서</p>	<p>제 5 장 임기 및 부서</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9조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u>선정하고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u>	제9조 (<u>임원의 선출</u>)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u>선출한다.</u> <개정>	선정을 선출로
제10조 이회는 지방 감사와 교육부 총무를 포함한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10조 (<u>고문</u>) 좌동 <개정>	
제11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u>임원의 임기 및 보선</u>)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u>하고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u> <개정>	
제12조 이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영아부 ② 유치부 ③ <u>유년부</u> ④ 초등부 ⑤ 중등부 ⑥ 고등부 ⑦ 청년부 ⑧ 청장년부 ⑨ 장년부 다만, 실정에 따라 부를 병합할 수 있다.	12조 (<u>부서</u>) 본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영아 ② 유치부 ③ <u>초등부</u> ④ 중등부 ⑤ 고등부 ⑥ <u>대학부</u> <신설> ⑦ 청년부 ⑧ 청장년부 ⑨ 장년부 ⑩ <u>노년부</u> <신설> 다만, 실정에 따라 부를 병합할 수 있다.	③ 유년부를 초등부에 병합
제 6 장 회 의 제13조 이회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회를 둔다. ①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회장이 <u>소집하고</u> 임원 개선,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심의, 기타 사무를 의결한다.	제 6 장 의 회 제13조 (<u>의회</u>) 이회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회를 둔다. <개정> ① 정기총회 : 매년 1월 중에 회장이 <u>소집하며, 사업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 사업계획, 예산안 심의, 기타 사무를 의결하고, 2년마다 임원을 선출한다.</u> <개정>.	매년 총회에서 사업보고, 감사보고 받도록 하며 임원선출은 2년마다 한다.

현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재정</p> <p>제14조 이 회의 재정은 각 교회 교회학교 부담금과 지방회 보조와 의연금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재정</p> <p>제14조 (개정) 이 회의 재정은 각 교회의 교회학교 부담금, 지방회 지원금, 찬조금, 현금으로 충당한다.<개정></p>	<p>보조, 의연금 지원금과 찬조금, 현금으로 표현변경</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부칙</p> <p>제15조 본 규칙의 개정은 감리회 본부 교육국 총무가 교육국 위원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 (규칙개정 및 시행) 본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회학교 전국연합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개정></p>	<p>제8장 삭제 교육국경유를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경유로 변경</p>
<p style="text-align: center;">20. 교회학교 연회연합회 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20. 교회학교 연회연합회 규칙</p>	
<p>제3조 이 회의 목적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교회학교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p>	<p>제3조 (목적) 이 회의 목적은 지방회연합회가 연합하여 감리회 교회학교 발전과 기독교 교육을 위한 계획 및 실행을 하는데 있다.<개정></p>	
<p>제4조 이 회의는 연회 관할 하에 두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p> <p>① 감리회 본부 교육국,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각 지방 연합회, 교회학교의 모든 기구와 협력하여 교회학교 지도자를 훈련한다.<개정></p> <p>②~ ③중략</p> <p>④ 각 지방 교회학교 연합회를 지도한다.</p>	<p>제4조 (사업) <좌동></p> <p>① 감리회 본부 교육국,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교회학교 각 지방회연합회와 협력하여 교회학교 지도자를 훈련하고 지도한다.<개정></p> <p>②~ ③ 좌동</p> <p>④ 국내·외의 교회학교 연합 사업에 협력한다.<개정></p>	<p>① ‘교회학교의 모든 기구와 협력하여’ 삭제</p>
<p>제5조 이 회의는 교육국,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및 연회 본부의 지도를 받는다.</p>	<p>제5조 (지도) 이 회의는 감리회 본부 교육국,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및 연회 교육 위원회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다.<개정></p>	<p>‘감리회본부,교육위원회’ 삽입</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임원의 직무 및 부서</p> <p>제7조 이 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p> <p>회장 1명, 부회장(남녀 각 1명), 총무 1명, 서기 2명(정, 부), 회계 1명, 감사 1명, 각부 부장 1명, 고문 약간 명</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임원의 직무 및 부서</p> <p>제7조 (임원의 구성) <좌동></p> <p>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총무 1명, 부총무 1명, 협동총무(지방회연합회 총무), 서기 1명, 부서기 1명, 회계 1명, 부회계 1명, 감사 2명, 각부 부장 1명, 차장 2명, 특별위원장, 부위원장, 운영위원, 각 약간명, 역</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8조(임원의 직무 및 지방 교육부 총무와의 관계)</p> <p>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이를 대리한다.</p> <p>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 사무를 장리한다.</p> <p>④ 서기는 본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장리한다.</p> <p>⑤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p> <p>⑥ 감사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p> <p>⑦ 각부 부장은 그 부의 사업 일체를 장리한다.</p>	<p>대회장. 다만 원로인 경우는 선거권이 없다.<개정></p> <p>제8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p> <p>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임원회에서 정한 순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개정></p> <p>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행정업무를 주관한다.<개정></p> <p>④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신설></p> <p>⑤ 협동총무는 총무와 부총무를 도와 주어진 업무를 주관한다.<신설></p> <p>⑥ 서기는 본회의 기록과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주관한다.<개정></p> <p>⑦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신설></p> <p>⑧ 회계는 본회의 재무 일체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개정></p> <p>⑨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신설></p> <p>⑩ 감사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지적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게한다.<개정></p> <p>⑪ 각부 부장은 그 부의 사업 일체를 주관한다.<개정></p> <p>⑫ 각부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 유고시 임원회에서 정한 순에 의하여 부장의 직무를 대리한다.<신설></p> <p>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에서 부여된 특별사업을 주관한다.<신설></p> <p>⑭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임원회에서 정한 순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신설></p> <p>⑮ 운영위원은 본 회의 사업을 기획 및 운영하며 의견을 개진한다.<신설></p> <p>⑯ 역대회장은 본 회의 지도적 위치에서 경륜과 경험을 통한 자문에 응한다.<신설></p>	<p>④→⑥항</p> <p>⑤→⑧항</p> <p>⑥→⑩항</p> <p>⑦→⑪항</p> <p>⑦ ‘장리’→‘주관’</p>
<p>제9조 <u>고문은 임원회에서 추대한다.</u></p>	<p>제9조(고문, 지도, 자문위원)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은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개정></p>	<p>‘총회 인준’ 추가</p>
<p>제10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p>	<p>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있을 때에는</p>	<p>‘임원 자격’ 추가</p>

현행	개정안	비고
<p>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p>	<p><u>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u>로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u>다만 임원회비가 총회 일개월전에 까지 완납되어야 총회 회원이 될 수 있다.</u> 또한 <u>지방회연합회 회장은 총회 시 현직 지방회연합회장이 총회원이 된다.</u><개정></p>	
<p>제11조 임원은 총회에서 선정하되 각 지방 연합회에서 1명씩 전형위원을 선택하여 총회에서 전형 보고케 한다. 다만, 회장은 감독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p>	<p>제11조 (임원의 선출) <u>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출방법은 총회가 정한다.</u><개정></p>	
<p>제12조 이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p> <p>① 영아부 ② 유치부 ③ <u>유년부</u> ④ 초등부 ⑤ 중등부 ⑥ 고등부 ⑦ 청년부 ⑧ 청장년부 ⑨ 장년부</p>	<p>제12조 (<u>부서</u>) 이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p> <p>① 영아부 ② 유치부 ③ 초등부 ④ 중등부 ⑤ 고등부 ⑥ <u>대학부</u><신설> ⑦ 청년부 ⑧ 청장년부 ⑨ 장년부 ⑩ <u>노년부</u><신설></p>	<p>③ ‘유년부’ 삭제 ⑥ ‘대학부’ 신설 ⑩ ‘노년부’ 신설</p>
<p>제13조 각 부는 약간 명의 부원으로 구성한다.</p>	<p>제13조 (<u>부원</u>)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의 회</p> <p>제14조 이회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회를 둔다.</p> <p>① 총회 ② 임원회 ③ 부회</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의 회</p> <p>제14조 (<u>의회</u>) <좌동></p> <p>① 총회 ② 임원회 ③ 부회</p>	<p>‘의회’ 추가</p>
<p>제15조 총회는 각 지방 연합회 대표 4명으로 구성한다.</p>	<p>제15조 (<u>총회</u>) 총회는 <u>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u><개정></p>	<p>‘총회 내용’ 보완</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① 정기총회는 매년 년마다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임원개선은 2년마다 실시한다.<개정></p> <p>②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p> <p>③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규칙개정 건의안 승인 2. 사업보고 3. 감사보고 4. 결산 보고 및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5. 임원의 선출 6. 기타 중요한 사항 7.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인준 <p>④ 총회는 이 회의 임원과 각 지방회 연합회에서 선정한 1명의 총회 대표 와 각 지방회의 회장으로 구성한다.<개정></p>	
제16조 총회는 2년마다 회장이 소집하되, 3개 지방 대표 이상의 연서로 특별총회 소집을 요청할 때는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해야 한다.	제16조 (권리와 의무) 총회 의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이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총회 의원에게 부담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신설>	제16조 원안은 제15조에 반영됨
제17조 대표는 결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이 회의 규칙에 복종하며 대표에게 부담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17조 (임원회 구성과 운영) 이 회의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운영한다.<개정>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제18조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특별부회 및 위원회) 특별 부회 및 특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부장 및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임된 회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한다.<신설>	
제19조 부회는 필요에 따라 부장이 소집한다.	제19조 (결의) 이 회의 규칙 개정 건의안은 총회에서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외의 의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를 제19조로 이동

현행	개정안	비고
	<신설>	
제20조 각 회의 성원은 재적의 과반수로 한다. 단, 고문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삭제>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재 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재 정</p>	
제21조 이 회의 재정은 회비, 사업 수입금, 지방연합회 부담금, <u>특별 찬조금</u> 으로 충당한다.	제20조 (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비, 사업 수입금, 지방회연합회 부담금, <u>연회지원금, 찬조금, 현금</u> 으로 충당한다.<개정>	‘특별찬조금’→‘연회지원금’ ‘현금’ 추가
제22조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u>제21조 (회비) 회비 및 각 연합회 부담금은</u> 총회에서 결정한다.<개정>	‘부담금’ 추가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장 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제6장’ 삭제
제23조 본 규칙의 개정은 총회 재석 3분의 2의 가표를 얻어 연회와 교육국을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서 시행한다.	<u>제1조 (부칙) 본 규칙의 개정은 총회 재석 3분의 2의 가표를 얻어 전국연합회를</u>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서 시행한다. <개정>	‘교육국’→‘전국연합회’
21.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규칙	21.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이름과 목적 및 사업</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이름과 목적 및 사업</p>	‘명칭’ 추가
제1조 이 회의 이름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라 한다.	제1조 (<u>명칭</u>) <좌동>	
제3조 이 회의 목적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회학교 발전과 교사훈련 및 기독교교육을 위한 연구와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u>목적</u>) 이 회의 목적은 <u>지방회연합회, 연회연합회가 연합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회학교 발전과 기독교교육을 위한 연구와 실천을 하는데 있다.</u> <개정>	‘교사훈련’ 삭제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조 직</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조 직</p>	
제6조 이 회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로 조	제6조 (<u>조직</u>) <좌동>	

현행	개정안	비고
<p>직하며 연회에는 연회연합회를, 지방에는 지방연합회를 둔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임원의 직무 및 부서</p> <p>제7조 이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 1인, 본부 부회장 10명 이내(각 연회 연합회장은 당연직 부회장), 총무 1명, <u>협동총무</u> 약간 명, 서기 1명, 부서기 2명, 회계 1명, 부회계 2명, 감사 2명, 각부 부장 1명, 차장 2명, 특별위원장 약간 명, 부위원장 약간 명, 자문위원 약간 명, 기획위원 약간 명, 고문 및 증경회장 약간 명</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임원의 직무 및 부서</p> <p>제7조 (<u>임원의 구성</u>) 이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 1명, 본부 부회장 <u>약간명 (각 연회 연합회장은 당연직 부회장)</u>, 총무 1명, <u>부총무 2명, 협동총무(연회연합회 총무)</u>, 서기 1명, 부서기 2명, 회계 1명, 부회계 2명, 감사 2명, 각부 부장 1명, 차장 2명, 특별위원장, <u>특별 부위원장, 운영위원</u> 각 약간 명, <u>역대회장, 다만 임원의 정수는 300명을 넘을 수 없으며 원로는 선거권이 없다.</u><좌동></p>	<p>‘임원수’ 변경</p>
<p>제8조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⑤ 서기는 본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p> <p>⑥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p> <p>⑦ 회계는 본 회의 <u>금전 출납</u>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p> <p>⑧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p> <p>⑨ 감사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p> <p>⑩ 각부 부장은 그 부의 사업 일체를 총괄한다.</p> <p>⑫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u>본 회의</u>에서 부여된 특별사업을 처리한다.</p> <p>⑭ <u>기획위원</u>은 본 회의 사업을 기획하며 의견을 개진한다.</p> <p>⑮ <u>고문 및 증경회장, 자문위원</u>은 본 회의 지도적 위치에서 경륜과 경험을 통한 자문에 응한다.</p>	<p>제8조 (<u>임원의 직무</u>)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⑤ <u>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u><신설></p> <p>⑥ 서기는 본 회의 <u>기록과</u>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개정></p> <p>⑦ <좌동></p> <p>⑧ 회계는 본 회의 <u>재무일체</u>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개정></p> <p>⑨ <삭제></p> <p>⑩ <좌동></p> <p>⑫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u>이 회의</u>에서 부여된 특별사업을 처리한다.<개정></p> <p>⑭ <u>운영위원</u>은 이회의 사업을 기획 및 운영하며 의견을 개진한다.<개정></p> <p>⑮ <u>역대회장은 이 회의</u> 지도적 위치에서 경륜과 경험을 통한 자문에 응한다.<개정></p>	<p>⑤ ‘부총무’ 신설</p> <p>⑥ ‘기록’ 추가</p> <p>⑭ ‘기획위원’→‘운영위원’</p> <p>⑮ ‘역대회장’으로 통일</p>
<p>제9조 고문 및 <u>증경회장</u>, 자문위원은 임원회에서 <u>추대</u>한다.</p>	<p>제9조 (<u>고문, 지도, 자문위원</u>) 고문 및 <u>지도위원</u>, 자문위원은 임원회에서 <u>추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u><개정></p>	<p>‘증경회장’ 삭제,</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10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제10조(임원의 임기와 자격)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있을 때에는 <u>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로</u>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u>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u> 다만, <u>임원회비가 총회 일개월전까지 완납되어야 총회 회원이 될 수 있다.</u> 또한 <u>지방회연합회 회장은 총회 시 현직 지방회연합회장이 총회원이 된다.</u><개정></p>	<p>‘지도위원, 자문위원’ 추가 ‘임원과 총대’ 자격 보완</p>
<p>제12조 이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p> <p>① 영아부 ② 유치부 ③ <u>유년부</u> ④ 초등부 ⑤ <u>소년부</u> ⑥ 중등부 ⑦ 고등부 ⑧ 대학부 ⑨ 청년부 ⑩ 청장년부 ⑪ 장년부 ⑫ 노년부</p>	<p>제12조 (<u>부서</u>) 이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p> <p>① <좌동> ② <좌동> ③ <삭제> ③ <u>초등부</u> ⑤ <삭제> ④ <u>중등부</u> ⑤ <u>고등부</u> ⑥ <u>대학부</u> ⑦ <u>청년부</u> ⑧ <u>청장년부</u> ⑨ <u>장년부</u> ⑩ <u>노년부</u></p>	<p>‘유년부, 소년부’→‘초등부’ 통합</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의 회</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의 회</p>	
<p>제14조 이회의 의회는 총회, <u>임시총회</u>, 임원회, 부회 및 위원회로 한다.</p>	<p>제14조 (<u>의회</u>) 이회의 의회는 총회, 임원회, 부회 및 위원회로 한다. <개정></p>	<p>‘임시총회’ 삭제</p>
<p>제15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p> <p>① 정기총회는 <u>매 2년마다 1월 중에</u> 회장이 소집한다.</p>	<p>제15조 (<u>총회</u>)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p> <p>① 정기총회는 <u>매년마다 2월 중에</u> 회장이 소집한다. <u>다만, 임원선출은 2년마다 한다.</u><개정></p>	<p>‘1월 중’→‘2월 중’</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③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p> <p>4. <u>결산 및 예산의 승인</u></p> <p>6. 기타 중요한 사항</p> <p>④ 총회는 이 회의 임원과 각 연회연합회에서 선정한 2명의 대의원과 각 지방연합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연합회 회장이 임원일 경우는 대의원 1명을 추가할 수 있다.</p>	<p>③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p> <p>4. 결산보고 및 <u>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u><개정></p> <p>6. <u>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인준</u><신설></p> <p>7. 기타 주요한 사항</p> <p>④ 총회는 이 회의 임원과 각 연회연합회에서 선정한 2명의 대의원과 각 지방회연합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p>	
제16조 총회는 2년마다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 <삭제>	제15조 제1항에 있음
제17조 <u>대의원</u> 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이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대의원에게 부담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16조 (<u>총회의원 권리와 의무</u>) <u>총회 의원</u> 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이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총회 의원에게 부담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개정>	대의원-총회의원 제17조를 제16조로 변경
제18조 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u>회장이 필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소집하며 일반회무를 처리하고 사업계획을 협의, 해당부서에 회부한다.</u>	제17조 (<u>임원회 구성과 운영</u>)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u>운영한다.</u> ① <u>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u> <신설> ② <u>재석 임원으로 개최하며 재석 과반수로 결의한다.</u> <신설> ③ <u>총회에서 위임한 사업 및 일반회무 협의하여 해당부서에 회부한다.</u> <신설>	제18조-제17조로
제20조 이 회의 규칙 개정 건의안은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u>의결</u> 하고 그 외의 의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 (<u>결의</u>) 이 회의 규칙 개정 건의안은 총회에서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u>결의</u> 하고 그 외의 의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u>결의</u> 한다.<개정>	제20조→제19조 의결를 결의로
제5장 재 정	제5장 재 정	
제21조 이 회의 재정은 회비, 각 연합회 의무부담금, 사업수입금, 감리회 본부 <u>보조금</u> , 현금 및 <u>특별찬조금</u> 으로 충당한다.	제20조 (<u>재정</u>) 이 회의 재정은 회비, 각 연합회 부담금, 사업수입금, 감리회 본부 <u>지원금, 찬조금</u> , 현금으로 충당한다.<개정>	제21조→제20조 보조금을 지원금, 찬조금으로
제22조 회비 및 각 연합회 <u>의무부담금</u> 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 (<u>회비 및 부담금</u>) 회비 및 각 연합회 <u>부담금</u> 은 총회에서 결정한다.<개정>	제22조→제21조 의무대신 부담금으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장 부 칙</p> <p>제23조 감사는 연 1회 이 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u>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제22조 (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u>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지적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게한다.</u><개정></p>	<p>제6장 삭제 제23조→제22조 감사조항은 행정 및 회계등 모든 업무감사로 하며 시정하도록 임무부여</p>
<p>제24조 회계연도는 총회 5일 전부터 다음해 총회 5일 전으로 한다.</p>	<p>제23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u>감리회 회계연도와 동일하다. 다만 회계연도 이후부터 총회 전까지는 감사 후 첫 번 임원회에 보고한다.</u> <개정></p>	<p>제24조→제23조 회계연도 동일</p>
<p>제25조 다음 각 항의 사항과 본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세칙에 대하여는 임원회 결의에 의하여 세칙으로 정한다.</p> <p>① 총회선거에 관한 사항 ② <u>연회연합회 및 지방연합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u> ③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p>	<p>제23조 (운영세칙제정 및 개정) 다음 각 항의 사항과 본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세칙에 대하여는 임원회 결의에 의하여 세칙으로 정한다.</p> <p>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삭제></p>	<p>②항 삭제 후 항 변경 ③→② 으로 변경 ④→③ 으로 변경</p>
	<p><u>제25조(통상관례) 이 회의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감리회 장정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신설></u></p>	<p>통상관례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15.10.30)</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신설></p>	<p>부칙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22. 청년회 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22. 청년회 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조직과 회원</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조직과 회원</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4조 이회는 연령별로 다음 세 부회를 두어 각각 개별적인 활동을 하게 한다.</p> <p>① 중등부회 12세~14세 ② 고등부회 15세~17세 ③ 청년부회 18세~30세</p> <p>다만, 교회 형편에 따라 중등부회와 고등부회, 고등부회와 청년부회를 합할 수도 있다.</p>	<p>제4조 <좌동></p> <p>① <좌동> ② <좌동> ③ 청년부회 18세~34세<개정></p> <p>다만, 교회 형편에 따라 중등부회와 고등부회, 고등부회와 청년부회를 합할 수도 있다.<개정></p>	<p>‘30세’→‘34세’</p>
<p>제 9 장 재 정</p> <p>제18조 이회의 재정은 회비, 현금, 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p>	<p>제 9 장 재 정</p> <p>제18조 이회의 재정은 교회 지원금과 회비, 현금, 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개정></p>	<p>‘교회 지원금’ 추가</p>
<p>23. 청년회 지방연합회 규칙</p>	<p>23. 청년회 지방연합회 규칙</p>	
<p>제 8 장 재 정</p> <p>제17조 이회 각 부회 연합회의 재정은 각 교회 청년회 각 부회 의무금과 지방의 보조와 특별 의연금으로 하되 예산 및 결산은 총회에서 한다. 다만, 각 교회 청년회 각 부회 의무금은 각 개체회비의 1/10로 한다.</p>	<p>제 8 장 재 정</p> <p>제17조 이회 각 부회 연합회의 재정은 각 교회 청년회 각 부회 부담금과 지방회의 보조금과 특별 의연금으로 하되 예산 및 결산은 총회에서 한다. 다만, 각 교회 청년회 각 부회 부담금은 각 개체회비의 1/10로 한다.<개정></p>	<p>‘의무금’→‘부담금’ ‘보조’→‘보조금’ ‘의원금’ →‘지원금’</p>
<p>24. 청년회 연회연합회 규칙</p>	<p>24. 청년회 연회연합회 규칙</p>	
<p>제 7 장 재 정</p> <p>제16조 이회의 재정은 각 지방 연합회의 부담금과 회비 및 특별 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p>	<p>제 7 장 재 정</p> <p>제16조 이회의 재정은 각 지방회 연합회의 부담금과 연회보조금, 특별 의연금 및 회비로 충당한다.<개정></p>	<p>‘연회 보조금’ 추가</p>

현행	개정안	비고
제17조 이 회의 예산 결산 및 각 지방 연합회의 부담금과 회비는 총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제17조 이 회의 예산 결산 및 각 지방회 연합회의 부담금과 회비는 총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부담금은 각 지방회 연합회비의 1/10에 준한다. <개정>	
25. 청년회 전국연합회 규칙	25. 청년회 전국연합회 규칙	
7장 재정 제16조 이 회의 재정은 각 연회 연합회의 의무금과 교육국의 보조 및 특별의연금 등으로써 충당한다.	제7장 재정 제16조 이 회의 재정은 각 연회 연합회의 부담금과 감리회 교육국의 보조금 및 청년주일헌금 , 특별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개정>	‘의무금’→‘부담금’
제17조 이 회의 예산 결산 및 각 연회 연합회의 의무금은 총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다만, 의무금은 각 연회 연합회비의 1/10에 준한다.	제17조 이 회의 예산 결산 및 각 연회 연합회의 부담금 은 총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부담금 은 각 연회 연합회비의 1/10에 준한다.<개정>	
	부 칙(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신설>	
26.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26.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2장 조직과 회원 제5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만30세부터 만45세이하로서 개교회의 모든 청장년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단 만30세 미만인 자라도 기혼자는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장 조직과 회원 제5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만35세부터 만47세 이하로서 개교회의 모든 청장년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단 만35세 미만인 자라도 기혼자는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만30세부터 만45세’ →‘만35세부터 만47세’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임기) 이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정하고 결원이 있을 때 임원회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선출 및 임기) 본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정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연임할 수 있다’ 추가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의에서 보선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있다. 임원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회의</p> <p>제13조(회의의 종류)</p> <p>① 정기총회</p> <p>1. 총회의 소집 및 공고: 총회는 매년 1회 10월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일로부터 6주일 이전에 서면 또는 인터넷(모바일)으로 공고하여야 한다,</p> <p>2. 총회의 구성 : 총회대표는 명예회장, 직전회장, 전국연합회 임원, 각 지방연합회장을 포함한 각 지방대표 2명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회의</p> <p>제13조(회의의 종류)</p> <p>① 정기총회</p> <p>1. 총회의 소집 및 공고: 총회는 매년 1회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일로부터 6주일 이전에 서면 또는 인터넷(모바일)으로 공고하여야 한다.</p> <p>2. 총회의 구성 : 총회대표는 명예회장, 직전회장, 전국연합회임원, 각 연회연합회장을 포함한 연회대표 4명, 각 지방회연합회장을 포함한 지방회대표 2명으로 한다. 단, 연회연합회 대표는 연회연합회 회장이 지명하고, 지방회연합회 대표는 지방회연합회 회장이 지명한다.</p>	<p>‘10월 중’→‘12월 중’</p> <p>자구 정리</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15.10.30)</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신설></p>	
27. 청장년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27. 청장년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조직과 회원</p> <p>제6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연회에 속한 만 30세부터 만 45세 이하의 각 교회 청장년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단 만 30세 미만인 자라 하더라도 기혼자는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조직과 회원</p> <p>제6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연회에 속한 만 35세부터 만 47세 이하의 각 교회 청장년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단 만 35세 미만인 자라 하더라도 기혼자는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만30세부터 만45세’</p> <p>→‘만35세부터 만47세’</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임원</p> <p>제9조(임원 임기 및 보선)</p> <p>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정기 총회에서 선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임원</p> <p>제9조(임원 <u>선출</u> 및 임기)</p> <p>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며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p>	<p>‘연임가능’ 삽입</p>

현행	개정안	비고
	<개정>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회의</p> <p>제13조(종류)</p> <p>① 정기총회</p> <p>1. 총회의 소집 및 공고 : 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일로부터 6주일 이전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임시총회 :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직무는 정기총회와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회의</p> <p>제13조(종류)</p> <p>① 정기총회</p> <p>1. 총회의 소집 및 공고 : 총회는 매년 1회 <u>11월 중에</u>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일로부터 6주일 이전에 서면 또는 인터넷(<u>모바일</u>)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p> <p>③ 임시총회 :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직무는 정기총회와 같다. 단, <u>미조직 연회는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이 해당 연회의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임원선출을 할 수 있다.</u> <개정></p>	<p>① ‘11월 중’ 삽입</p> <p>③ ‘단, 미조직.... 할 수 있다’ 삽입</p>
<p style="text-align: center;">28. 청장년선교회 지방회연합회 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28. 청장년선교회 지방회연합회 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조직과 회원</p> <p>제5조(회원)</p> <p>이 회의 회원은 ○○지방 내에 속한 만 30세부터 만 45세 이하의 각 교회 청장년선교회 회원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조직과 회원</p> <p>제5조(회원)</p> <p>이 회의 회원은 ○○지방회에 속한 <u>만 35세부터 만 47세 이하의</u> 각 교회 청장년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u>단 만 35세 미만인 자라 하더라도 기혼자는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u> <개정></p>	<p>‘만 30세부터 만 45세’ →‘만 35세부터 만47세’</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임원</p> <p>제8조(임원 임기 및 보선)</p> <p>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정기 총회에서 선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임원</p> <p>제8조(임원 <u>선출</u> 및 임기)</p> <p>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u>연임가능하며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u> <개정></p>	<p>‘연임가능’ 삽입</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회의</p> <p>제12조(종류)</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회의</p> <p>제12조(종류)</p>	

현행	개정안	비고
④ 임시총회 :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직무는 정기 총회와 같다.	④ 임시총회 :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직무는 정기 총회와 같다. 단, <u>미조직 지방회는 소속 청장년선교회 연회연합회 회장이 해당지방회의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임원선출을 할 수 있다.</u> <개정>	④ ‘단, 미조직.... 할 수 있다’ 삽입
	부 칙(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신설>	
30. 00교회 남선교회 규칙	30. 00교회 남선교회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00교회 남선교회라 칭한다.(이하 ‘남선교회’ 또는 ‘본회’라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〇〇교회 남선교회(이하 <u>본회</u>)라 한다. <개정>	
제3조(목적) 본회는 감리교 남자 장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선교, 교육, 봉사, 문화, 친교, 사회복지 등 평신도 활동을 통한 천국 운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목적) <u>본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본회가 주관하는 선교 활동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내외 각 교파와 연합하여 평신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이바지하는데 있다.</u> <개정>	
제2장 회원	<u>제2장 조직과 회원</u> <개정> 제5조(<u>조직</u>) 연령층에 따라 두개 이상의 남선교회를 조직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회장 1인을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회원’→‘조직과 회원’
제5조(회원) 본회 회원은 본 교회 소속된 만 46세 이상 만 70세까지의 남성 성도로 한다. 단, 만70세 이상의 회원은 특별회원으로 한다. 다만, 연령층에 따라 둘이상의 남선교회를 조직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 중에서 대표회장 1인을 호선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 본회 회원은 본 교회 남선교회에 소속된 <u>만 48세 이상</u> 의 남성으로 한다. <개정>	‘만 46세이상’→‘만48세이상’
제6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의무는 다음과 같다.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본회 회원의 권리의무는 다음과 같다.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① 권리: 선거권, 피선거권 및 결의권, 다만, 임원은 입교인 이어야 한다.</p> <p>② 의무: 회칙 준수, 결의사항 이행 및 회비납부</p>	<p>① 권리: 선거권, 피선거권 및 결의권, 다만, 임원은 입교인 이어야 한다. <u>다만, 본회 회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권리를 상실한다.</u> <개정></p> <p>② 의무: 규칙준수, 결의사항 이행 및 회비납부. <u>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u> <개정></p>	<p>① ‘다만... 상실한다’ 삽입</p> <p>②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 삽입</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임 원</p> <p>제8조(고문) 본 회는 본 회 운영의 지도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임 원</p> <p>제9조(고문)</p> <p>① 본 회는 본회 운영을 위하여 역대 총회장 중에서 <u>만70세 이상인</u> 회원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개정></p> <p><u>② 교계와 사회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이를 총회에서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신설></u></p>	<p>‘항’으로 구분</p>
<p>제10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거하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제11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u>다만, 임기 중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출할 수 없다.</u><개정></p>	<p>‘다만,.... 없다’ 삽입</p>
<p>제17조(의결 정족수)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외의 모든 의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p>	<p>제18조(의결 정족수)본 회 규칙의 개정은 <u>남선교회 전국연합회에 청원하여 법에 따라 개정하고 그 외의 의안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개정></p>	
<p>제21조(연락)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지방연합회에 가입하고 의무를 이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시행세칙 및 연락</p> <p><u>제22조(시행세칙)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회에서 시행 세칙으로 정하여 한다.<신설></u></p> <p>제23조(연락)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u>○○지방회연합회</u>에 가입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22조(규칙 개정의 인준) 본 회의 회칙개정은 총회에서 재</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삭제></p>	<p>‘제18조’와 중복으로 삭제</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u>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기독교대한감리교회 입법위원회의 인준을 얻은 후에 시행한다.</u>		
제23조(보고) 본 회 회원명부와 임원명부, 예산안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당회 및 지방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교회 입법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설>	
	제2조(규칙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에 준한다.<신설>	
31.남선교회 지방회연합회 규칙	31.남선교회 지방회연합회 규칙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교회 남선교회 00지방연합회라 한다.(이하‘본 회’라 한다.)	제1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교회 남선교회 00지방회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개정>	자구 정리
제3조(목적) 본 회는 본 지방회 내 각 교회에 조직된 남선교회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선교, 교육, 봉사, 문화, 친교, 사회복지 등 평신도 활동을 지방연합회 별로 수행하며 소속교회 남선교회의 부흥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개체교회 남선교회와 연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본회가 주관하는 남선교회 선교 활동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개체교회의 선교 활동을 지원, 육성하며, 국내외 각 교파와 연합하여 평신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개정>	전국연합회 규칙과 동일
제2장 조직과 회원	제2장 조직과 회원	
제6조(조직) 본 회는 지방회 내 각 교회 남선교회로 조직한다.	제6조(조직) 본 회는 지방회 내 <u>개체 교회</u> 남선교회로 조직한다.<개정>	
제7조(회원 및 대의원) ① 회원: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교회 00지방회 남선교회 회원으로 한다.(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교회	제7조(회원 및 대의원) ① 회원: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교회 00지방회 개체교회 남선교회에 소속된 <u>만 48세</u> 이상의 남성으로 한다.	① ‘46세’→‘48세’

현행	개정안	비고
<p>OO지방회에 소속된 만 46세 이상 만 70세까지의 남성 성도로 한다. 단, 만 70세 이상의 회원은 특별회원으로 한다.)</p> <p>② 대의원:본 회 대의원은 본 회 임원과 개교회 대표로 한다.</p> <p>③ 대의원의 수는 다음과 같다.</p> <p>1. 각 교회의 남선교회의 회원수가 30명 미만일 때는 2명</p> <p>2. 각 교회의 남선교회의 회원수가 30명 초과할 때는 매 20명마다 1명씩 추가한다.</p>	<p>② 대의원 : 본 회 대의원은 본 회 임원과 개체교회 대표로 한다.</p> <p>③ 개체교회 대표의 수는 2명으로 한다. 다만, 복수의 남선교회가 조직된 개체 교회는 조직된 남선교회마다 1명을 추가한다.</p>	<p>② ‘개교회’→‘개체교회’</p> <p>③ 자구 정리</p>
<p>제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p> <p>① 의무 : 본 회 회원은 <u>회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u></p> <p>② 권리 : 본 회 회원은 <u>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진다. 단, 본 회 회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u></p>	<p>제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p> <p>① 의무 : 본 회 회원은 <u>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u><개정></p> <p>② 권리 : <u>본 회 회원은 임원으로 선출 될 수 있다.</u><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임 원</p> <p>제9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회를 조직한다.</p> <p>① 역대회장</p> <p>② 지도위원 : 약간 명</p> <p>③ 직전회장</p> <p>④ 회장 : 1인</p> <p>⑤ 부회장 : 약간 명</p> <p>⑥ 총무 : 1인, 부총무(<u>협동총무</u>) : 약간 명</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임 원</p> <p>제9조(임원)<좌동></p> <p>① 역대회장(<u>임기중 만 70세가 넘지 않는 이</u>) <개정></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좌동></p> <p>⑤ <좌동></p> <p>⑥ 총무 : 1명, 부총무 : 약간 명 <개정></p>	<p>① ‘70세 나이 제한’ 삽입</p>

현행	개정안	비고
⑦ 서기 : 1인, 부서기 : 약간 명 ⑧ 회계 : 1인, 부회계 : 약간 명 ⑨ 각부 부장 : 1인, 각부 차장 : 1인 ⑩ 각부 위원장 : 1인, 각부 부위원장 : 약간 명 ⑪ 감사:2인 ⑫ 자문위원 : 약간 명 (필요에 따라)	⑦ <좌동> ⑧ <좌동> ⑨ <좌동> ⑩ <좌동> ⑪ <좌동> ⑫ <좌동>	
제10조(고문) 본회는 본회 운영의 지도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10조(고문) ① 본회는 본회 운영을 위하여 역대회장 중에서 만70세 이상 인 회원을 고문으로 추대한다.<개정> ② 교계와 사회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이를 총회에서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신설>	‘항’ 구분
제11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일체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 :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시에는 임원명부에 명기된 순서에 따라 그 임무를 대리한다. ③ 총무 :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회의 모든 일반회무와 행정을 관장한다. ④ 협동총무(부총무) : 본회의 총무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⑤ 서기 : 본회 일반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장한다. ⑥ 회계 : 본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⑦ 각부 부장, 차장 : 해당 부서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⑧ 각 위원장, 부위원장 : 해당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⑨ 감사 : 본회의 사무와 회계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좌동>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부총무 : 본회의 총무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개정> ⑤ <좌동> ⑥ <좌동> ⑦ <좌동> ⑧ <좌동> ⑨ <좌동>	④ ‘협동총무’ 삭제

현행	개정안	비고
<p>⑩ <u>고문</u> 및 지도위원 : 본 회 운영을 지도한다.</p> <p>⑪ 직전회장 :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p> <p>⑫ 자문위원 : 본 회 운영을 자문한다.</p>	<p>⑩ 지도위원 : 본회 운영을 지도한다. <개정></p> <p>⑪ <좌동></p> <p>⑫ <좌동></p>	<p>⑩ ‘고문’ 삭제</p>
<p>제12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단 ① <u>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u></p> <p>② 임기 중 은퇴할 이는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p>	<p>제12조(임원 선출 및 임기)<좌동></p> <p>① <u>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회장 유고 또는 결위 시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는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u></p> <p>② 임기 중 만70세가 넘는 <u>사람은</u>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개정></p> <p>③ 임원선출 방법은 총회운영세칙으로 정한다.<개정></p>	<p>회장 결위 시 보선 방법을 제도화하고 장정에 따라 임원의 나이 제한선을 정하고 임원 선출을 위한 운영세칙 제정 근거마련</p>
	<p>제13조(임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신설></p> <p>① <u>의무 : 본 회 임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하고 임원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다만 임원회비는 총회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u></p> <p>② 권리 : 본 회 임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진다. 다만, 본 회 임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u>사람은</u> 그 권리를 상실한다.</p>	<p>제8조 회원과는 다른 임원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함으로 임원의 자격을 다루어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부 서</p> <p>제13조(부서)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단,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부서를 증감할 수 있다.</p> <p>① 신앙전도부 : 회원의 신앙생활을 교육 훈련하며 선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p> <p>② 교육부 : 회원의 영적·지적인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을 한다.</p> <p>③ 문화부 : 회원의 지식력 계발과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한</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부서 및 위원회</p> <p>제14조(부서 및 위원회)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 및 위원회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부서 및 위원회를 증감할 수 있다.</p> <p>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좌동></p>	<p>자구수정</p> <p>조의 증설로 인하여 조 번호 변경</p>

현행	개정안	비고
<p>연구 및 회보 발간활동을 한다.</p> <p>④ 사회봉사부 :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구와 봉사 사업을 한다.</p> <p>⑤ 친목사교부 :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이웃 및 국제간의 이해와 우의를 도모한다.</p> <p>⑥ 청소년지도부 : 교회 내외의 청소년을 선도 육성하고 장학 사업을 한다.</p> <p>⑦ 연합사업부 : 여성교회, 청장년선교회, 지방연합회와의 연합사업과 연회연합회가 주관하는 연합사업을 담당한다.</p> <p>⑧ 섭외부 : 본 회 사업을 위하여 본부, 관계기관 및 대외 교섭을 담당한다.</p> <p>⑨ 조직부 : 본 회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한다.</p> <p>⑩ 홍보부 : 본 회 사업을 기독교 홍보 전문매체, 일반 홍보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리고 홍보물 제작을 담당한다.</p> <p>⑪ 출판부 :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수련회책자, 회보 등의 홍보물을 출판 보급한다.</p>	<p>④ <좌동></p> <p>⑤ <좌동></p> <p>⑥ <좌동></p> <p>⑦ <좌동></p> <p>⑧ <좌동></p> <p>⑨ <좌동></p> <p>⑩ <좌동></p> <p>⑪ <좌동></p> <p>⑫ 각종위원회 : 총회 및 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신설></p>	<p>실제로 운영되어지는 각종 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p>
<p>제15조(총회)</p> <p>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p> <p>② 정기총회는 매 2년 간격으로 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p> <p>③ 총회는 제7조 제3항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대의원)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p> <p>⑤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시, 개최장소, 처리할 안건 등을 기재한 소집문서를 개최 15일 전 회원에게 발송하여</p>	<p>제16조(총회)</p> <p>① <좌동></p> <p>② 정기총회는 매 2년 간격으로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p> <p>③ <좌동></p> <p>④ <좌동></p> <p>⑤ <좌동></p>	<p>실제로 운영되는 것을 반영 (지방회 이전에 총회가 개최 됨)</p>

현행	개정안	비고
<p>야 한다.</p> <p>⑥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규칙개정 2. 임원선출 3. 사업계획의 승인 4. 결산 및 예산안 승인 5. 기타 본 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p>⑥ <좌동></p>	
<p>제18조(회장단회의) 회장단회의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p> <p>① 회장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 협동총무(부총무), 선교기금총무, 서기(부서기), 회계(부회계)로 구성한다.</p> <p>② 회장단회의는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안 사항을 협의 처리하며 처리사항을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9조(회장단회의) <좌동></p> <p>① 회장단 회의는 회장, 총무(부총무), 서기(부서기), 회계(부회계)로 구성한다.<개정></p> <p>② <좌동></p>	<p>조번호변경</p> <p>협동총무, 선교기금 총무 삭제</p>
<p>제19조(의결 정족수)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외의 의안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20조(의결 정족수) 본 회 규칙의 개정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에 청원하여 법에 따라 개정하고 그 외의 의안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p>	<p>조번호 변경</p> <p>규칙 개정의 통일성을 위하여</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재 정</p> <p>제20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임원회비, 각 교회 남선교회 부담금, 지방회보조금, 현금, 찬조금등으로 충당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재 정</p> <p>제21조(재원)본 회의 재정은 임원회비, 개체교회 남선교회 부담금, 지방회보조금, 현금, 찬조금등으로 충당한다.</p>	<p>조번호 변경</p> <p>자구수정</p>
<p>제21조(부담금) 본 회의 임원회비, 각 교회 남선교회의 부담금은 총회에서 의결한다.</p>	<p>제22조(부담금)본 회의 임원회비, 개체교회 남선교회의 부담금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개정></p>	<p>조번호변경</p> <p>자구수정</p>
	<p>제24조(감사보고) <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임원회에 보고는 회장의 요청 시 실시한다. ② 총회보고는 총회 10일 전까지 감사하여 보고한다. 	<p>감사보고에 관하여 정의하여 신설하다.</p>

현행	개정안	비고
	③ 감사이후 총회까지 기간은 전임감사가 감사하여 총회 후 첫 번째 임원회에서 보고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연 락</p> <p>제23조(연락) 본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연회연합회에 가입하고 의무를 이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시행세칙 및 연락</p> <p>제25조(시행세칙)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회에서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한다.<신설> 제26조(연락)본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연회연합회에 가입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개정></p>	필요에 따른 시행세칙을 만들 근거를 마련하다.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24조(보고) 본회는 회원명부와 임원명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지방회와 연회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삭제></p>	상회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협조하기에
<p>제25조(규칙 개정 인준) 본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밖의 모든 의안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삭제></p>	제20조에 명시되었기에
<p>제26조(규칙시행) 본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 본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p>	부칙 별도조문으로 시작
	<p>제2조(규칙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에 준한다.<신설></p>	명기되지 않은 문제의 해결
<p>32.남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p>	<p>32.남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명칭) 본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연회연합회라 한다.(이하 '본회'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명칭) 본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연회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 <개정></p>	자구 수정
<p>제3조(목적) 본회는 남선교회 각 연회연합회와 연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선교, 교육, 봉사, 문화, 친</p>	<p>제3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남선교회 각 지방회연합회와 연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본회가 주관하는 남선교회 선교 활동과</p>	전국연합회 규칙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현행	개정안	비고
<p>교, 사회복지 등 평신도 활동을 수행하며 소속 지방연합회를 지원 육성함으로써 남선교회의 부흥발전을 목적으로 한다.</p>	<p><u>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방회연합회의 선교 활동을 지원, 육성하며, 국내외 각 교파와 연합하여 평신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이바지하는데 있다.</u> <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조직과 회원</p> <p>제6조(조직) 본회는 남선교회 지방연합회와 <u>연회연합회</u>로 조직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조직과 회원</p> <p>제6조(조직) 본회는 남선교회 지방회연합회로 조직한다. <개정></p>	
<p>제7조(회원 및 대의원)</p> <p>① 회원:본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00연회 남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u>본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00연회에 소속된 만 46세 이상 만 70세까지의 남성 성도를 회원으로 한다.</u>(단, 만 70세 이상의 회원은 특별회원으로 한다.)</p> <p>② 대의원:본회 대의원은 본회 임원과 지방연합회 <u>현회장</u> 및 대표 1인으로 한다. 단, 지방연합회 <u>현</u> 회장이 본회 임원인 경우 임원명부에 명기된 부회장 순서에 따라 대의원이 된다.</p>	<p>제7조(회원 및 대의원)</p> <p>① 회원:본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개체교회 00연회 남선교회에 소속된 <u>만 48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다.</u> <개정></p> <p>② 대의원 : 본회 대의원은 본회 임원과 지방회연합회 <u>신임회장</u>으로 한다.<개정></p>	<p>청장년 회원의 연령 상향조정과 남선교회 회원은 은퇴가 없기 때문에 지방회연합회의 대표성을 지방회연합회 회장으로 국한 시키기 위하여</p>
<p>제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p> <p>① 의무 : 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p> <p>② 권리 : 본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진다. 단, 본회 회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p>	<p>제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p> <p>① 의무 : 본회 회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u>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u> <개정></p> <p>② 권리 : <u>본회 회원은 임원으로 선출 될 수 있다.</u> <개정></p>	<p>임원의 권리와 임무는 별도로 정의하고 본 조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만 명시</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임원</p> <p>제9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회를 조</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임원</p> <p>제9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회를 조직한다. <u>다</u></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직한다.</p> <p>① 역대회장</p> <p>② 지도위원 : 약간 명</p> <p>③ 직전회장</p> <p>④ 회장 : 1인</p> <p>⑤ 부회장 : 약간 명</p> <p>⑥ 총무 : 1인, 부총무 : 약간 명</p> <p>⑦ 서기 : 1인, 부서기 : 약간 명</p> <p>⑧ 회계 : 1인, 부회계 : 약간 명</p> <p>⑨ 각부 부장 : 1인, 각부 차창 : 1인</p> <p>⑩ 각부 위원장 : 1인, 각부 부위원장 : 약간 명</p> <p>⑪ 감사: 2인</p> <p>⑫ 자문위원 : 약간 명 (필요에 따라)</p> <p>⑬ 중앙위원 : 약간 명 (필요에 따라)</p>	<p>만 당연직은 본회 구성 당시로 한다. <개정></p> <p>① 역대회장(입기 중 만70세가 넘지 않는 이) <개정></p> <p>② 지도위원 : 약간 명</p> <p>③ 직전회장</p> <p>④ 회장 : 1명</p> <p>⑤ 부회장 : 약간 명</p> <p>⑥ 총무 : 1명, 부총무 : 약간 명</p> <p>⑦ 서기 : 1명, 부서기 : 약간 명</p> <p>⑧ 회계 : 1명, 부회계 : 약간 명</p> <p>⑨ 지방회회장 : 지방회연합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신설></p> <p>⑩ 각부 부장 : 1명, 각부 차창 : 1명</p> <p>⑪ 각부 위원장 : 1명, 각부 부위원장 : 약간 명</p> <p>⑫ 감사: 2명</p> <p>⑬ 자문위원 : 약간 명 (필요에 따라)</p> <p>⑭ 중앙위원 : 약간 명 (필요에 따라)</p>	<p>⑨항 지방회연합회장을 당연직 임원으로 하여 지방회의 소리가 연회 연합회에 반영 되고 협조 받기 위하여</p>
<p>제10조(고문) 본 회는 본 회 운영의 지도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p>	<p>제10조(고문)</p> <p>① 본 회는 본 회 운영을 위하여 역대회장 중에서 만70세 이상인 회원을 고문으로 추대한다.</p> <p>② 교계와 사회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이를 총회에서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p>	<p>고문의 자격을 명시하고 선정의 폭을 넓혔다.</p>
<p>제11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p> <p>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일체 회무를 총괄한다.</p> <p>② 부회장 :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시에는 임원명부에 명기된 순서에 따라 그 임무를 대리한다.</p> <p>③ 총무 :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의 모든 일반회무와 행정을 관장한다.</p>	<p>제11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p> <p>① 역대회장 :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p> <p>② 지도위원 : 본 회 운영을 지도한다.</p> <p>③ 직전회장 :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p> <p>④ 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일체 회무를 총괄한다.</p>	<p>제15조(임원의 임무)가 장을 달리하여 회의에서 다루어지기에 장과 조 번호 변경</p> <p>제9조에 따른 임원의 임무 규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④ 협동총무(부총무) : 본 회 총무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p> <p>⑤ 서기 : 본 회 일반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장한다.</p> <p>⑥ 회계 :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p> <p>⑦ 각부 부장, 차장 : 해당 부서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p> <p>⑧ 각 위원장, 부위원장 : 해당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p> <p>⑨ 감사 : 본 회의 사무와 회계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p> <p>⑩ 고문 및 지도위원 : 본 회 운영을 지도한다.</p> <p>⑪ 직전회장 :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p> <p>⑫ 자문위원 : 본 회 운영을 자문한다.</p>	<p>⑤ <u>부회장 :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시에는 임원명부에 명기된 순서에 따라 그 임무를 대리한다.</u></p> <p>⑥ 총무 :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의 모든 일반회무와 행정을 관장한다.</p> <p>⑦ <u>부총무 : 본 회의 총무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u></p> <p>⑧ 서기 : 본 회 일반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장한다.</p> <p>⑨ <u>부서기 : 본 회 서기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u></p> <p>⑩ 회계 :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p> <p>⑪ <u>부회계 : 본 회 회계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u></p> <p>⑫ <u>지방회회장 : 본회의 전반적인 사업의 운영을 협조한다.</u></p> <p>⑬ 각 부장, 차장 : 해당 부서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p> <p>⑭ 각 위원장, 부위원장 : 해당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p> <p>⑮ 감사 : 본 회의 사무와 회계 업무를 감사하여 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p> <p>⑯ 자문위원 : 본 회 운영을 자문한다.</p> <p>⑰ <u>중앙위원 : 본 회 연합사업을 협찬 지원한다.</u></p>	
	<p>제12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① <u>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회장 유고 또는 결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u></p> <p>② 임기 중 만70세가 넘는 <u>사람은</u>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개정></p> <p>③ <u>임원선출 방법은 총회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u></p>	<p>제16조(임원 선출 및 임기)가 장을 달리하여 회의에서 다루어지기에 장과 조 번호 변경</p>
	<p>제13조(임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p> <p>① <u>의무 : 본 회 임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회</u></p>	<p>제8조 회원과는 다른 임원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함으로써 임원의 자격을 다루어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p>

현행	개정안	비고
	<p><u>의 및 사업에 참여하고 임원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다만 임원회비는 총회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u> <개정></p> <p>② 권리 : 본 회 임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진다. 다만, 본 회 임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u>사람은</u>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p>	<p>하여</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부 서</p> <p>제11조(부서)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단,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부서를 증감할 수 있다.</p> <p>① 신앙전도부 : 회원의 신앙생활을 교육 훈련하며 전도운동을 적극 추진한다.</p> <p>② 교육부 : 회원의 영적·지적인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을 한다.</p> <p>③ 문화부 : 회원의 지식력 계발과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한 연구 및 회보 발간활동을 한다.</p> <p>④ 사회봉사부 :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구와 봉사 사업을 한다.</p> <p>⑤ 친목사교부 :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이웃 및 국제간의 이해와 우의를 도모한다.</p> <p>⑥ 청소년지도부 : 교회 내외의 청소년을 선도 육성하고 장학 사업을 한다.</p> <p>⑦ 연합사업부 :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연회 연합회와의 연합사업과 전국연합회가 주관하는 연합사업을 담당한다.</p> <p>⑧ 섭외부 : 본 회 사업을 위하여 본부, 관계기관 및 대외 교섭을 담당한다.</p> <p>⑨ 조직부 : 본 회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부서 및 위원회</p> <p>제14조(부서 및 위원회)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 및 위원회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총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부서 및 위원회를 증감할 수 있다.</p> <p>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좌동></p> <p>⑤ <좌동></p> <p>⑥ <좌동></p> <p>⑦ <좌동></p> <p>⑧ <좌동></p> <p>⑨ <좌동></p>	<p>조의 증설 및 이전으로 인하여 조 번호 변경</p> <p>실제로 운영되어지는 상설 위원회와 필요에 따라 조직 운영 되어지는 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⑫, ⑬항 증설</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직을 구성하고 운영한다.</p> <p>⑩ 홍보부 : 본 회 사업 활동을 기독교 홍보 전문매체, 일반 홍보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리고 홍보물 제작을 담당한다.</p> <p>⑪ 출판부 :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수련회책자, 회보 등의 홍보물을 출판 보급한다.</p>	<p>⑩ <좌동></p> <p>⑪<좌동></p> <p><u>⑫ 각종위원회 : 총회 및 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u> <신설></p> <p><u>⑬ 특별위원회 : 설치 목적에 따라 세칙을 정하여 운영한다.</u> <신설></p>	
<p>제15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p> <p>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일체 회무를 총괄한다.</p> <p>② 부회장 :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시에는 임원명부에 명기된 순서에 따라 그 임무를 대리한다.</p> <p>③ 총무 :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의 모든 일반회무와 행정을 관장한다.</p> <p>④ 협동총무(부총무) : 본 회의 총무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p> <p>⑤ 서기 : 본 회 일반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장한다.</p> <p>⑥ 회계 :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p> <p>⑦ 각부 부장, 차장 : 해당 부서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p> <p>⑧ 각 위원장, 부위원장 : 해당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p> <p>⑨ 감사 : 본 회의 사무와 회계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p> <p>⑩ 고문 및 지도위원 : 본 회 운영을 지도한다.</p> <p>⑪ 직전회장 :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p>	<p><이동></p>	<p>제3장 임원의 제11조로 이전</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⑫ 자문위원 : 본 회 운영을 자문한다. ⑬ 중앙위원 : 본 회 연합사업을 협찬 지원한다.		
제16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다만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 중 은퇴할 이는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이동>	제3장 임원의 제12조로 이전
제17조(회장단회의) 회장단회의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단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 협동총무(부총무), 선교기금총무, 서기(부서기), 회계(부회계)로 구성한다. ② 회장단회의는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안 사항을 협의 처리하며 처리사항을 임원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8조(회장단회의) <좌동> ① 회장단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부총무), 서기(부서기), 회계(부회계)로 구성한다. <개정> ② <좌동>	조의 증설 및 이전으로 인하여 조 번호 변경 협동총무, 선교기금총무 삭제
제18조(의결 정족수)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외의 의안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의결 정족수) 본 회 규칙의 개정은 <u>남선교회 전국연합회에 청원하여 법에 따라 개정하고 그 외의 의안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개정>	조의 증설 및 이전으로 인하여 조 번호 변경 규칙개정의 통일성을 위하여
제6장 재 정 제19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임원회비, 각 지방연합회의 의무부담금, 연회 본부 보조금, 현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6장 재 정 제20조(재원) 조번호만 변경	조의 증설 및 이전으로 인하여 조 번호 변경
제20조(의무 부담금) 본 회의 임원회비, 각 지방연합회 의무부담금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21조(의무 부담금) 조번호만 변경	조의 증설 및 이전으로 인하여 조 번호 변경
제21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에 시작하여 익년 2월 말일까지 한다.	제2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u>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3월 말일 까지로 한다.</u> <개정>	조 번호 변경. 실제로 운영되는 것을 반영.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u>제23조(감사보고)</u> <신설></p> <p>① 임원회에 보고는 회장의 요청 시 실시한다.</p> <p>② 총회보고는 총회 10일 전까지 감사하여 보고한다.</p> <p>③ 감사이후 총회까지 기간은 전임감사가 감사하여 총회 후 첫 번째 임원회에서 보고한다.</p>	<p>감사보고에 관하여 정의하여 신설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7장 시행세칙 및 연락</u> <신설></p> <p><u>제24조(시행세칙)</u>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회에서 시행 세칙으로 정하여 한다 <신설></p> <p><u>제25조(연락)</u> 본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에 가입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신설></p>	<p>필요에 따른 시행세칙을 만들 근거를 마련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u>제22조(보고)</u> 본회는 회원명부와 임원명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해당 연회 본부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및 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삭제></p>	<p>상회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협조하기에</p>
<p><u>제23조(규칙 개정 인준)</u> 본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밖의 모든 의안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삭제></p>	<p>제19조에 중복명시 되었기에</p>
<p><u>제24조(규칙시행)</u> 본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p><u>제1조(시행일)</u> 본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p>	<p>부칙 별도조문으로 시작</p>
	<p><u>제2조(규칙준용)</u>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에 준한다.<신설></p>	<p>명기되지 않은 문제의 해결</p>
<p>33.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p>	<p>33.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라 한다.(이하'본 회'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이하 본 회)라 한다. <개정></p>	자구 수정
<p>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에 둔다.</p>	<p>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에 둔다. <개정></p>	제5조에 관할이 정의되어 있고 사무소가 별도로 개설되어 있음.
<p>제3조(목적) 본 회는 남선교회 각 연회연합회와 연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선교, 교육, 봉사, 문화, 친교, 사회복지 등 전국 규모의 평신도 활동을 수행하고 그 활동의 기본정책을 연구·수립하며 국내외 각 교파 평신도연합회와 연결하여 평신도 연합활동에 참여함과 아울러 각 연회연합회 활동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전국 각 교회 남선교회의 부흥발전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남선교회 각 연회연합회와 연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본회가 주관하는 전국적 규모의 남선교회 선교 활동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각 연회연합회 및 지방회연합회의 선교 활동을 지원, 육성하며, 국내외 각 교파와 연합하여 평신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개정></p>	선교 지향적으로 보완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조직과 회원</p> <p>제7조(회원 및 대의원)</p> <p>① 회원: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된 만 46세 이상 만 70세까지의 남성 성도를 회원으로 한다.(단, 만 70세 이상의 회원은 특별회원으로 한다.)</p> <p>② 대의원:본 회 대의원은 본 회 임원과 지방연합회 현 회장으로 한다. 단, 지방연합회 현 회장이 본 회 임원인 경우 임원명부에 명기된 부회장 순서에 따라 대의원이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조직과 회원</p> <p>제7조(회원 및 대의원)</p> <p>① 회원: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개체교회 남선교회에 소속된 만 48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다. <개정></p> <p>② 대의원 : 본 회 대의원은 본 회 임원과 지방회연합회 신입회장으로 한다. <개정></p>	
<p>제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p> <p>① 의무 : 본 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p>	<p>제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p> <p>① 의무 : 본 회 회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사</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하며 각종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p> <p>② 권리 : 본 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진다. 단, 본 회 회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p>	<p><u>업에 적극 참여한다.</u> <개정></p> <p>② 권리 : <u>본 회 회원은 임원으로 선출 될 수 있다.</u> <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임 원</p> <p>제9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회를 조직한다.</p> <p>① 역대회장</p> <p>② 지도위원 : 약간 명</p> <p>③ 직전회장</p> <p>④ 회장 : 1명</p> <p>⑤ 부회장 : 약간 명(각 연회연합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p> <p>⑥ 총무 : 1명(각 연회연합회 총무는 당연직 협동총무로 한다.)</p> <p>부총무 : 약간 명</p> <p>⑦ 서기 : 1명(각 연회연합회 서기는 협동서기로 한다.)</p> <p>부서기 : 약간 명</p> <p>⑧ 회계 : 1명(각 연회연합회 회계는 협동회계로 한다.)</p> <p>부회계 : 약간 명</p> <p>⑨ 각부 부장 : 1명, 각부 차장 : 1명</p> <p>각부 위원장 : 1명, 각부 부위원장 : 약간 명</p> <p>⑩ 감사:2명</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임 원</p> <p>제9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u>임원회를 조직하며, 임원의 총수는 700명 이내로 한다. 다만 당연직은 본회 구성당시로 한다.</u> <개정></p> <p>① 역대회장(임기 중 만70세가 넘지 않는 이) <개정></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좌동></p> <p>⑤ <좌동></p> <p>⑥ <좌동></p> <p>⑦ 서기 : 1명(각 연회연합회 서기는 <u>당연직</u> 협동서기로 한다.) <개정></p> <p>부서기 : 약간 명</p> <p>⑧ 회계 : 1명(각 연회연합회 회계는 <u>당연직</u> 협동회계로 한다.) <개정></p> <p>부회계 : 약간 명</p> <p>⑨ <좌동></p> <p>⑩ <좌동></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⑪ 자문위원 : (필요에 따라) ⑫ 중앙위원 : (필요에 따라) ⑬ 임원의 총수를 600명 이내로 한다.	⑪ <좌동> ⑫ <좌동> ⑬ <u>운영위원 : 지방회연합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u> <개정> ⑭ <u>선교기금총무 : 1명</u> <신설> ⑮ <u>선교기금부총무 : 약간명</u> <신설> ⑯ <u>선교기금서기 : 1명</u> <신설> ⑰ <u>선교기금부서기 : 약간명</u> <신설> ⑱ <u>선교기금회계 : 1명</u> <신설> ⑲ <u>선교기금부회계 : 약간명</u> <신설>	
제10조(고문) 본회는 본회 운영의 지도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10조(고문) ① 본회는 본회 운영을 위하여 <u>역대회장 중에서 만70세 이상인 회원을 고문으로 추대한다.</u> <개정> ② <u>교계와 사회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이를 총회에서 고문으로 주대할 수 있다.</u> <개정>	고문의 자격을 명시하고 선정의 폭을 넓혔다.
제11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 본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고 일체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 :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시에는 임원명부에 명기된 순서에 따라 그 임무를 대리한다. ③ 총무 :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회의 모든 일반회무와 행정을 관장한다. ④ 협동총무(부총무) : 본회의 총무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⑤ 서기 : 본회 일반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장한다. ⑥ 협동서기(부서기) : 본회 서기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⑥ <좌동>	제9조의 개정에 따라 늘어나는 임원의 임무를 항을 증설하여 명시하다.

현행	개정안	비고
<p>⑦ 회계 :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p> <p>⑧ 협동회계(부회계) : 본 회 회계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p> <p>⑨ 각부 부장, 차장 : 해당 부서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p> <p>⑩ 각 위원장, 부위원장 : 해당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p> <p>⑪ 감사 : 본 회의 사무와 회계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p> <p>⑫ <u>고문</u> 및 지도위원 : 본 회 운영을 지도한다.</p> <p>⑬ 직전회장 :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p> <p>⑭ 자문위원 : 본 회 운영을 자문한다.</p> <p>⑮ 중앙위원 : 본 회 연합사업을 협찬 지원한다.</p>	<p>⑦ <좌동></p> <p>⑧ <좌동></p> <p>⑨ <좌동></p> <p>⑩ <좌동></p> <p>⑪ 감사 : 본 회의 사무와 회계 업무를 감사하여 <u>임원회 및</u> 총회에 보고한다.<개정></p> <p>⑫ 지도위원 : 본 회 운영을 지도한다.</p> <p>⑬ <u>역대회장 및</u> 직전회장 :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p> <p>⑭ <좌동></p> <p>⑮ <좌동></p> <p>⑯ <u>운영위원(본회의 전반적인 사업의 운영을 협조한다. <신설></u></p> <p>⑰ <u>선교기금총무(부총무) : 본회선교기금 업무의 일반 회무와 행정을 관장한다.<신설></u></p> <p>⑱ <u>선교기금서기(부서기) : 본회 선교기금 일반문서와 통신사무를 관장한다.<신설></u></p> <p>⑲ <u>선교기금회계(부회계) : 본회 선교기금 업무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한다. <신설></u></p>	
<p>12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① 다만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p> <p>② 임기 중 은퇴할 이는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p>	<p>제12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단임으로 한다.)</p> <p>①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u>다만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u></p> <p>② <u>임기 중 만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개정></u></p> <p>③ 임원선출 방법은 총회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설></p>	<p>회장 선출을 단임제로 하고 회장 궐위 시 보선방법을 제도화 하고</p> <p>장정에 따라 임원의 나이 제한선을 정하고</p> <p>임원 선출을 위한 운영세칙 제정 근거마련</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13조(임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신설></p> <p>① 의무 : 본 회 임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하고 임원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다만 임원회비는 총회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권리 : 본 회 임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진다. 다만, 본 회 임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u>사람은</u>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p>	<p>제8조 회원과는 다른 임원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함으로 임원의 자격을 다루어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부 서</p> <p>제13조(부서)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단,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부서를 증감할 수 있다.</p> <p>① 신앙전도부 : 회원의 신앙생활을 교육 훈련하며 선교활동을 적극 추진한다.</p> <p>② 교육부 : 회원의 영적·지적인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을 한다.</p> <p>③ 문화부 : 회원의 지식력 계발과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한 연구 및 회보 발간활동을 한다.</p> <p>④ 사회봉사부 :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구와 봉사 사업을 한다.</p> <p>⑤ 친목사교부 :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이웃 및 국제간의 이해와 우의를 도모한다.</p> <p>⑥ 청소년지도부 : 교회 내외의 청소년을 선도 육성하고 장학 사업을 한다.</p> <p>⑦ 연합사업부 : 여성교회,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와의 연합사업과 타 교파 평신도 단체와의 연합사업을 담당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부서 및 위원회</p> <p>제14조(부서 및 위원회)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 및 위원회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총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부서 및 위원회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p> <p>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좌동></p> <p>⑤ <좌동></p> <p>⑥ <좌동></p> <p>⑦ <좌동></p>	<p>실제로 운영되어지는 상설 위원회와 필요에 따라 조직 운영 되어지는 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⑫, ⑬항 증설</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⑧ 섭외부 : 본 회 사업을 위하여 본부, 관계기관 및 대외 교섭을 담당한다.</p> <p>⑨ 조직부 : 본 회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한다.</p> <p>⑩ 홍보부 : 본 회 사업 활동을 기독교 홍보 전문매체, 일반 홍보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리고 홍보물 제작을 담당한다.</p> <p>⑪ 출판부 :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수련회책자, 회보 등의 홍보물을 출판 보급한다.</p>	<p>⑧ <좌동></p> <p>⑨ <좌동></p> <p>⑩ <좌동></p> <p>⑪ <좌동></p> <p>⑫ <u>각종위원회 : 총회 및 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u> <신설></p> <p>⑬ <u>특별위원회 : 설치 목적에 따라 세칙을 정하여 운영한다.</u> <신설></p>	
	<p>제23조(감사보고) <신설></p> <p>① 임원회에 보고는 회장의 요청 시 실시한다.</p> <p>② 총회보고는 총회 10일 전까지 감사하여 보고한다.</p> <p>③ 감사이후 총회까지 기간은 전임감사가 감사하여 총회 후 첫 번째 임원회에서 보고한다.</p>	<p>감사보고에 관하여 정의하여 신설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시행세칙</p> <p>제25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p>	<p>필요에 따른 시행세칙을 만들 근거를 마련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22조(보고) 본회는 회원명부와 임원명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삭제></p>	<p>상회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협조하기에</p>
<p>제23조(규칙 개정 인준) 본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p>	<p><삭제></p>	<p>제18조와 중복 되었기에</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밖의 모든 의안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규칙시행)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별도조문으로 시작
	제2조(규칙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에 준한다.	명기되지 않은 문제의 해결
34. 교회 여성교회 규칙	34. 교회 여성교회 규칙	
제1장 이름과 목적	제1장 총 칙	
제1조 이회는 <u>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여성교회</u> 라 한다.	제1조(이름) 본회는 <u>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여성교회</u> 라 한다. <개정>	
제2조 이회는 ○○교회 안에 둔다.	제2조(목적) 본회는 여성 성도들이 그리스도 정신으로 교회를 도우며 국내외선교와 일반사업에 힘쓰며 지방회 여성교회 사업과 여성교회 전국 연합회 사업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현행 제2조 삭제
제3조 이회는 여신도들이 그리스도 정신으로 교회를 도우며 국내외 선교사업과 일반 사회봉사 사업으로 천국운동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제3조→개정안 제2조로 수정보완
제2장 조직과 회원	제2장 조직과 회원	
제4조 이회는 목적에 찬동하는 여신도 3명 이상이 있는 교회는 선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3조(조직과 회원) 여성 성도 3명 이상이 있는 교회는 여성교회를 조직할 수 있다. <개정>	
	제4조(회원의 의무) <신설> ① 월례회 및 기타 여성교회 집회에 참석한다. <신설> ② 매월 회비를 납부한다. <신설> ③ 여성교회 회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신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신설>	현행 제2장 조직과 회원에 개정 제4조(회원의 의무)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임원</p> <p>제5조 이회의 임원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서기 2명(정, 부), 회계 2명(정, 부), 감사 2명, 각부 부장 1명`</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의회</p> <p>제5조(종류) 본 회 안에는 다음과 같은 의회를 둔다.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원회 2. 월례회 3. 부원회 4. 정기총회 5. 임시총회 	<p>현행 제3장 임원 → 개정안 제4장으로 이동 수정보완</p>
<p>제6조 이 회의 직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일체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도우며 회장이 결석할 때 그 임무를 대리한다. ③ 서기는 이 회의 일체의 문서와 통신 사무를 장리한다. ④ 회계는 이 회의 금전출납을 장리한다. ⑤ 각부 부장은 그 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⑥ 감사는 회계 장부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⑦ 교회 담임자는 고문이 된다. 	<p>제6조(임원회) 임원회의 조직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들(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각부 부장)로 구성하며, 회무의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며 일반회무를 처리한다. 	<p>현행 제6조는 개정안 제12조로 수정</p> <p>현행 제6조 6항,7항→개정안 제6장 감사 및 자문으로 분리 이동 및 수정보완</p>
<p>제7조 이 회의 임원은 이 회 정기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정하되 재선될 수 있다.</p>	<p>제7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11월 중 당회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올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보고 및 계획 2. 예산 결산안 심의 3. 임원 선출 4. 기타 중요한 사항 ④ 임시총회는 소집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처리한다.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8조 이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조(월례회) 매월 1회 회장이 소집하며 기도회, 신입회원통과, 사업보고, 회비납부 및 기타사업을 처리한다. <개정>	
제9조 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부원회) 각 부의 필요에 따라 부장이 소집한다. <개정>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부서</p> <p>제10조 이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를 두고 직무를 분담하며 각 부에 부원 약간 명을 둔다.</p> <p>① 선교부 : 회원의 신앙 향상과 국내외 선교사업을 장려한다.</p> <p>② 교육부 : 성경통신과 사업을 힘쓰며 기독교 문화의 보급과 회원의 교양을 지도한다.</p> <p>③ 생활지도부 : 교회를 도우며 계몽운동, 부업장려, 생활개선, 후생사업 등을 장려한다.</p> <p>④ 기획부 : 각 부 사업을 기획 검토하고 프로그램을 연구 발전시킨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임원</p> <p>제10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p> <p>①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서기 2명(정, 부), 회계 2명(정, 부), 각부 부장 1명, 감사 2명으로 하되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시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 동안으로 한다.<개정></p> <p>② 한 교회에 여선교회 지회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회장 및 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그 명칭은 ‘대표’란 말을 사용한다. 예)대표회장<신설></p>	<p>현행 제4장 부서→개정안 제5장으로 이동, 전체문구 수정 및 조정</p> <p>개정안 제10조 2항 <신설> 현행 제10조 3항 ‘생활지도부’ <삭제></p>
	<p>제11조(임원의 임기) <신설></p> <p>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재선에 한한다.</p> <p>② 재임한 부회장이라도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도 회장과 부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p>	개정안 제11조 <신설>
	<p>제12조(임원의 임무) <개정></p> <p>① 회장 :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한다.</p> <p>②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도우며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이 이를 대리한다.</p> <p>③ 총무 : 총무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무를 맡아 감당하고 회원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사업발전에 힘쓴다.</p> <p>④ 서기 : 본회의 일반 문서 및 기록 사무를 담당, 정리한다.</p>	

현행	개정안	비고
	⑤ 회계 : 회계는 본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임원회, 정기총회, 월례회 등에 보고한다. ⑥ 각부 부장 : 부 회원을 두고 사업 안을 계획 실천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재정</p> <p>제11조 이 회의 재정은 회비, 의연금, 현금으로 충당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부서</p> <p>제13조(부서) 본 회의 목적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신설></p> ① 기획부 : 본 회의 모든 행정을 관할하여 사업추진 및 발전에 힘쓴다. ② 재정부 : 회원의 회비납부를 장려하며 재정조달에 힘쓴다. ③ 선교부 : 회원의 신앙향상과 국내외 선교에 힘쓴다. ④ 교육부 : 본회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 및 강연회 등을 개최한다. ⑤ 사회사업부 : 안식관 운영과 사랑의 등지 운영 협조 및 지역봉사에 힘쓴다. ⑥ 연구부 : 본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쓴다. ⑦ 청소년지도부 : 청소년선교회 회원의 신앙지도와 선교의식개발 및 선교활동 참여에 힘쓴다. ⑧ 문화부 : 회원들의 창작력을 개발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선교에 힘쓴다.	현행 제5장 재정 → 개정안 제8장으로 이동 개정안 제13조 부서에 사회사업부, 연구부, 청소년지도부, 문화부 <신설>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집회</p> <p>제12조 이 회의 집회</p> ① 정기 총회 : 매년 당회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월례회 : 매월 1차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원회 : 회무의 필요를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감사 및 자문</p> <p>제14조(자문) 교회의 담임목사와 여교역자를 자문으로 추대한다. <개정></p>	현행 제6장 집회, 제7장 직무 → 개정안 제3장 '의회'로 명칭 변경하고 내용 보완수정
	<p>제15조(감사) <개정></p>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현행	개정안	비고
	② <u>감사는 2명으로 하고 결산을 감사하며 매년 정기총회에 이를 보고한다.</u>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u>직무</u></p> <p>제13조 이 회의 각 집회의 직무</p> <p>① <u>정기총회 : 임원개선, 사업보고, 재정보고, 예산통과 및 다른 사무를 처리한다.</u></p> <p>② <u>월례회 : 기도회, 신입회원통과, 사업보고, 회비수납, 임원보선 및 다른 사업을 처리한다.</u></p> <p>③ <u>임원회 : 회무 진행상 필요한 일을 연구 토의한다.</u></p> <p>④ <u>부회 : 각 부 사업을 토의한다.</u></p> <p>⑤ <u>연락 : 본회는 그 지방 여성교회에 소속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연합회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u>선거</u></p> <p>제16조(선거시기) 선거는 매년 11월 중 당회 전에 실시한다.<신설></p>	<p>개정안 제7장 선거 조항 <신설></p> <p>제7장 직무→개정안 제3장 ‘의회’로 명칭 변경하고 내용 보완수정</p>
	<p>제17조(입후보자의 자격) <신설></p> <p>① <u>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지닌 자로 신앙생활 및 여성교회의 활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이라야 한다.</u></p> <p>② <u>여성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다른 회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어야 한다.</u></p>	
	<p>제18조(선거방법)<신설></p> <p>① <u>추천된 후보를 무기명으로 투표하되 감사 및 임원의 당선은 재석회원 과반수를 얻어야 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재석회원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u></p> <p>② <u>회장선거에 있어 재석회원 2/3의 표를 얻지 못할 경우 3차례까지 투표를 하고 그 후에는 종다수를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u></p> <p>③ <u>대표회장 및 대표임원의 선출은 전체 지회 회장단에서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u>부칙</u></p> <p>제14조 필요한 경우 세칙을 만들되 담임목사와 지방 총무의</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u>재정</u></p> <p>제18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월례회비와 사업 찬조금 기타 수</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금으로 한다. 다만, 지방회 부담금은 매 계삭회 시 지방회여선교회에 납부한다.<개정>	
제15조 이 회 부담금은 그 지방 총무를 경유하여 대회 회계에 게 보낸다.		
제16조 본 회의 규칙 개정은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의 가표를 얻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얻은 후에 시행한다.		
	제9장 규칙제정 및 개정 제19조(제정 및 개정) 본회의 규칙제정 및 개정은 여선교회전국연합회 임원회에서 심의 제정 및 개정한다.<신설>	개정안 제9장 규칙제정 및 개정 <신설>
	제10장 부칙 제20조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규칙에 준한다.<개정>	현행 제8장 부칙→개정안 제10장 부칙으로 이동, 수정보완
35. 여선교회 지방연합회 규칙	35. 여선교회 지방연합회 규칙	
제1장 이름과 목적 제1조 이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지방 여선교회라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이름) 본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지방회 연합회라 한다.<개정>	‘기독교대한감리회 ○○지방 여선교회’→‘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지방회 연합회’로 수정(개정안 제1조)
제2조 이회는 지방 내 각 교회에 조직된 여선교회를 연합하여 그리스도 정신으로 교회를 도우며 국내외 선교사업과 일반사회 봉사사업으로 천국운동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해당 지방회 안에 둔다.<신설>	‘소재지’ 신설
	제3조(목적) 본회는 연회여선교회 및 여선교회전국연합회의 계획에 따라 그 지방회 안에 있는 각 교회여선교회를 지도한다.<개정>	‘제2조’→‘제3조’ 이동
제2장 조직	제2장 조직과 회원	‘제2장, 제3장’→제2장 ‘조직과 회원’으로 통합조정 ‘제3조’→‘제4조 1항’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3조 이 회는 그 지방 각 교회 안에 있는 여선교회들로 조직한다.	제4조(조직)<개정> ① 본회는 지방회 안에 있는 개체교회 여선교회들로 조직한다. ② 각 지방회에 지방회 여선교회를 두어 지방회회장이 이를 지도하도록 한다.	
	제5조(회원) 본회 회원은 지방회 안에 있는 개 교회 여선교회 회원들로 한다.<개정>	
제3장 <u>회원</u> 제4조 지회대표, 회장, 지방임원, 여교역자, 그 지방에 파송 받은 국내외 여선교사로 한다. 단 지방 감리사는 고문이 됨.	제3장 <u>의회</u> 제6조(종류) ① 임원회 ② 계삭회 ③ 부원회 ④ 정기총회 ⑤ 임시총회	'제4조'→'제5조'
	제7조(임원회) 임원회의 조직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들(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각부 부장, 감사)로 구성하며, 1년에 4회 이상 계삭회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며 일반회무를 처리한다. ③ 계삭회를 준비한다.	
	제8조(계삭회) 1년에 4회 1, 4, 7, 10월에 모인다.	
	제9조(부원회) 1년에 1회 이상 각 부 부원회의를 각부 부장이 소집한다.	
	제10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2년에 1회 전국연합회 총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며 지방회 여선교회 임원, 개체교회 여선교회 대표회장과 대표 1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u>명으로 구성한다.</u></p> <p>② <u>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총대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u></p> <p>③ <u>정기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보고 및 계획 2. 예산 결산안 심의, 승인 3. 임원 선출 4. 기타 중요한 사항 <p>④ <u>임시총회는 소집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처리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임원</p> <p>제5조 이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p> <p>회장 1명, 부회장 1명, 서기 2명(정, 부), 회계 2명(정, 부), 각 부 부장 1명, 감사 2명</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임원</p> <p>제11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p> <p>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서기 2명(정, 부), 회계 2명(정, 부), 각부 부장 1명, 감사 2명으로 <u>하되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시는 임원회에서 보선하여 잔여 임기동안 임원직을 맡는다.<개정></u></p>	‘제5조’→‘제11조’
<p>제6조 이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u>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한다.</u> ② <u>부회장은 모든 사업을 협동하여 발전에 힘쓴다.</u> ③ <u>서기는 본3 회의 회록과 통신을 정리 보관한다.</u> ④ <u>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일을 장리한다.</u> ⑤ <u>각부 부장은 부원회를 두고 사업안을 계획 실천한다. 단, 부원은 부장이 택한다.</u> 	<p>제12조(임원의 임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u>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선에 한 한다.<개정></u> ② <u>재임한 부회장이라도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도 회장과 부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개정></u> 	‘제6조’→‘제4장 제13조’
<p>제7조 이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u>2선</u>에 한한다.</p>	<p>제13조(임원의 의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u>회장 :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하고 연회 및 전국연합회와 관련된 사업을 처리한다. 또한 회장은 직무상 지방회 회원이 되며 지방회 실행부위원이 된다.<개정></u> ② <u>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은 도우며 회장의 유고시 연장자가 회장을 대리한다.<개정></u> 	‘제7조’→‘제12조 2항’ 삽입 ‘제7조 2선’→ 제4장 제12조 1항.‘재선’

현행	개정안	비고
제11조 이 회의 부서는 연합회 부서에 따라 실천한다.	<이동>	현행 제11조, 개정안 제5장에 보완 수정
제12조 회장은 직무상 그 지방 회원이 되며{ 「교리와 장정」 제4편 제4장 제43조(지방회 조직) 제⑤항} 지방실행위원{ 「교리와 장정」 제4편 제4장 제56조(지방실행위원회의 조직) 제④항}이 된다.		현행 제12조, 개정안 제13조에 보충하여 수정(개정안 제13조 1항)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재정</p> <p>제13조 이회는 그 지방 여선교회의 부담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한다.</p> <p>① 대회에서 결정한 부담금 및 사업비는 지방 여선교회연합회 회계에게 보낸다.</p> <p>② 이회 회계 장부는 매년 마지막회시 감사보고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감사</p> <p>제15조(감사)<신설></p> <p>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p> <p>② 감사는 2명으로 하고 매년 결산을 감사하며 매년 마지막 계삭회와 정기총회에 이를 보고한다.</p>	<p>개정안 제6장 제15조 신설</p> <p>현행 제6장 제13조→개정안 제8장 제18조로 보완 수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부칙</p> <p>제14조 이회 규칙은 필요에 의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총회인준과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선거</p> <p>제16조(입후보자의 자격)<신설></p> <p>①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지닌 자로 신앙생활 및 여선교회의 활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이라야 한다.</p> <p>② 회장 입후보자는 감리교회에 10년 이상 출석하고 2년 이상 지방회 임원 및 지회 회장으로 봉사한 이로 권사 이상으로 한다.</p>	<p>개정안 제7장 신설</p>
	제17조(선거방법) 추천된 후보를 무기명으로 투표하되 감사 및 임원의 당선은 재석회원 과반수를 얻어야하며 회장은 재석회원 2/3의 표를 얻지 못할 경우 2차례까지 투표하고 그 후에는 종다수를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신설>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재정</p> <p>제18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개체교회 여선교회 부담금과 사업운영을 위한 찬조금, 각종 수입금을 한다. 다만, 전국연합회 총회에서 결정한 부담금 및 사업비는 매 계삭회가 끝나는 즉시 연회연합회에 송금한다.<개</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정>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부칙</p> <p>제19조(규칙제정 및 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u>여선교회전국연합회</u> 규칙에 준한다.<개정></p>	<p>현행 제7장 제14조 부칙→개정 제9조로 수정</p>
36. 여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36. 여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이름)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u>여선교회 전국연합회</u> ○○연회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이름) 본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u>여선교회 ○○연회 연합회</u>라 한다. <개정></p>	<p>현행 제1조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연회’→‘여선교회 ○○연회 연합회’로 수정</p>
<p>제3조(목적) 본회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본 회 안에 있는 각 지방 여선교회가 교회 및 사회봉사와 선교사업에 힘쓰도록 연구하고 도우며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사업에 동참한다.</p>	<p>제3조(목적) 본회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본 회 안에 있는 각 <u>지방회</u> 여선교회가 교회 및 사회봉사와 선교사업에 힘쓰도록 연구하고 도우며 여선교회전국연합회 사업에 동참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조직과 회원</p> <p>제4조(조직)</p> <p>① 본회는 그 연회 안에 있는 각 지방 여선교회들로 조직한다.</p> <p>② 각 지방에 지방 여선교회를 두어 지방회장이 이를 지도하도록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조직과 회원</p> <p>제4조(조직)</p> <p>① <u>본회는 그 연회 안에 있는 각 지방회 여선교회들로 조직한다.</u></p> <p><개정></p> <p>② <u>각 지방회에 지방회 여선교회를 두어 지방회회장이 이를 지도하도록 한다.</u> <개정></p>	
<p>제5조(회원) 그 연회 안에 있는 여선교회 회원으로 한다.</p>	<p>제5조(회원) 그 연회 안에 있는 여선교회 회원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임원</p> <p>제6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p> <p>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서기 2명(정, 부), 회계 2명(정, 부), 각부 부장 1명, 감사 2명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u>의회</u></p> <p>제6조(종류)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의회를 둔다.</p> <p>① 임원회</p>	<p>현행 제3장 임원→제4장 임원으로 이동</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② 정기총회 ③ 임시총회	
제7조(임원의 임기) ①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선에 한한다. ② 재임한 부회장이라도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도 회장과 부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제7조(임원회) ① 격월로 정기 임원회를 가진다.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의무) 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하고 전국연합회와 관련한 사업을 처리한다. ②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도우며 회장의 유고시 연장자가 회장을 대리한다. ③ 총무 : 총무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무를 감당하고 지방 여선교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사업발전에 힘쓴다. ④ 서기 : 본 회의 일반문서 및 기록사무를 담당 정리한다. ⑤ 회계 :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임원회, 정기총회, 연회 여선교회 등에 보고한다. ⑥ 각부 부장 : 부회원을 두고 사업안을 계획 실천한다. ⑦ 감사 : 매년 결산을 감사하여 매년 실행위원회 및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제8조(임원회의 결의사항) ①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수행, 일반회무를 처리한다. ② 임원회를 제외한 각종회의에 부의할 사항 준비 ③ 기타 필요한 사항	현행 제8조 5항 ‘연회여선교회’ <삭제>(개정안 제13조 5항) 현행 제8조 7항 「매년 실행위원회」 <삭제>(개정안 제13조 7항)
	제9조(각종회의 의결) 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중 과반수 참석으로 성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선택권을 가진다. ③ 감사는 발언권을 가지되 의결권은 없다.	

현행	개정안	비고
	④ 회의 종결 후 서기는 회의록을 낭독하고 그 진위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p>제10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p> ①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 전국 총회 전에 회장이 소집하며 연회임원, 지방회회장, 지방회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대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승인 2.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3. 임원 선출 4. 기타 중요한 사항 ④ 임시총회는 소집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처리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의회</p> <p>제9조(종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의회를 둔다.</p> ① 임원회 ② 실행위원회 ③ 정기총회 ④ 임시총회 <p>제10조(임원회)</p> ① 격월로 정기 임원회를 가진다.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p>제11조(임원회의 결의사항)</p> ① 총회 및 실행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수행, 일반 회무를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임원</p> <p>제11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서기 2명(정, 부), 회계 2명(정, 부), 각부 부장 1명, 감사 2명으로 한다.</p> <p>제12조(임원의 임기)</p>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선에 한 한다. ② 재임한 부회장이라도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도 회장과 부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p>제13조(임원의 임무)</p> ① 회장 :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하고 전국연합회와 관련한 사업을 처리한다. ②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도우며 회장의 유고시 연장자가 회장을 대리한다.	현행 제4장 의회→제3장 의회로 이동 현행 제9조 ②항 ‘실행위원회’ <삭제>(개정안 제6조) 현행 제11조 ①항 ‘실행위원회’ <삭제>(개정안 제8조 1항)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처리한다.</p> <p>② 임원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에 부의할 사항 준비</p> <p>③ 기타 필요한 사항</p> <p>제12조(각종 회의 의결)</p> <p>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중 과반수 참석으로 성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p> <p>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선택권을 가진다.</p> <p>③ 감사는 발언권을 가지되 의결권은 없다.</p> <p>④ 회의 종결 후 서기는 회의록을 낭독하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p> <p>제13조(실행위원회) 실행위원회의 조직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p> <p>① 실행위원회는 연회임원, 지방회장으로 구성하며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p> <p>②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및 필요한 안건처리</p> <p>③ 사업보고 및 계획, 결산 및 예산안 심의</p> <p>④ 기타 필요한 사항</p> <p>제14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p> <p>① 정기총회는 2년에 1회 10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연회임원, 지방회장, 지방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p> <p>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대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p> <p>② 정기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 승인 2.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3. 임원선출 	<p>③ 총무 : 총무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무를 감당하고 지방회 여성교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사업발전에 힘쓴다.</p> <p>④ 서기 : 본회의 일반 문서 및 기록 사무를 담당 정리한다.</p> <p>⑤ 회계 : 회계는 본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임원회, 정기총회에 보고한다.</p> <p>⑥ 각부 부장 : 부 회원을 두고 사업 안을 계획 실천한다.</p> <p>⑦ 감사 : 매년 결산을 감사하며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p>	<p>현행 제12조→ 개정안 제9조로 이동 (현행 제14조 ①항 ‘2년에 1회 10월 중에’ → ‘매년 11월 중 전국 총회 전에’로 수정)</p> <p>현행 제13조(실행위원회) <삭제></p> <p>현행 제14조 → 개정안 제10조로 이동</p>

현행	개정안	비고
<p>4. 기타 중요한 사항</p> <p>③ 임시총회는 소집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처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u>자문 및 감사</u></p> <p>자문 : 연회의 감독을 자문으로 추대한다.</p> <p>감사</p> <p>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p> <p>② 감사는 2명으로 하고 매년 결산을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이를 보고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u>부서</u></p> <p>제14조(부서) 본회의 목적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p> <p>① 기획부 : 본 회의 모든 행정을 관할하며 사업추진 및 발전을 위하여 <u>힘쓴다.</u><개정></p> <p>② 재정부 : 회원의 회비납부를 장려하며 재정조달에 힘쓴다.</p> <p>③ 선교부 : 회원의 신앙향상 및 국내외 선교와 여선교회 선교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힘쓴다.<개정></p> <p>④ 교육부 : 본회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 및 강연회를 개최한다.</p> <p>⑤ 사회사업부 : 안식관 운영과 사랑의 등지 운영 및 협조, 지역봉사에 힘쓴다.<개정></p> <p>⑥ 연구부 : 본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쓴다.</p> <p>⑦ 청소년지도부 : 청소년선교회 회원의 신앙지도와 선교의식개발 및 선교활동 참여에 힘쓴다.</p> <p>⑧ 문화부 : 회원들의 창작력을 개발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선교에 힘쓴다.</p>	<p>현행 제5장 자문 및 감사→제6장으로 이동</p> <p>(개정안 제5장 제14조 3항)</p> <p>(개정안 제5장 제14조 5항)</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u>부서</u></p> <p>제15조(부서) 본 회의 목적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p> <p>① 재정부 : 회원은 회비납부를 장려하며 재정조달에 힘쓴다.</p> <p>② 선교부 : 회원의 신앙향상 및 국내외 선교에 힘쓴다.</p> <p>③ 교육부 : 본 회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u>자문 및 감사</u></p> <p>제15조(자문 및 감사)</p> <p>① 자문 : 연회의 연회장을 자문으로 추대한다.</p> <p>② 감사</p> <p>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p> <p>2. 감사는 2명으로 하고 매년 결산을 감사하며 정기총회에 이를 보고한다.</p>	<p>현행 제6장 부서→제5장으로 이동</p> <p>현행 제6장 제15조→개정안 제5장 제14조 1항 기획부 삽입</p> <p>현행 제6장 제15조 ②항에 '여선교회 선교교회의 부흥과'</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및 강연회를 개최한다.</p> <p>④ 사회사업부 : 안식관 운영과 <u>감리교 여선교회 사회복지재단</u> 운영 및 협조, 지역봉사에 힘쓴다.</p> <p>⑤ 연구부 :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쓴다.</p> <p>⑥ 청소년지도부 : 청소년선교회 회원의 신앙지도와 선교의식 개발 및 선교활동 참여에 힘쓴다.</p> <p>⑦ 문화부 : 회원들의 창작력을 개발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선교에 힘쓴다.</p>		<p>발전을 위해' 삽입</p> <p>현행 제15조 4항 '감리교여선교회 사회복지재단'→'사랑의 등지 운영 및 협조'로 수정</p>
<p>제7장 선거</p> <p>제16조(임원선거) 본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거하며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p>	<p>제7장 선거</p> <p>제16조(임원선거) 본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거하며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p>	<p>현행 제7장 제17조 ①항에 '지방회여선교회에서 4년 이상의 임원경력이 있는' 삽입</p>
<p>제17조(입후보자의 자격)</p> <p>①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지닌 자로 신앙생활 및 여선교회의 활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p> <p>② 회장 입후보자는 감리교회에 10년 이상 <u>출석한 이</u>로 지방 및 연회에서 4년 이상 임원으로 <u>봉사한 자</u>라야 하며 내규에 준한다.</p>	<p>제17조(입후보자의 자격)</p> <p>1.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지닌 자로 신앙생활 및 여선교회의 활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이라야 하며 <u>지방회여선교회에서 4년 이상의 임원경력이 있는</u> 자라야 한다.<개정></p> <p>2. 회장 입후보자는 감리교회에 10년 이상 <u>출석하고</u> 지방회 및 연회에서 4년 이상 임원으로 <u>봉사한 이</u>로 <u>전국연합회 공천위원회의 심의 후 통과된 자</u>로 내규에 준한다.<개정></p>	<p>(개정 제7장 제17조 1항)</p> <p>현행 제17조 2항 '출석한 이'로'→출석하고, '봉사한 자라야'→'봉사한 이'로 전국연합회 공천위원회의 심의 후 통과된 자로' 수정</p> <p>(개정 제7장 제17조 2항)</p>
<p>제8장 재정</p> <p>제19조(재정) 여선교회 전국연합회에서 지방에 부담한 지방부담금은 연합회로 보내고 <u>연합회에서는</u> 연회활동을 위해 각 연회에 필요경비를 지급한다.</p>	<p>제8장 재정</p> <p>제19조(재정) 여선교회 전국연합회에서 지방회에 부담한 지방회부담금은 <u>연회를 통하여 전국연합회로 보내고 전국연합회에서는</u> 연회 활동을 위해 각 연회에 필요경비를 지급한다.<개정></p>	<p>현행 제8장 제19조 '연합회에 보내고'→'연회를 통하여 전국연합회로 보내고', '연합회에서는'→'전국연합회에서는'으로 수정(개정안 제19조)</p>
<p>37.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p>	<p>37.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p>	
<p>제1장 총칙</p>	<p>제1장 총칙</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조(이름)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 전국연합회라 한다.	제1조(이름) 본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 전국연합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조(소재지) 본회 사무소는 <u>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u> 안에 둔다.<개정>	‘서울특별시’→‘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
제3조(목적) 본 회는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하여 회원들의 신앙향상, 여성지도력개발, 교회발전 등을 위해 노력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국내외선교, 사회선교, 농어촌선교 및 복지사회 구현에 힘쓴다.	제3조(목적) ① <u>여성교회 각 연회연합회와 연결하여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회원들의 신앙향상, 여성지도력개발, 교회발전 등을 위해 노력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국내외선교, 사회선교, 농어촌선교 및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정책을 연구, 수립, 실천한다.<개정></u> ② <u>각 연회연합회 활동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전국 각 교회 여성교회의 부흥 발전을 도모한다.<개정></u> ③ <u>국내외 각 교회 평신도연합회와 연결하여 교회일치운동과 평신도 연합활동에 참여한다.<개정></u>	제3조 → 1, 2, 3 항으로 수정
	제4조(소속) 본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 관할 하에 둔다.<신설>	‘제4조(소속)’ 신설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조직 및 기관</p> <p>제4조(조직 및 기관)</p> <p>① 본 회의 조직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모든 여성교회로 하며 1) 연회 여성교회 2) 지방 여성교회 3) 개체 여성교회를 둔다.</p> <p>② 각 연회에 연회 여성교회를 두어 연회 회장이 이를 지도하도록 한다.</p> <p>③ 연회의 회장은 전국연합회의 부회장이 되며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 전국연합회 복지재단의 이사가 되고 회장은 이사장이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조직 및 기관</p> <p>제5조(조직 및 기관)</p> <p>① 본회의 조직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모든 여성교회로 하며 1) 연회여성교회 2) 지방회여성교회 3) 개체여성교회를 둔다.</p> <p>② 각 연회에 연회 여성교회를 두어 연회 회장이 이를 지도하도록 한다.</p> <p>③ <u>연회의 회장은 전국연합회의 부회장이 된다.<개정></u></p> <p>④ <u>본회 부설기관으로 여성교회관, 은퇴여교역자를 위한 안식관, 100주년 기념 제주도연수원, 선교교회, 사랑의 등지를 둔다.<신설></u></p>	‘기독교대한감리회 ... 이사장이 된다’ 삭제

현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장 의회</u></p> <p>제5조(종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의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임원회 ② 실행위원회 ③ 전국대회 ④ 정기총회 ⑤ 임시총회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장 회원과 의무</u><신설></p> <p>제6조(회원과 의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u>회원</u> : 본회 회원은 제1장 3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u>여선교회 회원</u>으로 한다.<신설> ② <u>의무</u> : 본회 회원은 법으로 규정된 모든 의무(지방회, 연회, 전국연합회 부담금)를 이행해야 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모든 회에서 회원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신설> ③ <u>총대</u> : 총회대표는 전국연합회 임원, 각 연회대표 5명(부회장 2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각 지방회회장으로 한다.<신설> 	<p>‘제3장 회원과 의무’ 신설</p> <p>‘실행위원회’ 삭제</p> <p>‘제3장 의회→제4장 의회’</p>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장 각 의회 회원 자격 및 직무</u></p> <p>제6조(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매월 1회 정기임원회를 가진다. ② 임시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장 의회</u></p> <p>제7조(종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의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 임원회 ② 2. 정기총회 ③ 3. 임시총회 ④ 4. 전국대회 	<p>‘제4장 각 의회회원 자격및직무 → ‘제5장’ 수정</p>
<p>제7조(임원회의 결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총회 및 실행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수행하며 일반 회무를 처리한다. ② 임원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에 부의할 사항 준비 ③ 여선교회에 관련된 제반 규칙 및 규정 심의 ④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⑤ 기타 필요한 사항 	<p><삭제></p>	<p>현행 제7조①항 실행위원회 <삭제></p>
<p>제8조(실행위원회) 실행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실행위원회는 임원(연합회, 연회), 지방회장으로 구성하며,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단, 필요시 회장이 임시 실행위 	<p><삭제></p>	<p>현행 제8조 (실행위원회) <삭제></p>

현행	개정안	비고
<p><u>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u></p> <p>② <u>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및 필요한 안건 처리</u></p> <p>③ <u>사업보고 및 계획, 결산 및 예산안 심의</u></p> <p>④ <u>기타 필요한 사항</u></p>		
<p>제9조(전국대회)</p> <p>① <u>참가자격 : 전국대회는 매년 4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여선교회 개체교회 회장 전원, 개체교회 대표(40명 이내인 개체교회 1명, 40명 이상인 개체교회는 40명에 1명), 지방 대표, 지방 임원, 연회 임원, 전국연합회 임원, 여교역자 대표, 미 여선교사 대표, 여장로회 대표, 각 부 위원, 청소년선교회 회원 15명에 1명 비례로 선정된 대표로 구성한다. 단, 당해연도 장소 및 사정에 의하여 대회 규모의 축소 또는 확대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u></p> <p>② 전국대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보고 및 토의 2. 결산 및 예산 보고 3. 선교사 파송 4. 전국 회원의 신앙향상과 친교모임 5. 기타사항 	<p><삭제></p>	<p>현행 제9조(전국대회)→개정안 제12조로 수정</p> <p>현행 제9조 ①항 ‘참가자격’→개정안 제12조 1항 ‘개최일과 참가자격’으로 보완하여 수정</p>
<p>제10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p> <p>① <u>정기총회는 2년에 1회, 1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연합회 임원, 연회 임원, 지방회장, 지방대표 1명, 여교역자 대표 10명, 여장로회 대표 5명으로 구성한다.</u></p> <p>② <u>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총대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u></p> <p>③ <u>정기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 승인 2. 예산 심의 및 결산 승인 	<p><삭제></p>	

현행	개정안	비고
3. 임원선출 4. 규칙개정 5. 기타 중요한 사항 ④ 임시총회는 소집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처리한다.		
제11조(각종 회의 의결) 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중 과반수 참석으로 성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선택권을 가진다. ③ 총무 및 감사는 발언권을 가지되 의결권은 없다. ④ 회의 종결 후 서기는 회의록을 낭독하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삭제>	현행 제11조는 개정안 제13조로 이동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임원</p> 제12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연회별 1명씩), 총무 1명(직책상), 서기 2명, 회계 2명, 각부 부장 1명, 감사 4명으로 한다. ① 자문위원 : 본회는 본회 운영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합회 임원 경력 4년 이상으로 공로가 뛰어난 자문위원 약간 명을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추대할 수 있다. ② 자문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각 의회 회원 자격 및 직무</p> 제8조(임원회) ① 매월 1회 정기임원회를 가진다. ② 임시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현행 제5장 임원→개정 제6장 임원으로 수정 현행 제12조 ‘부회장(연회별 1명씩)’→개정 제14조 ‘부회장(각 연회회장)’으로 수정 현행 제12조 1항 자문위원→개정 제8장 자문위원으로 이동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중임한 부회장이라도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회장 제외인 임원도 회장과 부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③ 총무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회의 결의사항) ①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수행하며 일반회무를 처리한다. ② 임원회를 제외한 각종회의에 부의할 사항 준비 ③ 여선교회에 관련된 제반 규칙 및 규정 심의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⑤ 총회에서 임원선출이 있었을 시 구임원의 임기는 총회 폐회와 더불어 만료된 것으로 한다.</p>	<p>④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p> <p>⑤ 기타 필요한 사항</p>	
<p>제14조(임원의 선출)</p> <p>① 본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p> <p>② 총무는 연합회 내규에 의한 공채를 원칙으로 하며 임원회의 추천으로 <u>실행위원회의 인준</u>을 받아야 한다. 단, 재석위원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p>	<p>제10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p> <p>①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u>전국연합회 임원, 연회 대표 5명, 지방회회장으로 구성한다.</u><개정></p> <p>② <u>정기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u><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 승인 2.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3. 임원 선출 4. 규칙 개정 5. 기타 중요한 사항 <p>③ <u>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대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u><개정></p> <p>④ 임시총회는 소집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처리한다.</p>	<p>현행 제14조 2항 ‘실행위원회의 인준’→개정 제16조 2항 ‘총회의 인준’으로 수정</p>
<p>제15조(결원 임원의 선출)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p>	<p>제11조(회계년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p>	
<p>제16조(임원의 자격)</p> <p>① 회장은 감리교회에 15년 이상 출석한 이로 지방 및 연회에서 4년 이상 임원으로 봉사한 자라야 하며, 내규에 준한다.</p> <p>② 부회장 및 부장, 감사는 4년 이상 지방 및 연회에서 봉사한 자라야 하며 내규에 준한다.</p>	<p>제12조(전국대회)</p> <p>① <u>개최일과 참가자격 : 전국대회는 매년 4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전국의 모든 회원과 청소년선교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당해연도 장소 및 사정에 의하여 대회 규모의 축소 또는 확대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u><개정></p> <p>② 전국대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보고 2. 결산 및 예산 보고 3. 선교사 파송 4. 전국 회원의 신앙향상과 친교모임 	<p>현행 제16조 1항에 ‘무흠하게’ 삽입(개정안 제18조 1항)</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17조(임원의 의무)</p> <p>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p> <p>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임원회에서 부회장 중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의 실무를 담당하며 <u>지방회장과 사무를 연락한다.</u>(기타 총무에 관한 사항은 연합회 내규에 의한다.)</p> <p>④ 서기는 본 회의 일반 문서 및 기록 사무를 정리한다.</p> <p>⑤ 회계는 본 회의 모든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결산과 예산을 임원회와 <u>실행위원회, 전국대회, 정기총회</u>에 보고한다.</p> <p>⑥ 각부 부장은 그 부서의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전국대회와 실행위원회, 정기총회에 보고한다.</p> <p>⑦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며 임원회, <u>실행위원회</u> 및 총회에 참석하여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5. 기타사항</p> <p>제13조(각종회의 의결)</p> <p>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중 과반수 참석으로 성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p> <p>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선택권을 가진다.</p> <p>③ 총무 및 감사는 발언권을 가지되 의결권은 없다.</p> <p>④ 회의 종결 후 서기는 회의록을 낭독하고 그 진위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p>	<p>현행 제17조 3항 ‘지방회회장과 사무를 연락한다’→‘본회의 모든 시설~연락한다’ 보완 수정(개정안 제19조 3항)</p> <p>현행 제17조 5항 ‘실행위원회’ <삭제>, ‘전국대회, 정기총회’의 순서를 ‘정기총회, 전국대회’로 수정, 7항 ‘실행위원회’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u>부서</u></p> <p>제18조(부서구별) 본 회의 목적 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p> <p>① 기획부 : 본 회의 모든 행정을 관할하며 사업추진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p> <p>1. 인사위원회 : 본 회 직원의 인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을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여 심사하고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p> <p>2. 규칙위원회 : 규칙의 제정, 개정에 대하여 심의하여 총회</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u>임원</u></p> <p>제14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u>부회장(각 연회 회장)</u>, 총무 1명(직책상), 서기 2명, 회계 2명, 각부 부장 1명, 감사 4명으로 한다.<개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에 상정개정토록 하고 규칙해석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규칙 해석을 맡는다.</p> <p>3. 회관관리위원회 : 여선교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맡는다.</p> <p>4. 감리교 여선교회 사회복지재단 운영위원회 : 연합회 사회복지재단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맡는다.</p> <p>② 재정부 : 회원의 회비 납부를 장려하며 필요한 재정조달에 힘쓴다.</p> <p>③ 선교부 : 회원의 신앙향상과 국내외 선교에 힘쓴다.</p> <p>1. <u>국내선교위원회</u></p> <p>2. <u>해외선교위원회</u></p> <p>3. 사회선교위원회</p> <p>④ 교육부 : 본 회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 및 강연회 등을 개최한다.</p> <p>1. 성서연구위원회</p> <p>2. 여성개발위원회</p> <p>3. 장학위원회</p> <p>4. 교육자문위원회</p> <p>⑤ 사회사업부 : 안식관 운영과 지역봉사에 힘쓴다.</p> <p>1. 안식관운영위원회</p> <p>⑥ 연구부 :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쓴다.</p> <p>1. <u>환경보전연구위원회</u></p> <p>2. 기타조사연구위원회</p> <p>⑦ 청소년지도부 : 청소년선교회원의 신앙지도와 선교의식 개발 및 선교활동 참여에 힘쓴다.</p> <p>1. 교회청소년선교위원회</p> <p>2. 학교청소년선교위원회</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3. 청년선교위원회</p> <p>⑧ 문화부 : 회원들의 창작력을 개발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선교에 힘쓴다.</p> <p>1. 음악위원회</p> <p>2. 연극위원회</p> <p>3. 미술 및 창작위원회</p> <p>4. 섭외위원회</p>		
	<p>제15조(임원의 임기) <개정></p> <p>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선에 한한다.</p> <p>② 재임한 부회장이라도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도 회장과 부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p> <p>③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합 6년)</p> <p>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⑤ 총회에서 임원선출이 있었을 시 구임원의 임기는 총회 폐회와 더불어 만료된다.</p>	
	<p>제16조(임원의 선출) <신설></p> <p>① 본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p> <p>② 총무는 연합회 내규에 의한 공채를 원칙으로 하며 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석위원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p>	
	<p>제17조(결원 임원의 선출) <신설></p> <p>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p>	
	<p>제18조(임원의 자격) <신설></p> <p>① 회장은 감리교회에 15년 이상 무흠하게 출석한 이로 지방회 및 연회에서 4년 이상 임원으로 봉사한 자라야 하며 내규에 준한다.</p> <p>② 부회장 및 부장, 감사는 4년 이상 지방회 및 연회에서 봉사한 자라야 하며 내규에 준한다.</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19조(임원의 의무) <신설></p> <p>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p> <p>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임원회에서 부회장 중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의 실무를 담당하며 본 <u>회의 모든 시설과 기관 즉 연합회 사무실, 회관, 안식관, 연수원, 선교교회, 사랑의 등지의 제반 사무(인사, 행정, 재정)를 지휘, 관장하며 각 연회와 지방회와 사무를 연락한다.</u>(기타 총무에 관한 사항은 연합회 내규에 의한다.)</p> <p>④ 서기는 본 회의 일반 문서 및 기록 사무를 정리한다.</p> <p>⑤ 회계는 본회의 모든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결산과 예산을 임원회와 <u>정기총회, 전국대회</u>에 보고한다.</p> <p>⑥ 각 부 부장은 그 부서의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정기총회, 전국대회에 보고한다.</p> <p>⑦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며 임원회, 총회에 참석하여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제7장 <u>선거 및 방법</u></p> <p>제19조(선거) 본 회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하여 공천위원회를 둔다.</p>	<p>제7장 <u>부서</u></p> <p>제20조(부서구별) 본회의 목적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p> <p>① 기획부 : 본 회의 모든 행정을 관할하며 사업추진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사위원회 : 본 회 직원의 인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을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여 심사하고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2. 규칙위원회 : 규칙의 제정, 개정에 대하여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 개정토록하고 규칙해석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규칙해석을 맡는다. 3. 회관관리위원회 : 여선교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맡는다. 4. <u>연수원운영위원회 : 연수원의 관리 및 운영을 맡는다.<개정></u> 5. <u>홍보출판위원회 : 본회의 사업을 홍보하며 모든 책자 및 회보를 발</u> 	

현행	개정안	비고
	<p><u>간한다.</u><개정></p> <p>6. <u>섭외위원회</u><개정></p> <p>② 재정부 : 회원의 회비납부를 장려하며 필요한 재정조달에 힘쓴다.</p> <p>1. <u>바자위원회</u> <개정></p> <p>③ 선교부 : 회원의 신앙향상과 국내외 선교에 힘쓴다.</p> <p>1. 국내선교위원회 : <u>국내의 선교와 여성교회 선교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힘쓴다.</u><개정></p> <p>2. 국외선교위원회</p> <p>3. 사회선교위원회</p> <p>④ 교육부 : 본회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 및 강연회 등을 개최한다.</p> <p>1. 성서연구위원회</p> <p>2. 여성개발위원회</p> <p>3. 장학위원회</p> <p>4. 교육자문위원회</p> <p>⑤ 사회사업부 : 안식관 운영, <u>사랑의 등지 운영</u>과 지역봉사에 힘쓴다.<개정></p> <p>1. 안식관 운영위원회</p> <p>2. <u>사랑의 등지 운영위원회</u><개정></p> <p>⑥ 연구부 : 본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쓴다.</p> <p>1. <u>환경위원회</u><개정></p> <p>2. <u>여성지위향상연구위원회</u><신설></p> <p>3. 기타조사연구위원회</p> <p>⑦ 청소년지도부 : 청소년선교회원의 신앙지도와 선교의식 개발 및 선교 활동 참여에 힘쓴다.</p> <p>1. 교회청소년선교위원회</p> <p>2. 학교청소년선교위원회</p> <p>3. 청년선교위원회</p> <p>⑧ 문화부 : 회원들의 창작력을 개발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선교에 힘쓴다.</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1. 음악위원회 2. 연극위원회 3. 미술 및 창작위원회	
제20조(공천위원회 구성) ① 공천위원은 회장과 부회장 및 임원회에서 선출하는 위원 등 9명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위원장이 된다. 회장이 피선거권자가 될 시는 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② 임기가 만료되어 피선거권이 있는 임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단, 본인이 중임을 포기할 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제20조 1항 ‘임원회에서 선출하는 위원 등 9명’과 2항 <삭제>(개정안 제23조)
제22조(간사의 직무) ① 총무는 간사가 되며 규정에 의한 업무를 준수하며 공정한 선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 2명 이상의 확인을 받아 비치하고 중요사항을 기록한 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장 제22조 ①항을 ‘제25조’로 분리
제23조(공천위원회의 의무) ① 위원회는 총회 60일 전에 각 연회에 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부장은 위원회가 각 연회에서 추천한 <u>임원후보자</u> 를 심의하여 본인의 의사를 타진한 후 공천위원회에서 선정할 수도 있으며 회장은 배수공천하되 총회 20일 전에 이력사항을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공시방법은 각 연회 및 후보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하며 피선거권 및 선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선거 직전 위원회는 후보자로 하여금 순서를 추첨하여 짧게 출마 의도를 밝히게 하며 회장 투표시는 추천사를 할 수 있게 한다.		제23조 2항 ‘부장은’ 삭제, ‘위원회가’→‘위원회는’ 수정 (개정안 제26조 2항)

현행	개정안	비고
<p>⑤ 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장은 당선확정을 선포한다.</p>		
<p>제26조(투표 방법)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회장, 부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은 확정된 신입원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① 회장은 재석대표 2/3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단, 2차 투표시까지 2/3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할 시는 종다수로 결정한다.</p> <p>② 부회장의 선출은 각 연회별로 하되 총회시 인준을 받아야 한다.</p> <p>③ 임원 및 감사의 선출은 종다수로 결정한다.</p>		<p>제26조 2항→제30조 2항 ‘단, 전국연합회 공천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한 후보여야 한다’ 삽입</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상벌</p> <p>제27조(표창) 본회 회원 및 임원과 직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를 얻어 본회 회장이 표창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자문위원</p> <p>제21조(자문위원)<개정></p> <p>① <u>자문위원 : 본회는 본회 운영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합회 임원 경력 4년 이상으로 공로가 뛰어난 자문위원 약간 명을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추대할 수 있다.<개정></u></p> <p>② <u>자문위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개정></u></p>	<p>제8장 상벌 → 제10장 상벌로 이동 제27조, → 제31조로 수정</p>
<p>제29조(징계위원회와 징계 종류) 본회 회원 및 임직원이 제28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 징계할 수 있다.</p> <p>① 징계위원회는 임원회에서 선출한 6인의 위원과 회장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p> <p>② 징계위원장은 제28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재적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회 2/3 이상의 찬성결의로 변상, 자격정지, 직위해제, 직원면직, 감봉, 건책의 징계를 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는 징계결의와 동시에 해산되고 위원의 위촉은 해</p>		<p>제29조 1항 ‘임원회에서 선출된 6인의 위원과 회장으로 구성되며’→‘인사위원들로 구성되며’로 수정 (제33조 1항)</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체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재정</p> <p>제30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연합회가 배정한 부담금과 사업 운영을 위한 찬조금, 회관 임대수입 및 현금 등으로 충당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선거 및 방법</p> <p>제22조(선거) 본 회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하여 공천위원회를 둔다.</p>	제9장→ 제11장으로 이동
	<p>제23조(공천위원회 구성) 공천위원은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위원장이 된다. 회장이 피선거권자가 될 시는 위원 중 1명을 호선한다.<개정></p>	
	<p>제24조(공천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p> <p>① 위원회는 필요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25조(총무의 직무) <신설></p> <p>① 총무는 규정에 의한 업무를 준수하며 공정한 선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p> <p>② 총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 2명 이상의 확인을 받아 비치하고 중요사항을 기록한 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p>	‘제22조’ ①항 ‘간사가 되며’ 삭제, ②항의 ‘간사’→‘총무’로 수정
	<p>제26조(공천위원회의 의무)</p> <p>① 위원회는 총회 60일 전에 각 연회에 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u>임원후보자(부회장 포함)</u>를 심의하여 본인의 의사를 타진한 후 공천위원회에서 선정할 수도 있으며 회장은 배수 공천하되 총회 20일 전에 이력사항을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p> <p>③ 공시방법은 각 연회 및 후보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하며 피 선거권 및 선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선거 직전 위원회는 후보자로 하여금 순서를 추천하여 짧게 출마 의도를 밝히게 하며 회장 투표시는 추천사를 할 수 있게 한다.</p>	‘제26조 2항에 ‘임원후보자(부회장 포함)’ 보완 수정

현행	개정안	비고
	⑤ 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장은 당선확정을 선포한다.	
	제27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신설> 납부하여야 할 각종 부담금을 총회 30일 전까지 완납하지 못한 연회 또는 지방회의 회장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제28조(투표용지 및 참관인) ① 투표용지는 위원회에서 직인을 날인하여 선거 실시 전 선거인 명부와 대조, 날인하고 교부한다. ② 투개표 참관인은 후보자가 지명하는 2명으로 한다.	
	제29조(개표 및 무효표) ① 개표는 참관인 입회하에 공천위원이 한다. ② 다음 표는 무효로 한다. 1. 위원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가 아닌 것 2. ○표가 아니고 인장, 사인 등을 표시한 것 3. 기타 위원회에서 무효라고 판정한 것	
	제30조(투표방법)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회장, 부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은 확정된 신 임원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회장은 재석대표 2/3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다만, 2차 투표 시 까지 2/3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할 시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② 부회장(연회 회장)의 선출은 각 연회별로 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만, 전국연합회 공천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후보여야 한다. <개정> ③ 임원 및 감사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제10장 부칙	제10장 상벌	‘제10장→’제12장’ 으로 이동
제31조(임원의 정년) 전국연합회 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제31조(표창) 본 회 회원 및 임원과 직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를 얻어 본 회 회장이 표창한다.	
제32조 본회는 민법상의 위임 규정을 적용치 않는다.	제32조(징계대상) 본회 회원과 임원 및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는 자는 징계한다.</p> <p>① 본 회 규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p> <p>② 본 회의 명예를 손상케 한 자</p> <p>③ 본 회의 목적과 사업운영에 비협조적이거나 사무집행을 방해하고 근무를 태만히 한 자</p> <p>④ 업무상 부정행위가 있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회의 재산에 손실을 입힌 자</p> <p>⑤ 기타 각종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자</p>	
<p>제33조 본 회 규칙은 전국연합회 총회를 통과한 후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p>	<p>제33조(징계위원회와 징계 종류) 본 회 회원 및 임직원이 제28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 징계할 수 있다.</p> <p>① 징계위원회는 인사위원들로 구성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p> <p>② 징계위원장은 제32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재적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회 2/3 이상의 찬성 결의로 변상, 자격정지, 직위해제, 직원면직, 감봉,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는 징계결의와 동시에 해산되고 위원의 위촉은 해제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장 재정</p> <p>제34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연합회가 배정한 부담금과 사업운영을 위한 찬조금, 회관 임대수입 및 현금 등으로 충당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2 장 부칙</p> <p>제35조(임원의 정년) 전국연합회 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p>	
	<p>제36조 본 회의는 민법상의 위임 규정을 적용치 않는다.</p>	
	<p>제37조 본 회 규칙은 전국연합회 총회를 통과한 후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p>	

현행	개정안	비고
	제38조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 및 통상규칙에 준한다.	

현행	개정안	비고
<p>38. 미주특별연회 정상화를 위한 임시조치법</p>	<p>38. 미주특별연회 정상화를 위한 임시조치법<폐지></p>	
<p>제1조(목적) 이 법은 미주특별연회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간 및 관할) 미주특별연회는 제29회 총회 임시감독회장 선임이후 제30회 총회 회기 종료일까지 감독회장의 관할 하에 다음 각 항을 행한다.</p> <p>① 미주특별연회는 화합과 정상화를 위하여 이 기간 동안 제30회 감독 선거를 유보하고 화합과 정상화 이후 감독 선거를 실시한다.</p> <p>② 감독회장은 미주특별연회 회원 중에서 정상화를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p> <p>③ 감독회장은 대책위원회와 협의를 통하여 제30회 총회 회기 종료일까지 전권을 가지고 미주특별연회 정상화를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독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12. 9. 25)</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폐지></p>	
<p>39. 호남선교연회 특별법</p>	<p>39. 호남선교연회 특별법</p>	
<p>제8조(선교연회의 직무)</p> <p>① 선교연회의 직무는 연회직무에 준한다.</p> <p>② 선교연회는 매년 1회 모이고 감독회장이 주관한다.</p> <p>③ 선교연회 관리자는 그 사업을 감독회장에게 보고한다.</p> <p>④ 선교연회는 총회대표 중에서 총회 실행부위원을 제외한 감리회본부 각국·원 위원 및 재단이사과 각 위원회 위원 1명을 교역자 또는 평신도 중에서 선출하여 파송한다. 다만 심사·재판·조정과 관련된 위원은 제외한다.</p>	<p>제8조(선교연회의 직무)</p> <p>① 선교연회의 직무는 연회직무에 준한다.</p> <p>② 선교연회는 매년 1회 모이고 감독회장이 주관한다.</p> <p>③ 선교연회 관리자는 그 사업을 감독회장에게 보고한다.</p> <p>④ <u>선교연회는 총회대표 중에서 총회 실행부위원을 제외한 감리회본부 각국·원 위원 및 재단이사과 각 위원회 위원 1명을 교역자 또는 평신도 중에서 선출하여 파송한다.</u> <개정></p>	<p>“다만” 이하 삭제</p>

현행	개정안	비고
<p>⑤ 선교연회는 선교의 편의를 위하여 장정에 준하여 별도의 내규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p> <p>부 칙 (2012. 9. 25)</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⑤ 선교연회는 선교의 편의를 위하여 장정에 준하여 별도의 내규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p> <p>부 칙 (2015. 10. 30)</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연회공동발의 법률개정안

1. 2014년도 연회시 중부연회 외 4개 연회에서 공동발의된 개정안

연 행	개정안	비고
<p>[91] 제26조(발의권) 헌법 및 법률의 발의권은 다음과 같다.</p> <p>①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p> <p>② 4개 이상의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p> <p>③ 입법회의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및 법률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p> <p>④ 감독 및 감독회장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을 위한 헌법 및 법률 개정은 그 헌법 및 법률 제안 당시의 감독 및 감독회장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p>	<p>[91] 제26조(발의권) 헌법 및 법률의 발의권은 다음과 같다.</p> <p>①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현행안과 동일)</p> <p>② 입법회의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및 법률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현행안 ②항은 삭제, ③항이 ②항으로 바뀜)</p> <p>③ 감독 및 감독회장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을 위한 헌법 및 법률 개정은 그 헌법 및 법률 제안 당시의 감독 및 감독회장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p> <p>(내용은 현행안과 동일, 항만 ④항에서 ③항으로 바뀜)</p>	
<p>[429] 제134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p> <p>다음 각 항에 따라 입법의회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다.</p> <p>① 장정개정위원회에서 개정하고자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 정관, 규정의 개정안</p> <p>②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p> <p>③ 4개 이상의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p> <p>④ 장정개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의하여 발의된 헌법 개정안 및 법률개정안에 대하여는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견만</p>	<p>[429] 제134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p> <p>다음 각 항에 따라 입법의회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다.</p> <p>① 장정개정위원회에서 개정하고자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 정관, 규정의 개정안 (현행안과 동일)</p> <p>②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 (현행안과 동일)</p> <p>(현행안 ③항은 삭제)</p> <p>③ 다음 각 호에 따라 입법의회에 상정하는 모든 법안은 입법의회 개최 60일 전까지 장정개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장정개정위원회에 접수된 개정안은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문제가 없을 시에는 그대로 입법의회에 상정하고, 접수된 개정안이 모순되거나, 불균형, 또는 관련 법률과의 충돌 등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회나 위원회에 이유를 적시하여 반송하여 다시 조정하</p>	

<p>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입법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p>	<p>여 접수토록 하고 재 접수된 개정안을 입법의회에 상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제안한 법안 2. 각 연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제안한 법안 3. 입법의회 각 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소관 법안에 대하여 재적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제안한 법안 4. 유지재단이사회, 교역자은급재단이사회, 태화복지재단이사회, 사회복지재단이사회, 장학재단이사회에서 해당 법률 및 정관과 규정에 대하여 재적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제안한 법안 5. 입법의회 회원 20명 이상의 발의로 제안한 법안 	
<p>[431] 제136조(입법회의의 의결 및 의결정족수) 입법회의의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헌법개정안, 교리적 선언, 사회신청, 그리고 예문의 제정 및 개정은 입법의회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의 사항이나 안건은 입법의회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431] 제136조(입법회의의 의결 및 의결정족수) 입법회의의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정된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전 입법의회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본회의에 상정한 법안은 제안자의 제안 설명에 이어 찬반토론 후 가부를 물어 결의하도록 한다. 단 개정된 법안을 공포하고 시행하는데 문제가 되는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의회 회기 내에 입법의회 회원 재적 3분의 1이상의 제안으로 현장 발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 장정개정위원회 의견

1. 헌법 [91] 제26조(발의권)제3항은 입법회의의 재적회원 1/3이상이 제안한 개정안은 본 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헌법조항입니다.

그러나 그 법이 모호하고, 의회법 제134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2항과 해석상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기에 금번 헌법 개정안에서 그 취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입법의회 기간 중에도 입법위원 1/3이상이 제안하면 상정할 수 있도록 한계를 분명하게 헌법에 규정하여, 헌법 제26조 제3항을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으로 개정하여 해석상 오류를 없이 하였습니다

2. 장정 429단 제134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규정 개정 제안은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의회나 각 기관 및 입법의원 뿐 아니라 감리회 회원 누구나 장정 개정안을 제안을 할 수 있다. 금번에도 지난 7월 말까지 접수된 모든 제안에 대하여 장개위에서 심사하여 많은 부분이 반영되었으며, 특히 각 위원회나 각 기관에서

제안한 것은 모두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장정 431단 제136조(입법의회 의결 및 의결 정족수) 금번 개정안에서 현장 발의 요건을 완화하여 헌법은 중전과 같이 재석회원 1/3이상, 기타 법률안은 1/5이상의 원서로 상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 2015년도 연회시 서울연회 외 8개 연회에서 공동발의된 개정안

원 안	개정안	비고
<p>제5편 경제법</p> <p>【48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① 부담금 : 부담금이라 함은 감리회 본부, 연회 및 지방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과 교역자은급법이 정하는 은급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의무적으로 납입하게 하는 부담금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감리회 본부 부담금 : 감리회 본부 부담금(이하 ‘본부 부담금’이라 한다.)은 감리회 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의 1%를 분담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u>감리회 본부는 수납된 본부 부담금 중에서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 및 기타 예산을 책정하여야 한다. 각 연회 선교사업비와 교역자 양성비는 별표 3.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수익금 처분)에 따라 배당 지원한다.</u></p>	<p>제5편 경제법</p> <p>【48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① 부담금 : 부담금이라 함은 감리회본부, 연회 및 지방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과 교역자은급법이 정하는 은급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의무적으로 납입하게 하는 부담금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감리회본부 부담금 : 감리회본부 부담금(이하 ‘본부부담금’이라 한다.)은 감리회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 결산 액의 1%를 분담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u>이 경우, 감리회본부는 수납된 본부 부담금 중 30%의 범위 내에서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지역교회를 갖춘 연회의 사업비를 계상 배당하여야 한다. <개정></u></p>	<p><u>지역교회를 갖춘</u></p> <p><u>‘각 연회 선교사업비와 교역자 양성비는 별표 3.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수익금 처분)에 따라 배당 지원한다.’ → 이 경우, 감리회본부는 수납된 본부 부담금 중 30%의 범위 내에서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지역교회를 갖춘 연회의 사업비를 계상 배당하여야 한다. <개정></u></p>
<p>【488】 제5조(감리회관 수익금) 감리회관의 수익금은 그 70%를 임대보증금의 환급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의 70%가 초과된 후에는 개척선교비 및 연회선교사업비와 교역자양성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회의의 협의로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결의와 유지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해야 한다. 다만,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 결의에 찬동한 이</p>	<p>【488】 제5조(감리회관 수익금) 감리회관의 수익금은 그 70%를 임대보증금의 환급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의 70%가 초과된 후에는 교회개척 및 선교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회의의 협의로 유지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해야 한다. 다만,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 결의에 찬동한 이사 및 위원이 변제</p>	<p><u>‘개척선교비 및 연회선교사업비와 교역자양성비로’ → ‘교회개척 및 선교사업비로’(또는 은급재단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u></p>

원 안	개정안	비고
사 및 위원이 변제의 책임과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의 책임과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578】 제5조(수익금 처분) 본부기본재산에서 산출되는 수익금은 각 연회 선교 사업비와 <u>교역자양성비 및 개척선교비와</u> 재단법인 사업비로 지출한다.	【578】 제5조(수익금 처분) 기본재산에서 산출되는 수익금은 각 연회 선교 사업비와 재단 법인 사업비로 지출한다.<개정>	<u>‘교역자양성비 및 개척선교비와’→(또는 은급재단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u> <개정>

※ 장정개정위원회 의견

각 연회에서 의결 상정한 부담금 0.3% 환급 요청(안)에 대한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견

감리회본부가 이번 개혁 입법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인원 감축 및 편제 개혁을 통한 구조 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본부 부담금을 1%에서 0.5%로 긴축합니다. 이런 과정 중에 본부부담금 0.5% 중에서 0.3%의 몫을 연회 선교사업비로 환급 조치하라는 4개 이상 연회가 공동 제안한 개정(안)은 감리회 본부의 행정과 운영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각 연회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여 현행 연회 부담금 수준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각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 조건표와 같이 각 연회에서 의결 하여 상정된 0.3% 환급 요청(안)이 통과 될 시 본부의 기능이 마비되어 감리회 본부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장정개정 본부예산안 조건표

(단위: 백만원)

구분	항 목	2015년도 예산	0.5% + 유지재단전입금	0.2% + 유지재단전입금	비고 (연회상정안 통과시)
수입	본부부담금	7,631	3,800	1,520	76억 기준 (경상비 총액)
	유지재단전입금	60	1,500	1,500	
	등록금 및 이자수입	15	100	100	
	이월금	709	0	0	
	합계	8,550	5,400	3,120	
지출	인건비	2,307	2,500	2,500	노동법에 의하여 우선 지급 의무
	관리비	2,046	1,500	620	
	정책연구비	997	500	0	선교국, 교육국, 사회평신도국 기능 마비
	연수원 및 사회복지 재단 등 지원비	970	500	0	사회복지재단, 장학재단, 연수원, 기독교타임즈 폐쇄
	연합기관선교비	258	150	0	에큐메니컬 연합회비 지원 불능
	선교비	1,712	150	0	남녀선교회지원비, 개척교회선교 비, 미자립교회 지원비 지원 불능
	총회	90	0	0	본부 각종 회의 거마비 및 일비 지급 불능
	비품	80	0	0	
	예비비	90	100	0	
	합계	8,550	5,400	3,120	
증 감			39.2% 감소	64.4% 감소	
비 고			0.5%은급으로전환	연회 상정안	
예 상	현행과 동일		초긴축 재정	본부 기능 및 업무 마비	